가족의존적이라 불안하고
야근이 당연해 바쁘고
여자다워지느라 아픈 시대

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

성평등복지 의제 발표와 정책 과제 토론회

일시: 2012년 10월 30일 14시
장소: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2층 교육실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국회의원 남윤인순 주관: 한국여성민우회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여성민우회

가족의존적이라 **불**안하고
야근이 당연해 **바**쁘고
여자다워지느라 **아**픈 시대

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

성평등복지 의제 발표와 정책 과제 토론회

한국여성 민우회

개최사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분수령이 있는 2012년. 올 한해 사회 각계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한국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전환에 대한 논의에 여성들의 욕구와 현실은 여전히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성평등이라는 가치에 입각해 이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결국 여성도 남성도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평등한 복지국가는 여성을 위한 몇몇 정책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바라는 성평등한 복지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넘어, 누구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이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누어 가지는 사회, 또한 성, 소득, 인종, 지역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의 다른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평등 복지국가는 정치, 경제에서 교육, 주거, 건강 등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의 경험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하여 한국여성민우회는 2011년 하반기부터 대안사회로서의 성평등복지국가를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초에는 우리가 꿈꾸는 성평등 복지국가가 갖추어야 할 정책들을 망라한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한 해에 걸쳐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기반 해 심화·발전시키고, 이를 성평등복지 의제와 정책으로 다듬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평등복지국가의 이론적인 근거들이 여성들의 구체적 삶의 경험

과 만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성평등국가의 구체적인 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연구 결과 도출된 성평등복지 의제와 정책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가 성평등복지국가라는 대안사회 기획에 필요한 긴 호흡의 지향점을 토론하고, 또한 새로운 상상력을 북돋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기준점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는 각 계의 의지와 동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의 설계 단계부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창연, 유정미, 이숙진, 전희경 네 분의 연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의 문제의식에 절실히 동감하며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남윤인순 의원님과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민우회와 행보를 지지하며 이 사업을 기꺼이 후원해주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0월 30일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인숙, 박봉정숙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남윤인순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전문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평등 복지국가로 한국사회의 다음을 기획'하기 위해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고 토론하신 흔적이 느껴집니다.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가 이제 우리 삶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과정에 우리 여성들이 꿈꾸는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대한 목소리나 논의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8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다시 짜는 근본적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재구성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꿈꾸는 복지국가는 성별에 따라, 소득에 따라, 인종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일과, 쉼과 돌봄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여성의 일상과 정책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가족, 노동, 건강과 같은 기본개념들을 제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복지정책을 제도화 하고,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습니다. 복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 여성주의적 관점과 감수성이 녹아들면서 전면적으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장을 여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재미있고,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편적인 기준 자체를 재구성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장에 한발 내딛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그 과정에 정성과 노력을 쏟아 붓겠습니다.
한국사회의 다음은'성평등한 복지국가'입니다.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개막이 18대 대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국회의원 남윤인순

| 차례 |

기조 발제	성평등복지국가의 기본방향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11
성평등복지 의제1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 유정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33
성평등복지 의제2	노동시간 재구성으로 쉼표 있는 사회 만들기 김창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73
성평등복지 의제3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전희경 (가톨릭대학교 강사, 살림의료생협 이사)	117
정책 제안	한국사회의 다음을 여는 성평등복지 정책 제안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147
토론1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9
토론2	박기남 ((사)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165
토론3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179

기조 발제

성평등복지국가의 기본방향

성평등복지국가의 기본방향[1]

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장,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1. 모든 복지국가가 '성평등' 복지국가는 아니다

우리(여성 혹은 여성들)는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는가. 모든 복지국가가 성평등한 복지국가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그림과 이에 기초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2012년,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정책과 공약이 흘러넘치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는 이 격변의 시기동안 제안되는 각종 정책들이 부분적이고 파편적이며 동시에 이해집단 중심의 정략적 공약들이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하며 동시에 여성과 남성(성별관계)의 관계변화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담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복지국가' 논의는 여성주의 진영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국가가 젠더의제를 실현하는 충분한 정치체제인가 하는 질문이다. 국가와 시장을 축으로 복지레짐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한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를 통해 복지국가의 발전수준을 구분했지만 상품화에서 배제된 채 무급의 돌봄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의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탈가족화'를 통한 복지국가 체제의 보완은 국가-시장-가족을 축으로한 젠더레짐에 의한 복지국가의 유형을 설명하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남성부양자, 여성양육자, 국가양육자, 시장양육

1 이 글은 학술적인 글이 아니며, 필자의 기존 논의들을 본 토론회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자, 이인소득자, 성인소득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복지국가의 젠더레짐은 복지국가의 길이 젠더관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젠더 의제는 무엇이며 젠더레짐의 한국적 지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는 근대적 시민권자로서의 여성과 여성의 노동,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일의 가치를 어떻게 전환하는 가의 문제가 함축되어 있기도 하다.

복지국가를 성평등관점에서 본다는 것, 젠더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젠더 위계 속에서 작동하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젠더관계가 국가체제 하에 배열되는 방식을 젠더레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인즈베리(Sainsbury,1999)는 이를 '성별화된 사회에서의 젠더관계를 규정하는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틀'로 보았다. 성평등 복지국가를 젠더레짐에 기초하여 구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역할 분리에 따른 이데올로기와 관행 그리고 역할을 중심으로 편재되는 정책과 제도의 총합인 것이다.

복지국가 체제를 연구한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은 '탈상품화' 즉 '시장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발전한 복지국가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레짐이 개별 국가의 복지제도 형성 이전에 이미 가족에서 고착된 성별분업과 이에 대한 사회의 낮은 평가, 그리고 여성과 남성 사이의 기회의 불평등 문제 등이 복지제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복지국가의 질적 특성을 구분하는 사회권[2] 지표로서 탈상품화를 제시한 부분은 사회권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분배된다는 가정하에 임금노동자로 생활하는 남성의 생애주기에 기초하고 있으며, 돌봄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완전히 상품화되지 못한 노동력으로 여전히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고 있는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고 있으며,

2 사회권이란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 사회의 중요한 활동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권이 보장된 상태를 말한다. 남성의 경우 노동의 상품화를 전제로 실업 질병 산재 노년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회적 보호수준이 탈상품화 수준을 반영하게 되며, 이러한 탈상품화 수준은 한 국가의 사회권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Esping-Andersen, 1990).

가족내 성별분업과 여성노동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었다. 개인의 사회권은 시장의존으로부터의 해방, 시장과 유급노동에의 의존을 약화시킬 수 있는 탈상품화가 기본원리이나 이러한 탈상품화는 돌봄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뤄지지 못한 여성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의 여성들이 탈상품화라는 지표를 통해서는 복지국가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적확한 지적이기도 하다.

'탈가족화'를 통해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을 보완하는 복지국가 논의는 이전에 가족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형태의 돌봄노동을 국가 또는 시장에서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돌봄노동의 수행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획득하도록 한다. 이는 상품화를 위한 조건이 되며, '탈가족화'는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가족 내지 혼인에 의한 상호성과 분리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처분권을 극대화시키는 것"(Esping-Andersen, 1999)으로 정의된다. 가족의 돌봄노동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었던 여성들은 탈가족화를 통해 유급노동에 접근할 기회를 갖게되고 이를 통한 여성고용율의 증가는 탈상품화에 따른 복지국가 체제유형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되는 것이다. '탈가족화'는 가족내 돌봄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개입정도를 의미하게 된다.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통해 복지국가를 분석한 이러한 논의가 여전히 노동시장 밖에서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Sainsbury, 1996:86)은 탈가족화가 가족내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넘어서 "여성가구주 가구에 적절한 생계를 마련해주는 복지권" 및 "가족관계로부터의 독립권"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기했다. 국가나 공적인 의존으로부터의 자율성 획득을 주장하는 한편, 여성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주장들도 제기된다. 즉 사회복지급여,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및 노동시장관련 규제 등을 통해 독립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혼인 또는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에 속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지고 기를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탈가족화할 수 있는 자율성(autonomy to 'defamilialisation') 등으로 탈가족화를 해석하고 있다(O'Connor, Olroff, Shaver, 1999:32). 이렇게 볼 때 탈가족화는 가족 내 돌봄노동을 어떤 방식으로 사

회화시키는가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내지 가구의 욕구 혹은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복지급여, 삶의 형태와 무관한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및 그 안에서의 차별 배제를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젠더레짐에 기초하여 분석할 때 부양자 모델[3]이 남성을 기준으로 구성되는 가족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개인모델을 논의한 세인즈베리는 복지국가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단위가 개인인가 아니면 임금노동자인 가구주를 통해 가족에게 전달되는 권리인가를 질문한다. 남성이 가진 권리에 의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양자모델에 비해 개인모델은 시민권에 근거하여 수급권을 보장받음으로써 가족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평등한 남녀관계를 모색하도록 할 수 있다.

〈표1〉 세인즈베리의 부양자모델과 개인적모델

차원	부양자모델	개인적모델
가족이데올로기	엄격한 성별노동분리 남편=취업노동 부인=돌봄노동	역할 공유 남편=취업.돌봄노동 부인=취업.돌봄노동
수급권	부부간 차이	부부간 동일
수급권의 근거	부양자	시민권.영주권
수급단위	가구	개인
기여단위	가구 또는 가족	개인
조세	부부공동조세 피부양자 공제	부부분리조세 동일한 조세감면
돌봄노동 책임소재	가족	국가
돌봄노동 보상	무급	수급권을 통한 보상

자료: Sainsbery(1996:42), 김인숙,정재훈(2008), p.235재인용

3 오스트너와 루이스 등은 남성부양자모델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강한 부양자모델, 온건한 부양자모델, 약한 부양자모델로 구분한다(조홍식 외, 2006). 강한 부양자모델은 여성의 양육역할과 시간제노동선호, 부양자의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특징으로 하며, 온건한 부양자 모델은 여성의 전일제 노동과 혼합형 사회보장제도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여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해서라기보다는 취업자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약한 부양자모델은 어머니의 지속적인 전일제 취업과 개인적 청구권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로 구성되어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남녀 모두의 사회권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부양자 모델은 노동권, 젠더관계, 사회보장제도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복지국가에서의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 모델은 복지국가가 남성부양자 중심의 가족생활을 어느정도 지원하고 강조하는가를 중심으로 국가마다 다른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초기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노동자, 여성-생계의존자-주부라는 성별분업을 전제로 여성을 독립된 개인이 아닌 남성배우자를 통해 차등적으로 사회에 통합되는 존재로 규정했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레짐에 대한 비판과 젠더레짐에 기초한 여성주의의 복지국가는 공적영역의 일부인 복지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제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틀, 무급 노동의 사회적 분포 및 그에 대한 가치평가, 노동시장의 성위계적 구조 등을 복지제도가 처한 젠더체제(O'Connor, Orloff, Shaver, 1999)로 이해하면서 기존의 유형을 비판하고 젠더관점에서의 복지국가를 설계해왔다.

결국 서구복지국가들의 유형을 젠더관점에서 살펴보면 전통적인 성별분업(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며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여성을 주부나 피부양자로 역할지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에 2인 혹은 1.5인의 소득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종 사회정책(사회보장, 조세, 보육, 노동 등)을 설계한다. 남유럽 혹은 영미형은 약간 혼재된 형태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여성/어머니, 주부 혹은 부차적 소득자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보육서비스 확대보다는 어머니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확대한 독일은 여성의 노동권 강화보다는 양육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지원한 나라에 속한다. 스웨덴은 그 반대로 양육수당 대신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성의 소득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인 나라이다. 명백히 각종 성평등 지표들은 스웨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약화시키는 사회정책은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더불어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율 증가의 효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독일도 최근에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보육서비스 재정을 확대하고 여성고용을 높이는 쪽으로 재정투자를 변화시킨 사례가 있다. 복지국가의 유형별 차이는 명백히 성역할 분리에 따른 이데올로기와 관행, 그에 따른 사회정책의 편재를 구분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젠더레짐은 가부장적 복지국가와 성평등 복지국가의 스펙트럼을 펼쳐주는 복지국가 유형이며 이는 곧 여성/남성/양육자/소득자에 대한 조합과 국가와 시장의 개입정도에 따른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소 도식적일 수 있으나 가부장적 복지국가일수록 이른바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 여성은 양육자, 남성은 소득자 즉 부양자로 간주하며 여성의 가족내 성별분업을 유지, 모성을 강화하는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을 유지하는 국가일 것이며, 성평등 복지국가는 여성과 남성이 공히 소득자이자 양육자이거나 남녀 모두 성인이라면 소득자로 간주하는 성인소득자모델로, 궁극적으로 성별분업이 약화되는 복지국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복지국가는 성차별적인 전통적 성별분업을 약화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실행하는 복지국가이며, 젠더레짐에 기초하여 여성과 남성의 양육자와 소득자 역할에 대한 성별화된 구분과 분리를 넘어서고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초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며 돌봄의 욕구를 인정하고 돌봄의 책임을 재분배하는 국가이다. 모든 복지국가가 '성평등'복지국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성평등복지국가는 탈가족화, 탈상품화 그리고 탈성별화의 조합으로 가능하며, 이러한 지표는 '성평등'이라는 가치와 철학에 내재한 역동적 접근[4]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역동적 접근(dynamic approach)이란 앨리슨 재거에 의해 개념화되어, 젠더 관점의 성평등이 성차를 생물학적이든 사회적이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남성/여성의 이분화된 차이를 넘어서 다양한 성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성평등 개념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성차가 선천적이거나 생물학적이어서 변할 수 없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남성과 여성간의 성적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로서의 성차, 역사적 불평등의 산물로서의 성차, 그리고 '강요된 차이'로서의 성차를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의 성차에 대한 역사적, 구조적 인식 없이는 결코 '전환적' 성평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성평등복지국가의 기본틀과 관점

복지국가는 협애한 복지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는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주요한 기둥 중의 하나이며, 복지국가는 정치체제와 이념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와 확장과 재편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를 젠더관점에서 전망하며 상상하는 것은 복지국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적 단계는 민주화이며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동행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신매매가 용인되지 않으며, 여성의 목소리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제기될 수 있는 자유권적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없이 성평등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가부장적 성별관계를 유지하고, 구조화된 성차별과 불평등을 유지하고 이를 온존하려는 낡은 전통에 집착하는 보수에 의한 복지국가는 성평등복지국가일 수 없다는 점이다.

성평등복지국가는 특정 국가의 정치공동체가 지니는 철학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성평등'복지국가는 성평등이라는 가치와 철학에 근거한 국가운영원리를 세우는 문제이며, 성평등 이념에 대한 제도적 실천은 성주류화 즉 국가운영을 위한 모든 정책과 제도에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성주류화에 대해 리스(Rees, 1999)는 모든 정책과 제도에 젠더관점이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성주류화이며 이는 단순히 정책분석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주류화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서 남녀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정책의 단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언급되는 추진전략이 아니며,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여성특정적인 정책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성주류화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로만 대표되는 것도 아니다. 젠더관점과 성주류화를 구분하면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여성정책에서 젠더정책 그리고 성주류화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이해

되어서는 안되며[5], 성주류화는 '성평등'이라는 철학을 실현하는 정책전략으로서 이해하여야 하고, 이는 여성대상의 여성특정적 정책, 젠더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성주류화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평등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주요한 전략으로서 '성주류화'를 채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시키는 제도와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성평등복지국가가 여성의제만으로 완수되지 않으며, 여성과 남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재구성을 동시에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정책과 제도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기준이 여성의 삶을 배제 혹은 왜곡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정책적,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할 성평등의제로 채택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성평등복지국가는 여성의 존재적 특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젠더레짐에 기초한 불평등한 성별관계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여성의 존재적 상태가 처한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노동과 무임의 돌봄노동간의 성별화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돌봄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성찰을 기초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보다 근원적 문제제기를 포함하되 '복지국가'라고 하는 구체적 체제 하에 제시되어야 할 정책적 프레임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이 정책을 구체화할 수도 있으나 정책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동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복지국가의 기본틀과 방향에 대한 제시는 구체화의 수준을 높일수록 현실적용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이에 대해 부스와 베네트(Booth and Bennet, 2002)는 성주류화를 평등대우, 적극적 조치 그리고 성주류화가 모두 주류화를 구성하는 '세개의 다리가 있는 평등의자(three-legged equality stool)'로 제시한다. 즉 성평등정책은 평등대우, 적극적 조치, 성주류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는 서로 배타적이거나 대체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1〉 성평등복지국가를 위한 정책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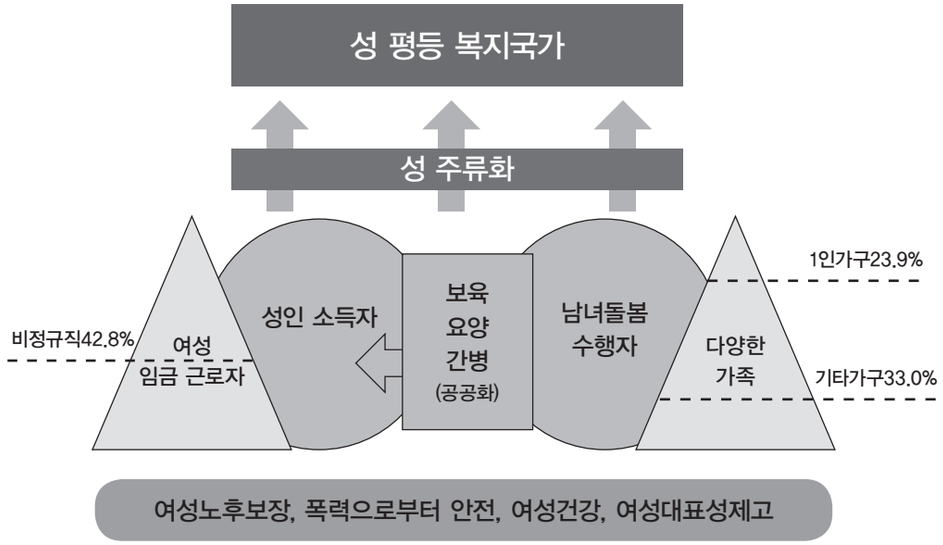

가부장적 복지국가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로부터 멀어지는 복지국가의 젠더레짐은 현실사회에서 성인소득자 모델이거나 이인소득자 모델로 나타난다.[6] 이인소득자모델이 부부중심의 가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과 개인주의적 모델의 지향성을 결합한 성인소득자 모델은 남녀 구분없이 성인이 되면 일정한 소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회정책 전반이 설계되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지향이 여성의 유급노동자화를 통해 남성노동자가 기준이 되는 지향을 가져오며 여성들의 저임금 저지위를 결과하는 노동시장 내부의 성차별과 성별화로 귀결될 것이므로 대안적인 성평등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유급노동의 생산주의 혹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여성이 담당해왔던 돌봄의 윤리와 속성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돌봄이 인간 보편적 속성으로 간주되고 돌봄의 욕구와 수행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과 시민의 보편적 활동으로 전제하는 사회는 보다 성평등하며 여성친

6 남녀가 양육자로서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보편적 양육동등자모델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지배하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에 제약이 있으며 따라서 남녀 모두 소득자이자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공유하는 모델로의 지향을 가지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화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도래는 또 다른 정치투쟁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작동되는 가부장적 혹은 남성중심적 권력이 돌봄의 여성화를 통한 성별화와 불평등의 강화를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돌봄 그자체가 욕구로서 인정되고 돌볼 권리가 재분배 차원에서 정의되는 사회의 도래는 시장노동과 남성중심의 소득자에 대한 균열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혹은 유급노동의 권리는 성인소득자의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매우 주요한 성평등복지국가의 준거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심화와 고용불안 및 실업의 증가가 모든 개별국가들에서 주목되는 가운데 여성의 고용율을 높이고, 여성의 소득자로서의 역할에 근거한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실제로 지난 20여년간 우리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를 전후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혹은 소득활동에 대한 언급은 늘 헛된 구호로만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지난 10년간의 여성고용율에 대한 분석은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여성고용율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었던 스웨덴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고용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지적이다(윤홍식, 2011:16). 특히 강한 가족주의와 성별분업이 남아있는 스페인의 여성고용율은 지난 10년동안 11.7%p가 증가, 변화율로는 2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 즉 여성고용율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국가운영원리상 여성을 소득자로 전제하지 않은 것 때문이며, 더불어 성별분업을 변화시키려는 국가 차원의 의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성인소득자모델로의 지향은 여성고용의 증가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약화시킴으로써 성평등의 주요 요소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의제이다.

7 윤홍식은 독일과 호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독일은 여성고용율이 7.5%p, 변화율로는 각각 12.5%, 12.8%가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여성의 유급노동 혹은 고용증대가 곧 성평등으로 일치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성별화와 불평등문제를 해소해야 함과 동시에 무급 혹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화 혹은 제도화방식에 대한 논의 역시 성평등복지국가의 핵심적 의제이다. 임금노동자 중심적 접근이 일 중심 패러다임이라는 비판에는 우리 모두가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로의 지향을 내포한다. 도덕과 윤리로서가 아니라 사회정책에서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는가. 바람직한 성평등 사회는 돌봄을 무급의 여성 일방에 의해 사랑과 헌신과 의무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돌봄의 책임을 인식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직이나 사회보험도 다시 설계되는 사회이다. 돌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키테이(Kittay)가 언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가 관계의 순환속에 돌봄 관계의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조직화된 사회, 이러한 사회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공적인 사회제도를 통해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를 수당 형식으로 보상하거나 사회보험의 기여 인정을 통해 확보해줄 수 있다. 국가가 수당에 기초한 접근(allowances-based approach)을 하는 것은 그동안 노동력 통계와 국가 수입회계에서 무시되어왔던 돌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주장이 현대판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사회적 돌봄의 방식이 여성의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성평등복지국가에서의 돌봄에 대한 사회화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장지연(2011)은 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여성의 임금노동을 줄이는 기존연구들을 제시하며,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돌봄서비스가 공공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해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으며 이는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국가의 사회지출은 종전에 가족에서 이루어졌던 '돌봄'을 사회화하는 지출이다. 돌봄관련 사회지출이 확대될수록 가족내 돌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개입이 확대되는 것이며 이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에 의한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지표를 구성한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의 비중은 2007년 현재 스웨덴 29.8%, 프랑스 28.5%수준이며 OECD 평균 19.3%이나 한국은 6.1%로 가장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를 사회(돌봄)서비스(현물급여)에 들어가는 사회지출의 비율과 비교해볼때 스웨덴은 6.6%, 한국은 0.3%이며 사회서비스 지출 비율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여성고용율이 높은 나라들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돌봄의 사회화방식은 서비스의 공공화를 담보하여야 하며 이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함께 좋은 여성일자리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관점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성별화를 극복하는 것은 여성소득자, 남성양육자로의 전환을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성평등복지국가의 정책적 기본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성별화된 고용이 한계로 지적되지만 성평등복지국가의 사례로 소개되는 북유럽 국가들 중 스웨덴의 성평등 기본방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정부[8]는 성평등(젠더평등)이 '여성과 남성이 사회와 자신의 일상에서 동등한 권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기회, 권리 그리고 의무를 가지는 것을 함의하며 동시에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성평등을 추구'한다고 선언한다. 스웨덴 정부가 제시하는 성평등 정책 목표는 크게 4범주에서 이루어지는데 '권력과 영향력의 평등한 분배,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평등, 무임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평등한 분배,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근절'이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는 우리가 지향할 성평등복지국가의 정책을 설계하는 기본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8 Statistics Sweden(2010), Women and men in Sweden.

3. '성평등복지국가' 정책설계의 기본방향

성평등복지국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의 기조와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가부장적 젠더관계에서의 젠더역할에 대한 변화이다. 부양자-양육자에 대한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부터 성인소득자모델로의 전환과 더불어 모든 정치, 사회, 경제의 정책과 제도를 이를 기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성별로 구조화된 불균형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과 모든 정책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을 적용하는 '성주류화'가 서로 다른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성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 소득자로서의 여성, 양육자로서의 남성

이미 대다수의 한국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다. 고용불안과 가계소득저하로 인해 남성 1인에 의한 생계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여성들의 존재적 변화는 경력단절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 욕구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인가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인 개개인의 소득자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소득자여야 한다는 주 · 객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시스템은 이에 조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남성들의 의식에서도 지체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이러한 지체현상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예를들어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의 부족을 언급하면서도 여성을 소득자로 정체화시키지 않고 고용차별과 경력단절을 방관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부메랑이 되어 결국은 저출산이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의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2년에 주장되는 여성의 일자리 의제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의제가 아니며 절박한 생

존의 의제이자 기본권적 권리의 의제이다.

산업의 발전이 고용의 확대로 연계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80년대의 경우 10억원 매출 증가는 73.1명의 취업증가를 가져와 취업계수는 73.1명이었으나 2000년 취업계수는 12.2명, 2003년 10.4명 그리고 2005년에는 8.7명(통계청, 각 년도)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한국은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은 국가로 고용율이 정체되어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그런데 한국과 OECD 국가들의 남성과 여성의 고용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남성고용율은 미국보다 높고 고용율이 높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 수준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성고용율은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율이 낮고 고용률 수준의 격차도 남자에 비해 훨씬 크다(황덕순, 2010).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강요된 '경제활동'이 아니라 진정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공의 좋은 일자리를 통한 여성소득자의 확대이다.[9] 괜찮은 일자리가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이라는 환상은 접어야 한다. 여성을 소득자로 전제하고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주체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이상에 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공공부문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시화되어야 한다. 2009년 스웨덴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49%가 공공부문(중앙 및 지방, 의회)에 고용되어 있으며 이 영역의 성별비중은 평균 70%에 달한다. 국가가 창출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여성 일자리이자 여성고용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9 2009년 우리나라 여성고용률(15~64세)은 52.2%로 노르웨이(74.4%), 덴마크(73.1%) 등에 비해 20%p 가량 낮은 수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53.9%로 OECD 평균(61.3%)보다 7.4%p 낮은 수준이다(OECD, 2010). 더불어 2010년 현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여성은 41.8%이며, 이들은 성별 격차와 비정규직 격차의 이중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남성 정규직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 비정규직은 39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여성정규직의 약 60%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임금수준은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시켜 2010년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5.1%인데 반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6.2%로 남성에 비해 2배가 넘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초과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최소한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강력한 준수에 기초해야 한다. 초과근로시간한도인 주52시간(주40시간+초과근로12시간)을 지킬 경우 적어도 7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10]됨을 감안하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여성의 소득자로서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남성들의 돌봄 참여를 통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의 성별화를 극복하는 적극적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일가정양립 정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일하는 여성의 돌봄노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으며 이는 여전히 돌봄의 여성책임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남녀 모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시간 재구조화, 휴가 등 시간의 보상, 그리고 정규직 남성에게 맞추어진 노동주기의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능력과 경쟁으로 승부하는 신자유주의 논리로 무장한채 가부장제 사회에서 약진하는 알파걸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 그리고 임신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이 난무하는 노동시장은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99%:1%가 여성계층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단위의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국가의 재분배정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가구단위의 소득불평등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여성 고용의 질적 제고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기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으로의 전환, 적극적 조치(AA)의 실효성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차별 금지강화는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소득자로서의 여성, 세금납부자로서의 여성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여성의 소득자로서의 전환은 사회보험의 기여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 고용율이 일정시점에 도달, 1인1연금제의 기반이 확보되기 전까지 연금의 사각지

10 김유선(2012)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과 관련하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 '현행법에서 정한 주 12시간 초과근로 한도만 지켜도 일자리를 75만개 만들 수 있고, 초과근로 한도를 주8시간으로 단축하면 일자리를 115만개 만들 수 있다고 보았으며, OECD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취업자 2,193시간(노동자 2,111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길다고 언급했다.

대가 발생하지 않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방식으로서의 연금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2) 돌봄서비스의 공공화

새로운 사회의 위기로 인한 복지국가 재편의 필요성은 돌봄의 부재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개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저출산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의 참여, 그리고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돌봄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기존에 돌봄을 책임졌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돌봄'은 복지국가의 의제일뿐 아니라 '젠더'의제로 접근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주로 여성들이 돌봄을 담당해왔고 사회화 혹은 공공화되는 이후에도 주로 여성들이 돌봄노동자가 되는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돌봄서비스 확대는 여성의 사회권을 강화하는 핵심적 의제이자 여성 일자리의 관점에서 세부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다.

복지국가의 사회지출은 종전에 가족에서 이루어졌던 '돌봄'을 사회화하는 지출이다. 돌봄관련 사회지출이 확대될수록 가족내 돌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개입이 확대되는 것이며 이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에 의한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지표를 구성한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돌봄관련 사회지출을 늘이는 일이다.

돌봄을 둘러싼 사회지출은 현금 혹은 현물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현물급여(서비스)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의 고용율이 높다. 젠더 의제로서 돌봄의 제도화 방식은 전통적인 젠더관계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이는 여성고용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의 가족화를 유지하면서 돌봄 역할을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각종 수당제도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강화한다. 따라서 수당이 아닌 서비스로 보육, 요양, 간병 등의 돌봄을 공공의 영역에서 확대하는 것은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동시에 가족내 돌봄 역할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 및

경력단절을 막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사회화는 시장에 의해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공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일자리로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 요양, 의료의 공공 인프라 확충은 성평등복지국가의 정책과제가 된다.

3)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차별없는 사회와 젠더-거버넌스

국제 비교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여성의 지위는 정치적, 경제적 수준에서 매우 낮다. 이는 우선적으로 여성의 권한과 지위를 높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여성의 낮은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의 자유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에서의 성별권력관계는 여전히 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에 주목하여 여성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할 '여성'정책은 성평등정책의 전략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성평등주의 전략으로서의 '성주류화'는 '여성'의제를 넘어서 모든 정책과정에 성평등적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이의 실행력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과 제도의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법률로서 성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도 담보되어야 하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 그리고 성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여성 집단의 차이를 반영하고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부터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 2011년 전체 가족 중에 핵가족과 직계가족은 66%수준이며 조손가구가 0.7% 그리고 기타가족이 33.0%나 된다. 1인가구는 23.9%로 약414만가구이고, 비혈연가구는 1.25%로 20만가구나 된다. 즉 혈연중심의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비혈연, 공동체, 동거 혹은 형제 자매 가족 등등으로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보장, 조세, 주택 등의

정책은 법률혼 부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이러한 가족이 국가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늘어나는 한부모가구의 생계에 대한 지원은 보다 현실화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지위와 인권확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바란다.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사라지고, 등하교길의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귀가길의 여성이 납치당하지 않을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여성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싶으며, 과도한 성형 및 다이어트 광고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신체 이미지가 인정되는 외모차별이 없는 사회에 살고 싶어 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져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실질적으로 감소되고 학교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를 여성들은 바란다. 평화로운 세상,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그리고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는 세상이 여성들이 바라는 세상이라면 성평등복지국가는 이를 위한 정책적 설계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책 파트너로서의 여성단체는 촛불집회 참가유무에 따라 구분되었고 젠더-거버넌스는 근원부터 위기를 맞이했다. 성평등정책의 후퇴와 역풍은 입법 영역에도 나타나 여성 관련 법률의 제 · 개정도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 명백히 '보수'는 성평등주의에 적대적이다. 그것은 '보수'의 특성이 기존 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고 현실변화에 유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진보'는 반드시 성평등주의로 무장해야 하며 우리가 지향할 복지국가는 성평등에 대한 비전과 자기확인 없이는 반쪽이거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성평등복지국가의 기본방향 |

1.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며, 소득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권리가 있다
2. 여성과 남성은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성차별적인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 평등한 사회,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룬다
4. 국가는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소득과 생활기준을 보장한다
5. 돌봄노동의 사회화 공공화를 실현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한다
6.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7.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한다.
8. 국가는 적정한 주거와 안전을 보장한다.
9. 모든 사회구성원은 신체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갖는다.

–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 (2012, 한국여성민우회) 中

참고문헌

김유선. 2012. “이슈페이퍼 – 실노동시간단축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홍식. 2011.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지연. 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페미니즘연구 제11권 2호

황덕순. 2010. “주요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성과”. 「일자리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개원22주년 기념토론회.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Princeton: Kittay, E. F.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O’connor, J., Orloff, A., and Shaver, S. 1999.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mbridge

Sainsbury, Diane, 1999, “Gender and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s”. D. Sainsbury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 Press.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

유정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1. 문제배경

지난 2010년에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 · 주택 총 조사」실시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결과치의 하나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0년 조사에서 전국의 총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23.9% 이었고 아직은 최다를 차지하고 있는 2인 가구 비율 24.3%에 비해 0.4% 낮았다. 1인 가구 중 남성 가구주는 46.5%, 여성 가구주는 53.5%이다. 〈그림 1〉은 지난 30년간 한국 가구 유형의 변화를 보여준다. 1980년에는 5인 가구 비율이 49.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과 달리 2010년에는 8.1%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나며, 반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해왔다.[1]

1인 가구가 가구 형태의 주류가 되어 가면서 1인 가구를 공략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등 떠들썩하지만 현실에서 1인 가구의 다수는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2] 1인 가구의 증가는 새로운 소비 주체로서의 부상보다는 복지 정책의 방향에 보다 많은 과제를 던

1 통계청 조사에서 1인 가구는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된다. 1인 가구가 독신가구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조사에서 이 둘은 사실상 구분되어 사용된다. 독신가구는 법적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통칭하지만 혼자서 생활해야한다는 독립거주의 규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현재 제도적 배우자가 없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 이에 반해 1인 가구는 법적인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가구, 예를 들어 이혼 전 별거, 기러기 가구, 주말부부 등 가족원과의 별거로 인한 1인 가구까지 포함한다.(김혜영, 2007: 1042)

2 보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인 가구의 빈곤률은 45.5%이다. 이는 2인 가구의 빈곤율 28.2%보다 높으며 전체 가구의 평균 빈곤률 13.8% 보다 30% 가량 높은 수치이다.

〈그림1〉 가구원 수 규모의 변화 (198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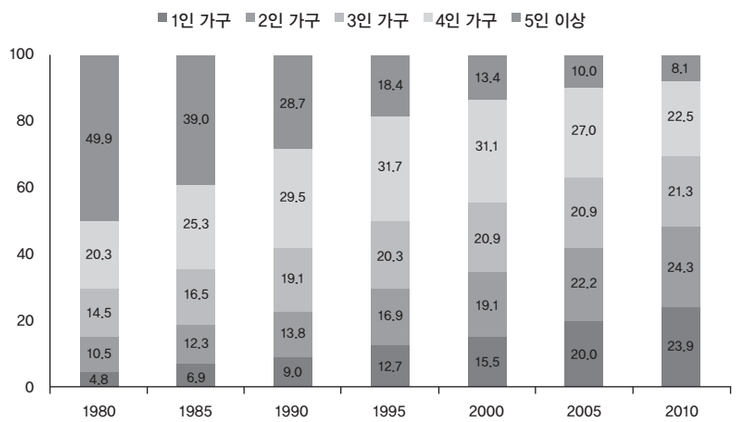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1)

진다. 그동안 복지 정책의 주방향은 부양가족이 있는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는 부양가족 형성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진입부터 좌초하는 다수의 빈곤계층 출현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성별임금격차가 크며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여성 1인 가구는 보다 쉽게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사회체제와 복지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모든 개인들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들 간의 친밀한 결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1인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은 70세 이상 고령자(19.2%)이지만, 절대적 증가치가 가장 많은 연령은 30대와 40대이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 동안 증가한 총 1인 가구수의 42%가 30대와 40대 두 연령층에서 증가한 가구 수였다(이희연 · 노승철 · 최은영, 2011: 485). 3, 40대 1인 가구의 증가는 만혼, 비혼, 이혼율의 증가가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혼인을 미루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제도적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40대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변미리 외(2008) 연구는 서울시 1인 가구 현황 조사를 배경으로 1인 가구 집단을 산업예비군, 골드세대,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 4개의 집단으로 나눈바 있다.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3,40대 골드미스 · 골드미스터를 주목하고 있지만 골드 집단은 소수에 불과하며 3,40대 1인 가구의 다수는 불안한 독신자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규모가 작고, 주거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집단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은 상대적으로 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김혜영(2007)의 연구에서 보면 교육수준은 여성 독신자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소득은 전반적으로 남성독신가구주가 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 독신가구의 경우 소득규모가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여성의 직장 근속기간이 남성에 비해서 짧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성 3,40대 1인 가구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갈등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복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반응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서울시의 여성 1인가구 정책은 여성 1인 가구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 건강, 일자리, 커뮤니티, 불편해소 6대 분야에 걸쳐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 1인 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특화한 최초의 접근이다. 그간 1인 가구 정책의 주류는 이들을 기존의 가족 구조로 편입시키는 쪽에 있었다.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청약 우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들 정책은 1인가구를 가족구조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한다. 이렇게 볼 때 서울시 정책의 또 다른 의의는 기존의 당위적 접근과 달리 정책수요자들의 현실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 1인 가구 증가 현상과 이로 인해 당면한 문제들이 정부 정책에 던지는 과제는 이보다 더 크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비정규직화,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이 성별화되어 있고, 생계부양자 남성과 전업주부 여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여전히 복지정책의 기본 단위로 여겨지는 한에서 싱글 여성들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자기실현의 욕구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가족규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1인 가구의 증가를 단순히 상품시장의 위력 앞에 무력해진 인간의 물상화나 개인화의 결과로만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전략적 · 능동적 능력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김혜영, 2007: 1047)은 타당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여성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3,40대 여성 1인 가구의 증가가 복지정책의 방향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족을 단위로 부양과 보살핌이 이루어져온 복지 체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다수의 집단이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여성 1인 가구의 복지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노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좌담회와 면접이 실시되었으며 이 글은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다. 첫 번째 좌담회(좌담회 A)는 "노후"라는 주제를 놓고 6명의 싱글 여성과 1명의 기혼여성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번째 좌담회(좌담회 B)는 혼인 대신 동거 중인 3,40대 여성 5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좌담회에서는 제도적 혼인 바깥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한 여성들이 갖는 제도적 가족 구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이들의 복지 수준 및 복지 정책 요구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 또 40대 초반의 여성 1인 가구주 1명 (인터뷰 A), 30대 후반의 여성 1인 가구주 1명(인터뷰 B)을 추가로 면접했다.

2. 3, 40대 여성 1인 가구주가 느끼는 노후 불안

가. 주택

1인 가구의 주택 유형과 점유 형태는 다인 가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다인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1인 가구는 주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59.4%) 점유형태는 월세가 가장 많다(39.5%)(통계청, 2011). 1인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는 월세 가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5년과 2005년의 통계

치를 비교하면 1995년에 1인 가구의 월세 비율은 31.3%였고 2005년의 비율은 40.0%로 8.7%가 증가한다(이희연 · 노승철 · 최은영, 2011: 489). 1인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를 성별에 따라 보면 45세까지는 남녀 모두 월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45세 이후부터는 여성의 경우 자가 주택의 비율이 높은데 반해 남성은 여전히 월세 비율이 높다.(〈표1〉 참조)

〈표1〉 1인 가구의 연령별 · 성별 점유형태(%)

구분		30세 미만	30~45	45~65	65세 이상
남자	자가	6.5	17.5	26.9	55.8
	전세	23.3	27.6	18.2	15.7
	월세	66.8	50.1	48.5	24.3
	무상	3.4	4.8	6.4	4.3
여자	자가	5.2	16.0	43.6	65.4
	전세	23.6	31.1	21.2	15.5
	월세	69.2	50.4	32.5	15.7
	무상	2.1	2.4	2.6	3.5

* 자료: 통계청(2010), KB금융경영연구소(2012:2)에서 재인용

서울은 집값 상승률이 높기로 악명높다. 서울과 같이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주택 여건은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또 3, 40대 1인가구의 경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경제적 상황이 현재보다 나빠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전, 월세 상승은 이들의 삶의 질을 더욱 낮아지게 할 것이다.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 1인 가구의 경우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나 저렴한 가격의 분양주택에서 대부분 1인 가구는 지원 자격이 없거나 지원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구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4인 가구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서 소형주택이 부족하고, 1인가구는 다양한 생활패턴과 주거요구를 가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한지희 · 정소이 · 박준, 2011:

161). 이외 안전문제 역시 쟁점 사안이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저소득층 지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점"을 질문한 결과 '주거 불안정'이 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77%)이었다.

좌담회와 인터뷰를 통해서 제기된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 사항 역시 위와 같은 쟁점을 담고 있다.

■ 독신의 경우는 정부 주택지원제도를 이용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요.

아래 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싱글여성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신청이나 저렴한 분양주택 청약 가능성을 점쳐 보지만 기존의 선정 조건에서는 싱글 여성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좌절을 느낀다. 좌담회 참여자 (A-가)는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깔끔한 곳에서 크게 문제 없이 살고 싶은 것"인데 그 정도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한다. 인터뷰 참여자 B 역시 "결혼을 안했다고 길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 싱글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정책에 접근성이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 지금 독립해서 산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거의 2년마다 계약했으니까 한 3번 정도 계약을 했고, 그때마다 되게 머리가 아프고, 집주인하고도 티격태격 안 좋은 일도 있고. 계속 이사를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집이 아니더라도 좀 안정적인 주택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의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주택분양권이라든지 이런거 알아보거든요. 시간 나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데.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메리트 되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고,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거기 신청해도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게 항상 안타깝고요. 꼭 좋은 아파트 아니어도, 안정적이고 깔끔한 곳에서 크게 문제 없이 살고 싶은 건데 그 정도의 것도 전혀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게 가장 답답했었고. (좌담회 A – 참석자 가, 30대 중반)

> 싱글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문제가 아닌데 아니 내가 당장 뭐 결혼을 안했다고 해서 내가 길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 신혼 부부만 되고 다자녀만 되고 나는 왜 안되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이가 서른 다섯인데 내가 결혼을 안했다고 해서 내 생활이 안정적이냐는 것도 아닌데 왜 서른 다섯이 넘어야 싱글인 경우에 가능하고 서른 다섯이 안되었는데 혼자 살면 결혼 준비 중인 사람처럼 대접받는 것 있잖아요 너무 불쾌하지요. (인터뷰 B, 30대 후반)

■ 집값 올린다고 하면 당장 대안이 없어요.

정부 주택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접근성을 넘어서 3, 40대 1인 가구 여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택가격 안정이다. 인터뷰 참여자 A는 오랫동안 출판 편집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분야로 전직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A의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주거상태는 전세이고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다. A에게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될 문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현 거주지는 부모님 집과 결혼한 동생이 사는 집과 가까워서 원가족과 친밀한 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현거주지보다 전세값이 저렴한 동네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사는 곳과 거리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다. 인터뷰 참여자 B는 집을 소유할 마음은 없고 전세를 구할 가능성도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주택과 관련해서 B의 희망사항은 월세가 안정되길 바라는 것이다.

>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땅의 문제거든요. 가장 삶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주택 문제 해결이예요. 이것이 선행이 되면 삶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고 비정규직으로 살아도 솔직히 살만할 것이예요. (인터뷰 A, 40대 초반)

> 저는 원래 목표는 전세였는데 앞으로 전세는 없어질 것 같구요 부동산이 오르지가 않을 것이니까요 월세가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비싸니까 월세가 안비싼 집에서 살고 싶어요 … 집을 살 생각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희망 사항인데 월세가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인터뷰 B, 30대 후반)

이와 같이 3,40대 싱글 여성들은 높은 주택가격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지원 주택 사업에 대한 여성 1인가구의 접근성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하며, 또한 주거환경 전반의 안전성 향상이 요구된다.

나. 소득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도 서울시 1인 가구에 대한 조사에서는 1인 가구의 45%가 100만원 미만 소득자였고, 31%가 100-200만원 소득층으로 1인 가구 10명 중 7-8명이 2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이었다. 또 직업분포를 보면 판매서비스직이 26%, 단순노무직이 10%, 기능직이 9%로 블루컬러 직업군이 50%에 달하고 있었다(변미리, 2008: 151).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를 보면 청년층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상용직 고용자가 많은데 반해(여성 57.3%, 남성 44.65) 장년층으로 가면 여성 상용직 비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남성 장년층의 상용직 비율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낮다(여성 20.0%, 남성 28.0%)(〈표〉 참조). 경상소득을 보면 남성 1인가구나 여성 1인 가구 모두 경상소득 금액이 200만원 이하로 남녀 모두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의 차이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의 경상소득이 여성의 소득금액을 상회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청년층 경상소득 금액과 장년층의 경상소득 금액이 1,636천원으로 동일해서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이동시 소득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과 달리 여성의 경우 청년층의 경상소득금액이 1,503천원, 장년층의 금액이 1,353천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으며, 근로소득만 놓고 비교하면 그 폭은 더욱 커서 장년층 여성의 근로소득은 청년층 여성의 근로소득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장년층 여성의 고용조건 및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통계적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상용직에서 여성 고용의 안정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층(2,30대) 여성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고학력이지만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의 정규직으로 독신 상태를 유지해온 경우이다. 이들이 장년층으로 이동시에는 현재의 장년층(4,50대)의 상용직 고용률(20.0%) 보다는 높은 고용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여성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3.6년으로 남성(6.2년)에 불과하다.

한편 미래의 여성 장년층이 현재의 여성 장년층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도 있다. 현재의 여성 장년층의 경우 근로소득은 낮지만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을 통해 근로소득 부족분을 일정부분 보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성 장년층의 자가주택 비율은 50.7%로 청년층 여성(8.65)보다 월등히 높고, 남성 장년층의 자가주택 소유 비율(17.6%)보다 크게 높다(〈표 2〉 참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자료를 통해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장년층 여성 1인가구가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거나,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았던 과거 시점에 주택을 구입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현재의 청년층 여성들은 장년층이 되었을 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의 장년층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층 여성 1인가구가 낮은 고용안정성, 낮은 주거안정성, 적은 가처분 소득을 바탕으로 중년층 여성 1인가구가 된다면 현재의 중년층 여성의 경제적 여건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표2〉 1인 가구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 및 소득금액 **(2010)(단위: %, 천 원)**

		남성			여성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종사상지위 (단위: %)	상용	44.6	28.4	5.8	57.3	20.0	2.0
	임시	15.3	12.4	14.8	14.1	25.4	12.0
	일용	0.0	13.8	3.3	3.3	9.7	5.1
	고용주	1.0	1.1	0.0	0.0	1.8	0.1
	자영자	20.8	16.5	8.0	1.0	9.9	5.3
	기타	0.0	1.9	0.0	0.5	3.3	0.3
	비취업	18.3	25.9	68.1	23.9	29.9	75.2

소득금액 (단위:천원)	근로소득	1,303	1,171	182	1,327	788	83
	사업소득	196	373	57	21	327	64
	재산소득	0	5	2	4	25	17
	공적이전	11	63	273	17	94	203
	사적이전	127	53	194	162	118	239
	경상소득	1,636	1,636	708	1,503	1,353	60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반정호(2012: 62)에서 재구성

〈표3〉 국민연금 종별 가입자 현황(2010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

	총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남자	11,569,468	6,560,155	2,139,452	2,837,498	16,759	15,604
여자	7,659,407	3,854,625	1,435,257	2,262,285	73,463	33,777
여성비율	39.8	37.0	40.2	44.4	81.4	68.4

*자료: 김영옥 외(2011:10)

〈표4〉 근로유형별 국민연금 가입여부(2010년 12월 말 기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계
국민연금 가입자비중(%)	전체	98.71	43.38	21.86	82.68	63.32	72.82
	여성	98.39	38.05	14.15	72.41	41.92	61.67
	남성	98.88	51.19	27.51	85.72	73.04	80.12

*자료: 김영옥 외(2011:20)에서 재구성

고용상의 지위, 소득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에서 역시 여성의 가입율은 남성에 비해서 낮다. 〈표 3〉와 같이 남성 총가입자와 여성 총가입자는 40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며 전체 가입자 중 여성 가입자 비율은 39.8%이다. 또 근로유형별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보면 모든 고용형태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금 가입율이 낮다.

또 상용근로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98% 이상의 가입율을 나타내지만 여성 임시 근로자, 여성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금 가입율이 각각 38.05%, 14.15%에 불과하고 있어서 여성 비정규직의 연금 확보 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표 4〉 참조). 좌담회와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 역시 노후에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오래살까봐 걱정이 돼요.

좌담회 참여자 'A-가', 'A-나'는 모두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불안감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과 선례가 없는 것의 영향이 크다. 참여자 'A-가'는 나름대로 계획은 하지만 '항상 불안감'이 있다고 말하며, 'A-나'는 60살까지 일을 할 수나 있는지, 60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이후의 30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오래 사는 게 너무 무서워요"라고 말한다. 이제까지 60살까지 일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고용 모델은 여성의 경우 소수 전문직에서나 가능했다. 그 외에 비정규노동이나 자영업 종사자는 연령의 제한을 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3,40대 여성 1인 가구주는 고학력이면서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로 이들이 60살까지의 노동 모델을 만들고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 제가 회사를 큰 회사에 다녔었는데, 대기업이어서 급여는 많지만 오랫동안 다닐 순 없겠다는 생각에 삼십 대 초중반에 나왔거든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일과 관련해서 내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 부분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는 있지만, 항상 불안감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나 그런 데서 너무 그런 걸 막 얘기 하니까, 그런가? 없어도 될 불안감까지 막 생겨나면서 그런 게 더 조장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좌담회 A - 참석자 가)

> 전 솔직히 좀 오래 사는 게 너무 무서워요(웃음). 60살까지 노동을 하고, 솔직히 60살까지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웃음). 그러고 요즘에 90까지 산다잖아요. 그럼 나머지 30년

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 (좌담회 A – 참석자 나)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최대 최고의 방법은 오래 살지 말아야 겠다는 것. (인터뷰 B, 40대 초반)

■ 직업의 전환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인터뷰 참여자 A는 전직 지원이 안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A는 출판 일을 그만두고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현재 공부 중이다. 계획한 상담 공부를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3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A가 퇴직 후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재정적 지원은 8개월 동안의 실업금여가 전부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재직자 훈련을 위해 소요하는 비용을 능력개발지원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보전해 주지만 이는 사업체의 직무와 관련 교육 중심이다. 또 근로자나 실업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후에 훈련비를 환급하는 방식의 교육훈련비 지원제도가 있다. 하지만 교육훈련비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A와 같은 전문적 상담 교육의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런 배경에서 A 뿐만 아니라 다수의 1인 가구 여성들이 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재취업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웃기는 것은 직업의 전환 인생의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 저학력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더라구요. 고용센터에서 보기에 이 사람은 직업 훈련을 해가지고 질이 높게해서 취업을 시켜야 한다고 판단이 될 때만 그런 지원금을 준다고 … 교육의 기회가 평일 낮에 있는데 어떤 직장인이, 누가 후원을 해주지 않은 이상은 어렵지요. 그때는 수입이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어떤 다른 출판사도 솔직히는 데스크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비율이 적잖아요. 대다수는 일하다가 결혼해서 들어가거나 뭐 하거나 어떻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정말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인터뷰 A, 40대 초반)

■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는 저비용의 삶을 생각해요.

좌담회와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들 중 여러 명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저비용의 삶'이다.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부족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적게 쓰는 삶을 산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쪽으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복지체제가 바뀌어가지고 기본소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드는 구조가 되면 정말로 외부 도움없이 건강만 내가 유지할 수 있으면 그냥 살 수 있고, (인터뷰 B, 40대 초반)

■ 노인들이 할 만한 일이 없어요.

노후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고용안정성 확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같이 고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인의 신체와 경험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참여자들 역시 적절한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을 말한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노인들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이들이 신체적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노인들 자존감 떨어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굳이 젊은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늘 누구나 말하는 것이지만 삶의 경험치들이 있으시니까 개발만 하면 느릿느릿하게 뭔가 하실 수 있는 게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 (좌담회 A – 참여자 나, 30대 초반)

■ 여성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달라져야 해요.

더 나아가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온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 역시 과제로 제시된다. 여성들이 무급으로 참여해온 노동의 가치가 공식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낮게 평가받아온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고하는 접근이 될 것이다.

> 저는 노동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 논란이 되잖아요. 여자가 하는 가사노동도 그렇지만. 사실 여자들이 집에 있지만, 저희 어머니 성당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가서 이제 무료 급식하고 지역사회 환원한다며 많은 단체나 종교기관이 그런 무급노동을 갖고 많은 역할들을 했었죠. 저희 어머니가 일이 아니라고 굳이 강변하는 이유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역 화폐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갖고 돈을 쳐서 주고 서로 생존할 수 있게 그런 실험들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금을 받는 노동의 개념에서 여자들이 굉장히 불리한 지위에 있죠 … 노동에 대한 것, 임금으로만 가치가 책정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여성들에게 되게 불리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담회 A – 참여자 라, 30대 중반)**

좌담회와 인터뷰를 통해서 만난 3,40대 1인 가구 여성은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노후를 위해 별로 준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신 막연하게 저비용의 삶을 살면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문제의 구조는 여성의 비정규직화,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낮은 근속년수 등으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고용시장 구조이다. 이런 구조는 여성 1인 가구를 증대시키는 배경이면서 여성 1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구조이다.

다. 돌봄

1인 가구가 갖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 중의 하나는 친밀한 관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다. 여기서 외로움은 정서적 감성뿐만 아니라 보살핌이 필요로 할 때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교환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이다.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를 보장하는 물리적 차원만큼이나 친밀성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다. 2008년도 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1인 가구는 "외로움/미래에 대한 불암감 등 감성적 측면"과 관련해서 힘들다는 쪽에 44.5%가 응답했고 힘들지 않다는 쪽 응답률이 20.0%였다(변미리, 2008: 110). 또한 물리적 안정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일정부분 연결되어 있는데, 박기남(2011)의 연구에서 보면 고용불안정성은 2,30대 여성들이 친밀성의 관계를 지연시키게 한다.

〈그림2〉 1인가구의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 외로움/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감성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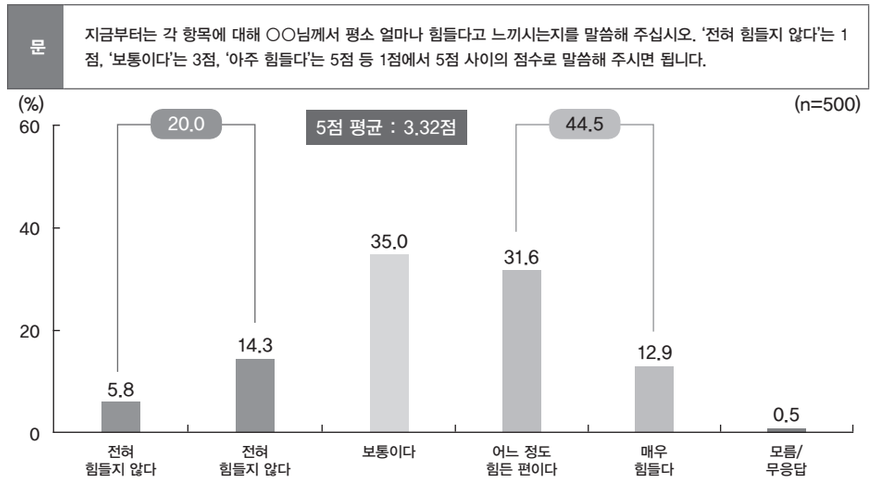

*자료: 변미리 · 신상영 · 조권중(2008: 110)

1인 가구가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혼 1인 가구 남녀는 부모님이나 형제 등 원가족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다(김혜영, 2007). 그럼에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사회적 연결망이 다양하지 못하며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동문회, 취미모임, 친목회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참여 정도를 조사했을 때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참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변미리 · 신상영 · 조권중, 2008: 120). 원가족과의 교류 역시 한국 가족이 친밀성의 단위로서의 역할보다는 계급재생산에 집착하는 도구적 가족주의의 경향을 강화할수록(김혜영, 2006) 불안정한 사회적 · 경제적 지위에 있는 1인 가구는 원가족과의 친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 **외롭게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요.**

좌담회 및 인터뷰 참여자들 역시 외로움이나 방치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독거노인이 되어서 외롭게 방치된 채로 혼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좌담회에 참여한 'A-다', 'A-마'의 경우 여전히 결혼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한다. 또 복지의 물리적 차원은 국가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지만 외로움이나 돌봄과 같은 정서적 차원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개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중증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크게 아픈 곳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는 안부 확인 시스템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하지만, 제도적 지원만으로 정서적 욕구가 다 충족되기는 어렵다.

> 제가 느끼는 불안감은요, 제 주변에 엄마 친구가 독거여성이에요. 독거노인인데, 나이가 있으셔서 혼자 살면서, 저희 엄마는 자녀가 있고 가족이랑 사는 것을 부러워하시고, 죽을 때 내가 혼자 죽을까 이런 걸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독거노인이 되어서 혼자 외롭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결혼을 해야되나 싶은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제일 커요. 외롭게, 독거노인 될까봐. **(좌담회 A – 참여자 다, 30대 초반)**

> 저는 할머니가 말년에 오랫동안 많이 아프셨는데,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시어머니를 간호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걸 옆에서 보면서 나의 노후를 많이 상상해보게 되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만약 내가 나이 들어서 아프면. 만약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나의 엄마가 할머니에게 했듯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을까. 생존은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나중에 너무 외로워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생존은 점점 더, 복지국가 논의도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를 해소시켜줄만한 거는 내가 알아서 관계를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 **(좌담회 A– 참여자 마, 30대 초반)**

■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독신 선배들이 안타까워요.**

좌담회 참여자 'A-바'가 만난 선배들 중에 비자발적으로 독신이 된 경우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다.

> 선배들은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 그런 분들 중에서는 결혼이 원래 희망이던 분들도 계신 거에요. 자의로 비혼이 된 게 아니라, 마흔이 되다 뭐 하다가 놓치고 못가고 짝이 없고 그런 문제인 거에요. 그런 경우인데 동거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싱글이고 이러면 진짜 우울하고 집에서 잘 안 나오고 대인기피증 생기고 그렇게 가는 거에요. 제가 그런 선배들을 몇 명을 봤어요. **(좌담회 A – 참여자 바, 30대 중반)**

좌담회 참여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을 고려한다. 하나는 보편적 돌봄 체계를 보다 잘 구축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보험 체계에 간병을 통합하는 등 필요로 하는 1차적 보살핌의 공적 서비스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보편적 보살핌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친밀성의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하는 것이다. 좌담회와 인터뷰의 참여자들은 이성 및 동성 간의 파트너쉽, 공동체 가구 구성,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등을 상상한다.

라. 소결

여기서는 3, 40대 여성 1인 가구의 출현과 이들이 처하게 된 복지 현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그것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40대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의 수적 증가가 새로운 집단의 출현을 알리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보다는 여전히 가족 단위 경제 체제와 보살핌 체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제도로서 혼인에 편입되지 않고 단독으로 가구를 유지하는 집단

의 증가가 기존 가족 단위 복지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 임금격차 고용형태의 성별화 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들 여성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미래에는 더욱 빈곤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수명 연장을 통해서 노인으로서 생애주기가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1인 가구가 새로운 취약집단을 형성하기 전에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적 전환은 1인 가구 집단을 기존 가족에 편입시키거나 혹은 1인 가구의 특수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경제적 소득과 보살핌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남녀 모두 어떤 관계적 결합을 통해서든 경제적 주체이자 보살핌의 주체로 역할 할 수 있는 복지 제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3. '가족' 강화가 복지의 대안이 되기 어려운 이유

1인 가구의 증가 또는 비혼 남녀의 증가가 나타낼 수 있는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것은 '가족' 기능을 재강화하고 이들이 제도적 '가족'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혼인을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 글은 1인 가구 증가 현상이 보여주는 것이 관계적 파트너십 욕구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혼인으로 표상되는 파트너십 결연이 지체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미흡하고 여전히 가족이 복지 기능을 대체하는 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적 '가족'의 특성이 가족으로의 편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기능의 강화나 가족으로의 편입을 장려하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인 가구의 증가가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가족에 기반한 복지체제를 개인 단위 복지체제로 재구성하고 혼인의 본래적 기능인 관계적 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 부양부담과 현실적 기회구조

1인 가구는 거주 단위 개념으로 배우자가 있지만 홀로 생활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1인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비혼, 이혼, 사별 등으로 형성된 독신 가구이다. 특히 3,40대 1인 가구는 비혼 가구의 비중이 크다. 비혼은 비자발적 비혼과 자발적 비혼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자발적 비혼은 개인의 선택적 의사가 강한 경우이고 비자발적 비혼은 개인의 의지를 통해서 보다는 상황적 조건을 통해 비혼에 이른 경우이다.

비혼의 증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나 개인화에 대한 지향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한국에서 비혼의 증가는 비자발적 비혼의 비율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족의식과 성의식에 있어서 비혼 1인 가구는 기혼 가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혜영, 2007: 1056). 아래 〈표 5〉에서 비자발적 비혼 사유 1순위는 '적절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거나 결혼 기회 상실'(47.1%)이고 그 다음이 경제적 이유(16.9%)이다. 하지만 '적절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 중의적이라서 '경제적 이유'가 사실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더 높을 수 있다.

〈표5〉 비혼 사유

분류	사유	사례 수(%)
비자발적 비혼	경제적 이유	198 (16.9%)
	결혼이 주는 역할 부담	112 (9.6%)
	적절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거나 결혼 기회 상실	551 (47.1%)
자발적 비혼	결혼 시기가 아님	88 (7.5%)
	결혼 생각 없음	220 (18.8%)

*자료: 김혜영(2007: 1052)에서 재구성

경제적 이유가 지칭하는 것은 결혼으로의 진입단계와 결혼 유지단계 모두에 해당한다. 진입단계에서는 결혼식 비용, 집 마련, 가구 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들

〈그림3〉 미혼남녀(20-44세)의 배우자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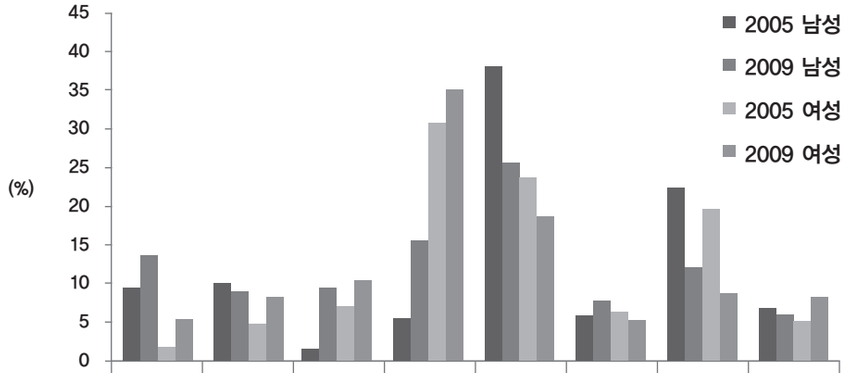

	신체적 조건	건강	직업	경제력	성격	가정 환경	신뢰와 사랑	기타
2005 남성	9.4	10.1	1.4	5.5	38.2	6	22.5	6.8
2009 남성	13.5	9.0	9.5	15.6	25.7	7.9	12.4	6.4
2005 여성	1.8	4.8	7.1	30.8	23.8	6.5	19.5	5.6
2009 여성	5.3	8.3	10.5	35.0	18.7	5.3	9.2	7.7

*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2005, 2009)

수 있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0)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8,278만원이었던 결혼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이 2009년에 1억 7,542원으로 십 년 사이에 무려 2.1배가 증가했다(권문영, 2012:42에서 재인용). 지역과 계층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의 경우 높은 전세가격을 고려하면 이 보다 많은 금액을 소요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비 서울 지역의 경우는 평균 금액이 위 금액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 단계 국면에서는 상호 부양의 책임 및 자녀, 부모 등 혈연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이 해당된다. 하지만 고용유연화 전략이 확대됨에 따라 남성 노동자의 38.7%, 여성 노동자의 59.8%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산업별로 최대 211.5%까지 차이가 나고 평균적으로 126.9%의 임금격차를 보인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2).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 부양의 역할을 사실상 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가족이 경제적

부양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 된 반면 부양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남녀 모두 배우자 조건에 대한 선호에서 '성격'이나 '신뢰와 사랑'과 같은 내적인 가치보다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높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3〉과 같이 2005년 조사와 2009년 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경제력과 직업 선호에 대한 상승폭과 성격 요인에 대한 하락폭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가족부양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부재한 상황에서 집값은 상승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은 가속화되는 물리적 조건에서는 개인들이 혼인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남성들은 집값이나 경제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여성들 역시 남성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개인들이 복지 공백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4〉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60세 이상 인구)(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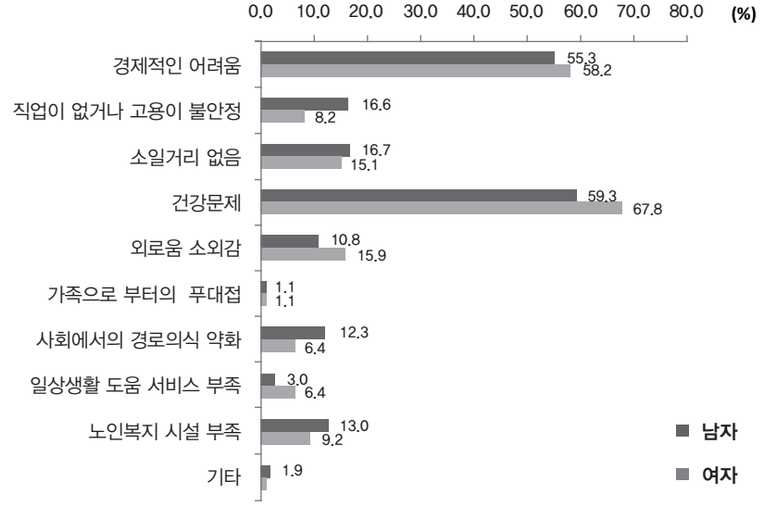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1)

배우자 상호간의 부양뿐만이 아니라 자녀나 부모 등 혈연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안정성 속에서 개인이 가족 결성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크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아래 〈그림 4〉에서 보면 60세 이상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역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여성 노인의 28.8%, 남성 노인의 34.1%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1).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박탈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노인들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혹은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 불안정성 속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관계적 결합의 욕구를 억압하게 되는데, 관계적 결합을 통해서 생활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동시에 그러한 결합이 경제적 생활의 부담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더욱 확대된다.

■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경제적 조건을 안볼 수가 없어요.

좌담회와 인터뷰 참석자들 역시 제도적 혼인으로의 편입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부담, 현실적 기회구조의 제약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 A는 상대방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가 막상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가난한 사람과 만나서 자선하듯이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머리 속으로는 사람이 좋으면 그것만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면 싶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다.

> 나도 내가 속물이라는 생각을 했아요 (웃음) 막 돈 많으면 좋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일 안하고 이렇게 노는 것도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돈이 좀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열등감이 가난한 것에서 온 것이 컸구나 생각을 하니까 돈이 좀 있으면 자신감이 좀 생기겠다는 생각을하니까 약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구요 상대방이 돈이 많고 그러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막연히 있더라구요 … 따지고 보면 나도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선하듯이 그렇게는 못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터뷰 A, 40대 초반)

> 그렇지요 사람이 좋으면 그냥 그걸로 이것저것 안보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조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을 안 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뷰 A, 40대 초반)

■ 자식들 역시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좌담회 참여자 'B-바'는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경우로 결혼으로 이행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 부담 문제이다.

> (파트너의 어머니와) 그냥 그 여자로서 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갖고 가고 싶은 거에요. 여자로 더 고생하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힘들게 살았고 막 … 저희 집은 부담 줄 것도 없고 사실, 경제적인 형편이 우리 집이 부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정말 가난하거든요. (좌담회 B-참여자 바, 30대 중반)

> 아파트 이런 데에 고립된 노인이 되게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크고, 그런 문제도 굉장히 큰데. 그 분이 나중에 거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셔서 평생을 이제 눕게 되셨거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공포에 질려 버리시는 거야. 내가 거동을 못하면 저렇게 가서 자식들 관심도 없이 평생 누워서 보는 사람도 없이 살게 되겠지 하고. 나를 붙잡고 막 걱정을 하시는데, 그 공포가, 내가 거동을 못하면 자식들이 한 번씩 쳐다보겠지 이런 게 아니고 버림받고 완전히 잊혀지고 침대에 누워서 죽기만 기다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당연히 되는 거구나 라는 절박한 공포가 있더라고요. (좌담회 A, 참여자 라, 30대 중반)

■ 독신들이 결혼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사회는 동질혼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는 혼인이 계층적 결합임을 의미한다. 학력의 위계가 작동하는 상황은 결혼의 현실적 기회구조를 제약하는 한 이유이다.

> 여자 고학력이 높아질수록 남자 저학력과 결혼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남자들은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하잖아요 … 여자들은 안되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여성 싱글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예요. 어쩌다 운좋은 사람들은 늦게라도 누군가를 만나기는 하겠지만 저도 그 가능성이 어쩌다 운좋으면 만나겠지만 통계적으로는 나도 혼자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쓸쓸한 그럴꺼라고 생각하면 쓸쓸하니까 (인터뷰 A, 40대 초반)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자기보다 학벌이 좋은 여자들을 봤을 때 그냥 상관없고 유지하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의식하게 되면 나도 싫은 거예요. (인터뷰 A, 40대 초반)

나. 돌봄 부담과 역할 갈등

산업화 시대에 틀이 잡힌 근대적 핵가족 형태의 기본은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전업주부의 역할분업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이다. 이런 구성은 단순히 역할 관점이나 의식의 차원에만 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물질적, 제도적 형성과 연루되어 있다. 가족 안에서의 성별 분업에 대한 '의식'은 상당 부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의식 변화의 실현보다는 오히려 의식과 물리적 조건의 차이와 지체로 나타난다. 즉 남녀 모두가 일과 돌봄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가족 내에서 부담해온 돌봄노동이 공적화 되는 수준은 아직 낮다. 근대적 생산성 중심주의는 여성들의 무급노동이 재생산 역할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작동 가능하다. 페미니스트들은 그간 여성들의 보살핌 노동이 비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생산자로서 접근성이 향상되기 위해서 돌봄의 탈 가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왔다(Orloff, 1993).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생산자로서 접근성은 낮고, 남성의 돌봄노동으로의 접근 역시 더디게 진행된다. 무엇보다 인간 누구나 돌봄의 주체이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의 돌봄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다.

역할 갈등과 지체 현상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지체이다. 과거와 달리 남녀 모두 여성이 결혼이나 육아와 상관없이 일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실제로 한 취업포탈사이트가 20-30대 남녀 직장인을 상대로 맞벌이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녀 직장인 78%(567명)가 맞벌이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여성 직장인(74.8%)보다는 남성직장인(80.8%)의 맞벌이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선호를 나타낸 것은 미혼 남성 직장인으로 87.1%의 미혼 남성이 맞벌이를 선호한다고 밝혔다(잡코리아, 2008). 하지만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 49.4%(2011)에 머물고 있다(〈그림 5〉 참조).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제시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육아부담'이다. 남녀 모두의 기대가 달라진 것과 달리 여성들은 여전히 육아부담의 1차적 담당자이다.

〈그림 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둘째, 가구 내 가사분담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지체이다. 2010년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 가사분담 방식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성 31.2%, 여성 42.2%로 나타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부인이 주로 담당한다는 응답과 부인이 주로 담당하고 남편도 분담한다는 응답을 더하면 거의 90% 가까이가 되고 있어서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여성이 주 가사담당자로 역할 한다(〈그림 6〉 참조).

〈그림6〉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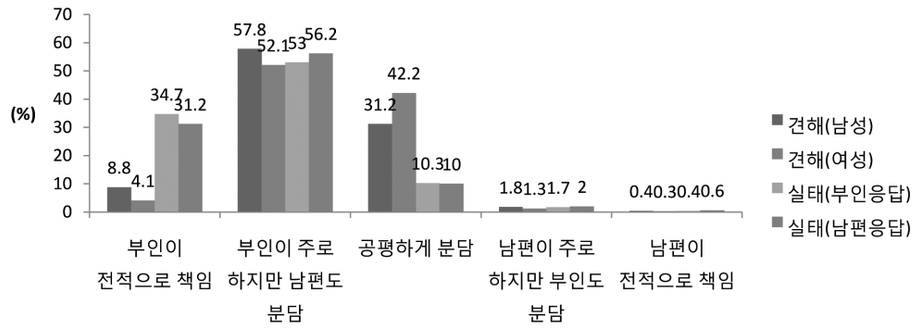

*자료:통계청, 사회조사(2010)

끝으로 보살핌에 대한 가치 평가와 보살핌의 현실 간의 지체이다. 이동옥(2009) 연구에서 보면 여성 노인들은 한평생 보살피는 자로서 역할해왔음에도 불구하도 본인이 보살핌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보살핌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생산중심주의 사회에서 보살핌은 가치있는 행위로 인식되지 않으며 여성들은 보살피는 자로서 자신들의 행위를 보상받을 만한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의존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힘들어한다. 더욱이 남녀 모두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지향성을 높임에 따라서 보살핌 받는 자로서 노인은 보다 취약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생산중심주의를 재구성할 보살핌 사회로의 전환은 더디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생산중심주의는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노인으로서의 생애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노인 보살핌의 상당 부분은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 2010년도 조사에서 65세 이후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87.4%가 같이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1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수발율은 남성 87.4%, 여성 70.9%였으며 수발자는 가족원이 다수를 차지한다(〈그림 7〉 참조).

이렇게 돌봄의 부담과 관련한 지체현상과 역할 갈등은 여성들이 제도 '가족'으로의 편입을 주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가족'으로의 편입이 불러올 역할 갈등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으로의 편입이 자신이 제공받을 수 있는 보살핌의 대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배경일 수 있다.

〈그림7〉 65세 이상 노인의 수발율 및 수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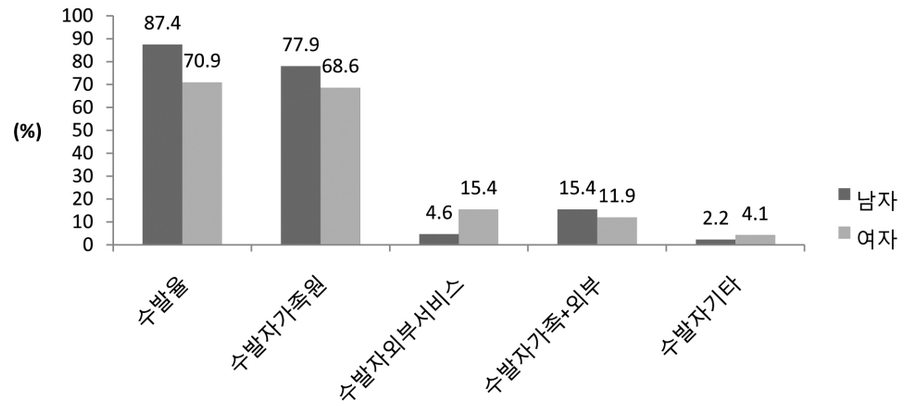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1)

■ 가족이 아니더라도 한 인간이 존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좌담회와 인터뷰 참석자들 역시 돌봄 부담과 역할 갈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한점은 이들이 결혼 제도에 편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이다. 두 번째 좌담회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장기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참석자 모두는 관계로서 파트너십에 매우 만족하지만 이 관계를 공식화해서 결혼으로 이행할 의사는 없다. 그러한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것 역시 혼인 제도로 편입됨으로써 부여되는 역할 분업과 낮은 수준의 돌봄의 공공화로 인해 심리적이든 실질적이든 여성들이 그러한 부담을 갖게 되는 현실 때문이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한 인간이 존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지향하는 체계들이 잘 구축되었을 때 보다 자연스럽게 보살핌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부양하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거꾸로, 내가 누

군가에게 우호적인 관계라는 이유로 나의 무언가를 … 제가 이미 기생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계속 그걸 되게 신경 쓰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어머니가 갑자기 암 선고 받고 그래가지고 한 번 다 접고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부모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그 삶과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 거에요. … 거꾸로 그렇게 요구받았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주제, 복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어디까지를, 가족이 아니더라도 한 인간이 존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최대한을 가능하면 확보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있지만 서로 선택에 의해서 곁에 부양을 하건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라는 되게 이상적이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좌담회 B, 참여자 가, 30대후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가족 간에 크나큰, 너무 개인한테 부담이 되는 보살핌노동 자체에 좀 반대하고, … 만약 내가 아파서 누가 간병을 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간병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온다고 하면 전 솔직히, 엄마한테 병원 와서 내 간호를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애인한테 부탁할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은 많이 가상으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옆에 가서 붙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우리 둘 사이에서 지금의 생활공동체 내에서 그런 관계가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내 부모를 내가 할 생각도 없는데 내 파트너가 가서 한다는 건 당연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좌담회 B, 참여자 바, 30대 중반)

■ 제도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시월드와의 합체이니까요.

혼인을 통해 제도 '가족'으로 편입하는 것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며느리로서 역할 부담의 문제를 떨치기 어렵다.

남자친구는 결혼을 싫어해요. 저는 별 아무 생각이 없고. 그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싫어하면 할 수도 있는 거 같애. 뭔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해서. 재산 문제가 있고, 부모님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특히 여성에게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길 해요. 저는 뭐, 별로, 하면 하지 뭐 이런 건데 '딱히 관심이 없어서' 이런 상태로. 그래서 같이 산지 이제 5년 됐는데 둘 다 결혼을 한다거나 하는 건 얘기는 가끔씩 하기는 해요. 계속, 생각날때마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비가 줄었고, (좌담회 B, 참여자 가, 30대 후반)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사실 시월드와의 합체잖아요. 저는 시월드의 그런 그늘? 그게 엄청난 거 같고. 그냥 애를 키우고 그런 것 만으로는 사실 별로. 물론 아이 키우고 이런 건 되게 힘든 노동이고 그 노동을 누가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문젠 되게 많은데, 그냥, 개개인의 인간이나 둘 간의 파트너쉽이나 이런 문제라기 보다는, 저는 정말 그런 문제(시월드)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혼 하려는 친구도, 그 친구는 사실 회사에서 만난 남자 사람인데 그 사람도 보면, 시월드 때문에 와이프가 계속 빡치는 거죠. 뭔가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결혼한 사람 그렇게 많진 않지만, 올해들어 결혼한 선배들이나 이런 상황 봐도, 계속 결혼하기로 하고 상견례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 구조가, 좀 힘들지 않나. (좌담회 B, 참여자 바, 30대 중반)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고요 그냥 결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인터뷰 B, 30대 후반)

■ 자식들이 부모를 돌본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아래는 좌담회 참여자 'A-라'의 이웃집 할머니 사례이다. 할머니는 자식이 있지만 외로워서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로 'A-라'가 보기에 할머니의 사례는 부모 자식 간의 상호 돌봄의 체계가 약화된 현실을 보여준다.

이 할머니는 부유하지만 너무 외로워서 죽을 거 같은 할머니야. 맨날 밖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빨가벗고 저기서 춤을 추면 사람들이 날 쳐다 볼까?' 이래요. 쳐다보긴 누가 쳐다봐 이러면서. 아무도 자신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싸움이 나면 막 들려오는 소리가, 맏아들이 막 싸우는 소리를 하면, '나를 좀 데리고 살아다오'이러면, 하는 말이, '엄마, 지금 어떤 세상인지 알아? 그럼 내 자식들이 나를 봉양할 것 같아?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늙을 때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버림 안 받고 자기가 먹을 거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죽자살자 노력하는데. 애들은 대학생인데. 왜 우리집에 와서 그런 걸 파토놓으려고 해. 엄마가 우리집에 오면 난 이혼당하고.' (좌담회 A, 참여자 라, 30대 중반)

■ **배우자가 있다고 돌봄이 가능하리라 생각지는 않아요.**

조사에 따르면 독신 여성의 독신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독신 남성의 만족도 보다 높다. 물론 이것이 모든 독신 여성의 상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일과 스스로에 대한 돌봄을 병행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B는 결혼을 통해 돌봄의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 오히려 결혼은 자신이 유지해온 일-가족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은 안 해봤지만 제가 그런 질문을 들으면 반박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반증을 자꾸 하지요 아니 같이 살아도 그렇게 돌봐줄 수가 있는줄 아느냐 부인이 아픈데 남편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고 그렇게 살뜰히 보살펴 주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다 자기 살기 바쁜 것이다 뭐 그렇게 아프겠느냐 아프면 친구한테 전화하면 되지 (인터뷰 B, 30대 후반)

■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관계가 영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관계가 영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가족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여성을 특별하게 관리했지만 지금 이혼의 증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부양과 보살핌의 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이혼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 남편이 먼저 죽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어올지는 모르겠고. 똑같이 노후가 불안한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남자들이 후지기 때문에 … 별로 남자들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웃음) (좌담회 A, 참석자 나, 30대 초반)

> 남편이 그동안 사업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고. 애 둘만 남기고 이제. 언니 혼자 애 둘을 열심히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것도 노후 대책이라고 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여성들도 맨날 이혼한다고 입에 달고 살고. 결혼은 노후에 대한 방편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결혼은 전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좌담회 A, 참석자 나, 30대 초반)

다. 소결

여기서는 3, 40대 여성 1인 가구의 증가가 보여주는 복지의 쟁점이 가족 강화와 가족으로의 편입이라는 전통적 전략을 통해서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부양부담과 현실적 기회구조의 한계', '돌봄 부담과 역할 갈등' 두 가지 차원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가구 단위의 부양과 보살핌의 체제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성별분업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족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 관계를 어렵게 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 3, 40대 여성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 구성 방식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여전히 성별분업체계에 근거한 부양과 보살핌의 책임단위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지체양상은 가난한 3, 40대 1인 가구 증가 현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취약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가족 단위 복지 체제에 대한 문제 지적이 모든 사람이 독립자로 존재하는 철저히 개인화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족단위 복지체제로부터의 전환은 경제적 계층적 결합이 아니라 관계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의 생성 가능성을 좀 더 밝게 할 것이다.

4. 의제 제안 :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

좌담회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제를 제안한다.

가. 복지 수급권의 개인 단위로의 점진적 전환

세인스베리(Sainsbury, 1999)는 젠더 체제의 유형을 남성 부양자 체제, 성역할 분리 체제, 개인주의 체제로 구분하고 개인주의 체제를 소득자의 역할과 돌봄자의 역할을 공유하고 복지 수급권을 부양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개인을 단위로 하는 체제로 정의한다. 세인스베리의 개인주의 체제의 복지 모델은 개인을 단위로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고용과 임금 구조가 양성에 동등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보살핌 노동에 있어서 가정 안팎에서 양육자에 대한 유급 요소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사회 복지 모델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방향이 한국사회에 적합한 복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세인스베리의 모델이 제시하는 모든 개인이 일과 돌봄을 공유하는 체제가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전망이라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일정정도 이루어졌지만 복지 정책은 전망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진단과 요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와 같이 여전히 강한 가족주의에 기반한 부양자 모델이 지배적인 경우 개인주의 체제로의 접근이 오히려 여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가능하다(마경희, 2003)

그럼에도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최근의 현실은 개인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자족인 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개인들 간의 유대와 돌봄의 실천을 확대할 것이라는 진단을 해보게 된다. 개인 단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평등한 고용의 실현과 보살핌 노동의 가치평가 제고가 될 것이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 생계부양자 체제를 통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이와같이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치 평가의 전환을 요청한다. 여성이 생계 보조자라는 가정을 통해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여성 일자리의 낮은 가치평가와 여성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다수의 여성을 빈곤계층으로 전락시키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 중심으로 지원되는 정책들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에서 1인 가구는 소득 보전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소득공제에서 부녀자 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되고, 월세 공제 역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가 오히려 빈곤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접근은 1인 가구의 현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장려세재(ETC) 역시 2인 이상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주만 수령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에서 다인가구, 다자녀가구가 우선권이 있도록 설계된 조건을 수정해서 1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1인 가구가 현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진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도록 고용정책이 변화해야할 것이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본소득, 1인 1연금 정책,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의 부양의무자 제도 축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다른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해 준비과정에 있어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청년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와 삶의 질 유지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다.

현재 전업주부와 같이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가입 대신 임의가입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대신 배우자의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을 이혼시에는 분할연금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0%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한 사람만의 연금으로는 노후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분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통한 수령액은 더욱 적어지게 된다.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일정정도 있는 상황에서 1인 1연금으로의 전환이 사회적 반발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개인이 노후에 다른 사람의 도움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일정정도 자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인 1연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만 하고, 특히 이러한 전환은 장기적으로 여성노인의 빈곤화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인 1연금은 임의 가입 대상자를 연금 수급권 안으로 안정적으로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금 납부의 지속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으로 실업상태를 반복하게 됨으로써 납부 예외기간이 길어지면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 실업 급여를 받는 자에게 연금 납부액을 보조하여 납부 예외 기간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국민기초수급권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지적된 바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 모든 개인이 독립적으로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나.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한 보살핌 관계망의 결성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성평등 복지 국가의 중요한 전망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돌봄에 대한 공적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보살핌 관계망의 결성이 확산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제로 제안한다.

1인 가구의 증가가 보여주는 현상은 규범적 가족이 보살핌 관계망으로서 역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것의 배경에는 제도화된 가족에 편입되기 위한 장벽에 가로막혀서 편입이 제한되고 고립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 배경은 제도화된 가족과는 다른 관계적 실천들을 가족 바깥에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성 간 동거, 동성애자 파트너십, 공동체 가구의 결성 등 여러 가지 실행 방식이 있다. 1인 가구 증가는 보살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제약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이성 간 동거나 동성애자 파트너십의 경우 두 사람 사이의 긴밀한 친밀성의 연대가 가능하지만 자녀 양육이나 원가족과의 연대 등에 있어서는 관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보살핌의 공공화를 위해서 아동, 노인과 같이 취약한 대상에 대한 돌봄의 제공이 여성들 의해서 부담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공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 요구되어 왔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가 보여주는 과제는 물리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넘어 모든 개인이 보살핌의 대상이며 또한 다른 사람과 보살핌을 나눌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점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립화가 제도화된 가족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크고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를 가족 체제 안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한다면, 1인 가구가 가족으로의 편입을 넘어 다른 방식의 보살핌의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도 가족으로의 편입이나 1인 가구에 대한 특별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공동체 결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사회에 기반한 돌봄핌 제공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 들을 고려할 수 있다.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해 서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생활동반자법은 이성 파트너십과 동성 파트너십이 모두 등록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새로운 관계의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전략의 성격도 강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변화에 대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동반자법 형태를 통해서 적어도 현재의 결혼 문화에서 결혼으로 진입단계에 작용하는 경제적 부담의 완화, 파트너 관계에서 역할의 변화 등을 새로운 틀을 통해 전략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한이 법적 조항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

이 외에도 공동체 가구의 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을 수 있다. 2인의 커플 관계가 아니라도 보살핌을 주고 받는 다인의 집단이 보다 쉽게 결성될 수 있도록 공동체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 "KB daily 지식 비타민: 1인 가구의 주거 특성 분석", 12-65호(2012. 5. 17)

권문영(2012), "불안정 노동 여성의 '비혼'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권주안 · 이유진 · 최혜경(2007), "1인가구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김영옥 · 김종숙 · 강성호 · 이선행(2011), 『여성 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의 실효성 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옥연 · 문영기(2009), "1인가구 주거실태 분석: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주택환경학회(편), 『주택환경』, 제7권 2호, 37-53쪽.

김혜영(2007), "1인 가구의 비혼 사유와 가족의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41-1057쪽.

노동부(2011), 「고용형태별임금실태조사」

마경희(2003), "한국 사회정책 체제의 젠더 계층화 논리와 여성의 사회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반정호(2012), "1인가구의 사회 · 경제적 특성과 변화", 한국노동연구원(편), 『노동리뷰』, 2012년 4월호, 55-67쪽.

변미리 · 신상영 · 조권중(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건복지부(2011), 「노인실태조사」

신미림 · 남진(2011), "서울시 1인가구의 주택수요 예측",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편), 『국토계획』, 제46권 제4호, 131-145쪽.

이동옥(2009), "노년기 여성의 보살핌 경험과 가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이재경(2004), "한국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20권 1호, 229-244쪽.

이희연 · 노승철 · 최은영(2011), "1인가구의 인구 · 경제 ·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편), 『대한지리학회지』, 제46권 제4호, 480-500쪽.

잡코리아(2008), 20, 30대 미혼남녀 직장인 대상 맞벌이 선호도 조사 결과, http://www.jobkorea.co.kr/jobtimes/news/research/result/2008_0516.asp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가구주택) 결과」, 보도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2), 「2012년 3월 비정규직 통계 분석」

한지희 · 정소이 · 박준영(2011), "1인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거실태 분석 - 「2010 인구주택총소자」를 바탕으로",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2호 (통권 제56집)

Orloff, Ann Shola(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93, Vol. 53(June: 303-328).

Sainsbury, Diane(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성평등복지 의제 2

노동시간 재구성으로 쉼표 있는 사회 만들기

노동시간 재구성으로 쉼표 있는 사회 만들기

김창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 들어가며

시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간 중에서도 특히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노동시간이다. 한 정치인이 표방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한국 사회 노동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1]는 한국의 노동시간에 지친 노동자들은 오늘도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며 야근에 돌입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합의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2] 노동시간이 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교대근무제를 재구성하며 실제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다. 노동자들의 삶에 저녁이 자리할 날이 머지않은 듯도 하다.

하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는 성별에 따른 시간 격차가 반영되어 있지 않

1 우리나라는 연평균 1인당 노동시간이 2,193시간(2010년도)으로 OECD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며,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되어 있다.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은 44.3시간으로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인 34.35시간에 비해 10시간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도 주당 근로시간이 48.3시간으로 OECD 평균 41.0시간에 비해 7시간 이상 긴 것으로 보고된다.(홍승아, 2011).

2 보건복지부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 즉, 시간은 평등하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는 자원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험되는 시간은 동일하지 않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지만, 시간은 불균등하게 경험되는 불평등한 자원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드러내기 위해 특히 여성이 경험하는 시간에 관심을 두며, 이를 통해 성평등 관점이 전제된 노동시간 단축 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단순히 하루의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 논의를 넘어 생애시간표에까지 그 논의를 확대하려 한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이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100세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의 삶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재구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본 논의를 구성하기 위해 세 번의 좌담회를 진행했다. 첫 번째 좌담회는 야근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야근을 강요하는 조직 생활 밖에 있는, 프리랜서들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가장 바쁠 것이라고 여겨지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들과 함께 하였다. 각각의 좌담회에는 네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바쁨', '시간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답게 평일 저녁에 이루어진 세 번의 좌담회에 모든 참석자가 제 시간에 모이기는 불가능했다. 어떤 참가자는 늦기도 하고 또 어떤 참가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늘이 좌담회 날인지를 잊기도 했다. 직종이나 연령대 등이 다양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자신 혹은 주변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면서 좌담회의 내용은 풍성했다고 생각한다.

좌담회 내용은 녹음되었고, 녹취하여 사용하였다. 좌담회에 참석한 11명의 일반적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좌담회 참석자의 일반적 특성

차수	이름	특성
1차	고	39세. 출판사에서 일하다 그만 둔 지 한 달 반 만에 재취업. 혼자 살고 있음
	탕	29세. 디자이너. 야근이 심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현재는 프리랜서. 별도의 작업실을 두고 일하고 있으며, 오전에는 아르바이트 중
	열	35세. 출판사 근무. 둘째 아이 임신 중. 시부모님 및 남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음. 분가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불가능
	통	38세. 아동학습만화 출판사 근무. 전일제 노동자인 친구 및 고양이 1마리와 동거. 현재 새로운 잡지를 창간하는 일에 매진 중
2차	옥	35세. 3년간 직장 다니다 프리랜서로 독립한 학습만화 만화가. 부모님과 동거 중이며 별도의 작업실을 두고 있지는 않음
	세	34세. 독립영화 감독. 영화 작업이 한창이어서 주로 작업실에서 기거.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고 있음
	치	보험회사, 벤처기업 등을 다니다가 현재 3개 직업을 병행 중. 어머니와 동거
	락	35세. 글쓰기, 영상만들기, 배우 등 약 6개 정도의 직업을 병행 중. 그동안 거친 직업이 100개쯤 되는 것 같음. 친구와 동거 중
3차	홍	42세. 학습지 출판사에서 16년째 근무 중.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 1명과 남편이 있음
	소	38세. 증권회사에서 12년째 근무 중. 올해 6월부터 1년간 휴직 중. 자녀 2명과 남편이 있음. 그동안 자녀 양육은 친청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음
	양	32세. 청소년 기관 상담팀에서 5년째 근무 중. 자녀 1명과 남편이 있음. 육아휴직 후 7월 복직

2. 젠더 이슈로서의 시간

여기에서는 장시간 노동시간의 문제나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간의 재구성을 논의하는데 있어 성별을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똑같이 주어지는 자원인 것 같지만 성별에 따

라 시간과 맺는 관계는 다르게 나타난다. 시간 자원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지[3],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간규범의 남성중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시간 불균등

(1)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간 격차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달리 단시간 근로 및 시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의 경우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적정한 노동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하루 근로시간이 짧다기보다는[4] 비정규직의 일이 연속적이지 않아 안정적 소득보장 및 경력 관리 등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래의 표는 2010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및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적으며, 급여 또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8년 3월에 비해 2012년 3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동일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정규직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모두 증가하는 추

3 '시간 불균등(time divide)'은 Jacobs & Gerson의 논의에서 빌려 온 개념이다. 이들은 일과 가족을 둘러싼 미국의 사회적 · 인구통계학적 지형의 변화가 몇 가지 시간 불균등을 출현하게 했고, 이러한 시간 불균등이 많은 이들에게 시간 압박과 일, 가족, 개인생활 간의 갈등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시간 불균등은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 가구의 증가에 따라 등장한 일-가족 불균등, 노동력의 이원화에 따른 직종 불균등, 실제 노동시간과 이상적 노동시간 사이에서 커져만 가는 열망의 불균등, 일하는 부모와 부모가 아닌 노동자들을 분리시키는 부모역할 불균등, 여성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젠더 불균등이다(Jacobs & Gerson, 2004).

4 김성희(2012)는 한국의 노동시간체제가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정규직과 동일한 고용착취형 구조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체제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특징이 부가된 남성가장 모형 또는 자유방임형 유연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고용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은 모두 길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중위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중은 여성이 압도적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장시간노동체제에 속해 있다.

〈표2〉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및 임금(전국) (단위 : 일, 시간, 천원, 원)

	전체 근로자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총 근로일수	22.2	22.3	22.1	22.9	23.0	22.8	20.0	20.7	19.3
총 근로시간	187.0	181.2	190.6	194.4	192.1	195.6	164.2	158.5	170.1
정상 근로시간	176.2	174.4	177.3	181.6	183.6	180.5	159.8	155.3	164.4
초과 근로시간	10.8	6.8	13.3	12.9	8.5	15.2	4.4	3.2	5.7
월급여액	2,023	1,477	2,361	2,285	1,711	2,583	1,219	993	1,452
정액급여	1,904	1,415	2,207	2,139	1,631	2,403	1,181	968	1,400
초과급여	119	62	155	145	80	180	38	25	51
연간 특별급여	3,630	1,878	4,716	4,712	2,685	5,765	306	207	407
시간당 정액급여	11,155	8,370	12,880	12,160	9,161	13,716	8,067	6,732	9.443

※ 출처 :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0

세에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의 비정규직 수는 감소하고 있고 여성 비정규직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3월에 비해 2012년 3월 남성 비정규직은 2,843,000명에서 2,690,000명으로 153,000명이 감소하였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2,795,000명에서 3,119,000명으로 324,000명이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8년 3월의 경우 49.57%에서 2012년 3월 53.69%로 4.12%P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비정형적 패턴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생애를 통틀어 여성과 정규직인 남성과의 노동시간 격차는 점차 심화된다.

〈표3〉 성별 비정규직 규모(전국) (단위 : 천명)

	정규직			비정규직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08년 3월	10,356	3,962	6,394	5,638	2,795	2,843
2008년 8월	10,658	3,991	6,667	5,445	2,746	2,699
2009년 3월	10,702	4,020	6,682	5,374	2,748	2,626
2009년 8월	10,725	3,891	6,833	5,754	3,073	2,681
2010년 3월	11,119	4,132	6,987	5,498	2,943	2,554
2010년 8월	11,362	4,228	7,134	5,685	3,037	2,649
2011년 3월	11,294	4,218	7,076	5,771	3,021	2,750
2011년 8월	11,515	4,273	7,242	5,995	3,203	2,791
2012년 3월	11,612	4,379	7,233	5,809	3,119	2,690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그림1〉 성별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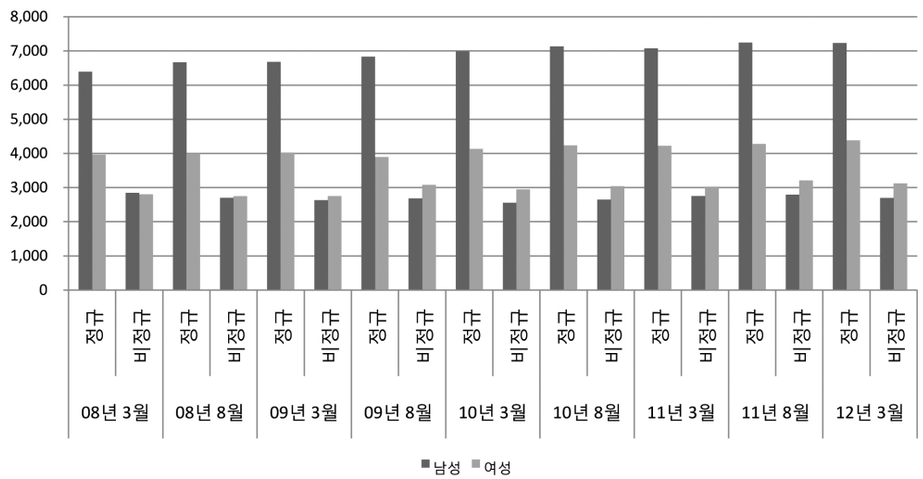

(2) 성별 돌봄시간의 격차

시간 배분에서의 불균등성은 돌봄시간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통해

〈표4〉 성별 시간사용분포(전국) (단위 : 시:분)

	요일 평균	여성	남성	평일	여성	남성	토요일	여성	남성	일요일	여성	남성
일	**6:35**	**6:04**	**6:56**	**6:50**	**6:17**	**7:13**	**5:47**	**5:21**	**6:04**	**5:10**	**4:54**	**5: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6:54	6:29	7:09	7:07	6:39	7:24	6:08	5:46	6:19	5:45	5:39	5:48
무급가족종사일 (농림어업제외)	4:45	5:10	2:57	4:52	5:13	3:10	4:31	5:05	2:25	4:18	4:53	2:30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1:34	1:30	1:41	1:31	1:27	1:41	1:35	1:31	1:43	1:39	1:39	1:41
구직활동	1:42	1:11	1:53	1:45	1:12	1:57	1:19	0:57	1:27	1:48	1:32	1:52
일 관련 물품구입	0:34	0:36	0:34	0:35	0:36	0:33	0:35	0:36	0:35	0:32	0:30	0:34
기타 일 관련 행동	0:21	0:21	0:22	0:22	0:21	0:23	0:24	0:23	0:24	0:19	0:20	0:16
가정관리	**2:15**	**2:54**	**1:00**	**2:14**	**2:51**	**0:56**	**2:17**	**3:00**	**1:04**	**2:17**	**3:01**	**1:10**
가족 보살피기	**1:35**	**1:48**	**1:03**	**1:35**	**1:50**	**0:54**	**1:38**	**1:49**	**1:16**	**1:33**	**1:40**	**1:20**

※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행위자 평균시간)」, 2009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 관련 성별 시간사용분포를 살펴보면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은 일과 관련하여 여성보다 각각 56분, 43분, 27분을 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각각 1시간 55분, 1시간 56분, 1시간 51분을 더 사용하고 있다. 가족 보살피기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 사용하며, 평일에는 56분, 토요일에는 33분, 일요일에는 20분을 더 할애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시간사용의 불균형은 맞벌이 부부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여성은 가정관리에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평일의 경우 1시간 44분, 토요일은 2시간 5분, 일요일은 2시간 18분을 남성보다 더 할애한다. 가족보살피기 시간 역시 상대적으로 근소하지만 차이를 보인다.

〈표5〉 맞벌이 가구의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시간사용분포(전국) (단위 : 시:분)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가정관리	**2:05**	**2:42**	**0:52**	**1:54**	**2:26**	**0:42**	**2:21**	**3:07**	**1:02**	**2:36**	**3:34**	**1:16**
음식준비 및 정리	1:22	1:33	0:32	1:18	1:27	0:29	1:27	1:41	0:35	1:34	1:52	0:39
의류관리	0:39	0:40	0:26	0:35	0:36	0:23	0:42	0:43	0:26	0:50	0:52	0:33
청소 및 정리	0:39	0:41	0:31	0:35	0:37	0:27	0:46	0:50	0:36	0:47	0:51	0:38
집 관리	0:29	0:23	0:35	0:25	0:22	0:29	0:35	0:27	0:42	0:34	0:25	0:41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0:40	0:39	0:40	0:33	0:34	0:29	0:45	0:45	0:44	0:53	0:53	0:54
가정경영	0:25	0:23	0:31	0:25	0:22	0:31	0:31	0:30	0:33	0:25	0:24	0:29
기타 가사일	0:16	0:15	0:18	0:16	0:15	0:18	0:16	0:16	0:19	0:16	0:14	0:19
가족 보살피기	**1:09**	**1:15**	**0:57**	**1:05**	**1:11**	**0:49**	**1:17**	**1:24**	**1:03**	**1:23**	**1:26**	**1:19**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1:35	1:54	1:06	1:28	1:49	0:55	1:50	2:10	1:21	1:54	2:07	1:37
초 · 중 · 고등학생 보살피기	0:44	0:47	0:35	0:42	0:45	0:31	0:48	0:51	0:39	0:49	0:51	0:44
배우자 보살피기	0:20	0:19	0:24	0:20	0:19	0:26	0:21	0:20	0:26	0:20	0:22	0:17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1:14	1:07	1:24	0:54	0:55	0:51	0:56	1:11	0:45	1:55	1:25	2:37
그 외 가족 보살피기	0:30	0:25	0:49	0:30	0:23	1:05	0:28	0:28	0:28	0:34	0:33	0:36

※ 주 : 20세 이상 인구 ※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행위자 평균시간)」, 2009

가족을 보살피는데 여성은 평일에 남성보다 22분을, 토요일에는 21분을, 일요일에는 7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4시간에 가깝지만, 남성이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2시간에 못 미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 및 돌봄노동에는 여성이 남성의 2배에 이르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0년 한국아동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만 3세 자녀를 둔 남성이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일 1.3시간, 주말 4.1시간인 반면, 취업 중인 여성은 평일 3.5시간, 주말 7.5시간이고 전업주부는 평일 6.9시간, 주말 7.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5]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지만,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분담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볼 수 있다.

시간 사용에 대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해볼 때,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남성이 많지만, 돌봄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여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에 사용하는 성별 시간의 차이보다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에 대한 성별차이가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3) 성별 노년기 시간의 격차

한편 은퇴 이후의 시간사용에 있어서도 은퇴 이전 사용시간의 성별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50대~70대 은퇴자 3,826명을 대상으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은 TV 시청에, 여성은 가사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TV보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남성이 4시간 이상으로 여성보다 1시간 많다고 밝혔다. 또 운동 및 레저시간도 남성이 1시간 30분 이상으로 여성의 44~54분의 2배 수준이었으며 취미휴식시간도 남성이 1시간 10분 이상으로 33~36분인 여성의 2배 수준이었다. 반면에 가사활동 시간은 50대와 60대 여성의 경우 4시간 이상, 70대 여성은 3시간 35분이었고 남성은 여성의 4분의 1 수준인 1시간 안팎에 불과했다.

비단 은퇴 이후에 노부부간 시간 사용에서의 불균형만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보다 길어 노인인구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빈곤한 독거노인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

5 또한 부모가 모두 취업한 경우 양육과 가사를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20~50대 여성은 60.9%가 찬성한 반면, 남성은 35.3%만이 찬성한 것으로 보고된다. 육아정책연구소(2012), 「육아정책 Breif」6월호.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세 이상 고령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7.21%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커져서 80세 이상 인구(962,118명) 중 여성(681,374명)의 비율은 70.82%에 달한다.

〈표6〉 성별 고령인구(전국) (단위 : 명)

	계	여성	남성
60세 이상	**7,606,903**	**4,352,262**	**3,254,641**
60~64세	2,182,236	1,125,201	1,057,035
65~69세	1,812,168	978,926	833,242
70~74세	1,566,014	893,120	672,894
75~79세	1,084,367	673,641	410,726
80~84세	595,509	409,501	186,008
85세 이상	366,609	271,873	94,736

※ 주 : 외국인 제외, 집단가구 및 특별조사구 인구 포함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고령자 10% 표본)」, 2010

〈표7〉 60세 이상 성별 국민기초일반수급자 수(전국) (단위 : 명)

	계	여성	남성
60~64세	69,398	37,826	31,572
65~69세	89,530	57,249	32,281
70~74세	105,191	71,916	33,275
75~79세	88,186	65,115	23,071
80~84세	56,731	46,270	10,461
85~89세	27,505	23,092	4,413
90~94세	8,994	7,819	1,175
95~99세	1,926	1,736	190
100세 이상	348	313	35

※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11년도 60세 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수는 447,809명이며, 이 중에서 여성은 69.53%에 해당하는 311,336명이다.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율은 커진다.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95,504명 중 여성은 79,230명으로 82.95%에 달한다.

김영옥(2011)에 따르면, 은퇴 후 노년의 생활은 대체로 은퇴 전까지의 취업생활에서 마련한 개인저축 및 자산 그리고 취업생활에 연동한 연금소득에 의존하게 되는데, 여성은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인해 취업기간이 길지 않아 개인명의의 연금소득을 수급하는 확률이 낮고 은퇴 전에 저축과 자산을 형성할 기회도 많지 않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이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고용이 간헐적이고 단절적인 비정형 패턴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이 꾸준히 노동시장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고용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에는 은퇴 이후의 삶을 충분히 준비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생활 안에 있는 부부들의 경우 노후를 위해 마련해 둔 자산은 대체로 남편과의 생활비 및 남편의 간병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편 사망 후 여성 혼자 생활할 때의 생활비 및 병원비는 충분치 않게 되기 마련이다.[6] 또한 결혼생활 안에 있지 않거나 다양한 가족형태로 살아온 여성이라 할지라도 불안정한 고용을 반복해 온 결과 노후 자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2) 시간 규범의 남성중심성

지금까지 살펴 본 시간의 성별성을 거칠지만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여성들은 '일'에는 연속적이고 충분하게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대신 타인을 돌보는 노동은

6 55세~60세에 은퇴하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고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은 최소 20~30년간의 부부생활비, 남편 사망 후 홀로 생존기의 생활비, 남편과 부인의 간병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김영옥, 2011).

끊임없이(심지어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하느라고 자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가난하고 아픈 노년의 시간을 맞이한다. 이것이 시간이 평등한 자원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이러한 시간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Wiliams(2000)에 따르면 이는 "이상적 노동자 규범(ideal worker norm)"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상적 노동자란 전일제에 시간 외 노동을 하면서 양육시간이나 가족시간은 소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노동과 노동조직이 이러한 규범 위에 구축되면, 돌봄 제공자는 이상적 노동자 상을 실천할 수 없다. 이상적 노동자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핵심은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고 회사를 위해 모든 시간을 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노동을 전담해 줄 사람 또한 필요하다. 성별화된 사회에서 이상적 노동자로서 수행하는 사람은 주로 남성이고, 이상적 노동자를 돕는 조력자는 주로 여성이 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이러한 성별화된 이상적 노동자 규범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고용의 현주소 - 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의 2011년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여성층의 단시간 근로 확대 등으로 근로시간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2011년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자 비중은 13.5%로 OECD 국가 중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낮은 편"인데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저조로 여성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데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이어 "다만, 최근 남성 외벌이 모델에서 선진국형 1.5인 맞벌이 모델[7]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

7 신경아(2009)에 따르면, 이는 서유럽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온 일-가족 양립 방향으로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노동자 가족 스스로 시장 상황에 적응해 가는 방향이다. 보통 1.5인 소득자 가족(one-and-a-half earner family)이라고 불리는 '남성-전일제 노동자-주요 생계 부양자 / 여성-시간제 노동자-생계 보조 및 돌봄 전담자' 가족이 그것이다. 현재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은 40%에 이르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전체 여성취업자의 50%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가족 모델이 지배적인 사회는 일-가족 양립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부재(不在) 내지 성차별적인 정책 형성의 산물로 평가된다. 일-가족 양립 책임을 여성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8〉 남성 육아휴직제 신청사례(2010) (단위 : 명, %)

		전체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평균
전 체	전 체	269	95.8	2.8	0.6	0.8	0.08
업종	제조	121	97	2	0	1.1	0.05
	도소매	23	89.1	7.7	3.1	0	0.14
	금융	43	91.4	7.4	1.2	0	0.1
	사업 서비스	82	94.6	3	2.1	0.3	0.17
규모	100-299명	145	97.1	1.5	0.3	1.1	0.05
	300-999명	77	94.2	5.8	0	0	0.06
	1000명이상	47	86.2	8.3	5	0.5	0.34
정규직 여성 비율	10%미만	49	96.1	0.3	0	3.6	0.11
	10-19%	73	94.2	3.9	1.9	0	0.08
	20-29%	47	99.4	0.3	0	0.3	0.08
	30-39%	43	88.3	11.5	0.3	0	0.12
	40%이상	57	99.6	0.2	0.2	0	0.01

※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관리자패널조사」, 2010

성의 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향후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제시하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 ·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분석과 정책대안에는 남성들이 이상적 노동자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들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여성들이 가구소득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단시간 근로를 통해 생계를 보조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가족 양립 정책은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모두가 일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돌봄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여성만이 배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던가, 여성 노동자에게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제도화(예를 들어 롯데그룹)하는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이상적 노동자의 존재를 전제하는 시간 규범이 유지되는 한 일-가족 양립 정책은 여성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전략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례] 롯데 다니는 여자들은 좋을까?

롯데가 여직원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출산휴가 이후 1년간 육아휴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제도를 도입한다. '워킹맘'들이 회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롯데그룹은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제도를 개선, 9월 17일부터 모든 계열사에서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법에서 보장한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기를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의 별도 승인을 받아 휴직을 취소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 사원 등 모든 여직원에게 적용된다. 롯데그룹 정규직원 4만 여명 중 여성은 1만 여명으로 약 25%를 차지한다. 파트타임 직원까지 합치면 2만 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롯데 신입사원 중 여성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올 상반기엔 35%로 높아졌다.

– 한국경제, 2012년 9월 17일자. 「"회장님, 육아휴직 쓰기 눈치 보여요" 한마디 했더니」

〈그림2〉 20대~60대까지의 생애설계

생애주기	연령대	주요 이슈 및 주요 재무목표
사회초년기	20대	• 졸업, 취직, 결혼, 능력개발 • 결혼자금, 전세자금 마련 등
가정꾸미기	30대	• 결혼생활, 자녀출산, 육아, 교육 • 육아비용 마련,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
자녀성장기	40대	• 자녀교육, 재산형성 • 자녀 교육비 마련, 주택규모 넓히기 등
가족성숙기	50대	• 자녀결혼, 은퇴 및 노후생활 준비 • 자녀결혼자금 마련, 자녀 대학교육비 마련 등
노후생활기	60대	• 제2인생기, 노후생활 시작 • 상속설계 실행, 사회봉사 등

남성중심적 시간규범은 생애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 인식은 30여 년간 쉼 없이 일하는 이상적 노동자의 생애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당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전일제 노동을 30여 년간 지속하다 은퇴하는 남성의 80세 생애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연금, 복지, 보건, 국가재정은 물론 교육, 취업, 정년제도, 개인의 재테크와 인생플랜이 모두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다. 그리고 20대 초중반까지 일하고 60대 이후엔 할 일이 막막해지는 80세 시대 이상적 노동자의 모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이수영, 2011). 위의 그림은 포털사이트에서 '생애주기' 혹은 '생애설계'라는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표이다. 대학까지의 학교 교육을 마친 후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생애주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애시간표는 일반적이고도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전일제 남성 노동자의 삶의 양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간헐적으로 일하고 남성의 조력자로 위치지워지는 여성의 삶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3. 시간 규범이 낳는 문제들

지금까지 전일제로 평생 일하는 남성 노동자의 시간이 표준일 때 여성들에게 경험되는 시간이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좌담회에 참석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 규범이 낳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전일제 노동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전일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시간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그러한 시간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비표준화된다. 좌담회에 참석했던 여성들 중 프리랜서로 일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것은 자신을 백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시선이다. 락에 따르면 낮 시간에 돌아다니는 성인 여성은 아줌마 아니면 학생이라고 여겨진다. 옥은 마감일이 임박한 매우 바쁜 프리랜서 만화가이지만, 전일제 노동자의 근무시간대에 물건을 사러 왔다는 이유로 옥을 백수로 오해하는 것 같다.

> "낮 시간에 돌아다니는 성인 여자는 애가 있으면 아줌마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으로 본다. 아줌마 아니면 학생. 사람들 시선에서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다" _ (락)

>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는 노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동네 수퍼마켓 아주머니한테 '제가 사실은 마감이라 바쁘지만 필요한 게 있어서 사가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동생은 뭐 하냐기에 일본에서 취직해서 살고 있다고 했더니 아주머니 왈 '오히려 둘째들이 더 자리를 잘 잡고 첫째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나를 백수로 생각하는 것이다" _ (옥)

> "프리랜서는 노는 사람으로 본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_ (세)

이러한 사례들은 전일제 노동자의 시간이 표준이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못지않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9 to 6"가 지배적인 질서가 되어 있다.

(2) 동의어로 취급되는 "바쁨"과 "유능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적 노동자라면 회사를 위해 언제든지, 얼마든지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이상적 노동자 규범은 장시간 노동을 미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사무실 책상 앞에 오랜 시간 앉아있는 사람 = 회사의 필요에 헌신하는 이상적인 인재'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 "야근을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 왜 이 팀은 야근이 적을까? 이런 느낌" _ (통)

'장시간 노동'은 곧 '바쁨'과 동의어이고 '바쁨'이 '유능함'의 증거로 활용되다보니 야근을 피할 도리가 없다. 야근이 미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동료나 상사의 야근을 나무랄 수 없고 옆 사람이 야근을 하면 나도 해야만 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일만 하던 상사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퇴근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는 통의 경우 모든 팀원이 죽어라 일하는 분위기였다가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는 하나,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일했는가"라는 질문에 "9시 출근하여 9시 퇴근했으니 평균 하루 12시간 근무했다"고 토로한다.

> "상사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퇴근길에 쓰러져서 119에 실려 간 적이 있다. 서열상 그 상사 밑이 나였다.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싶었다. 지금도 두통약을 하루에 2~3알씩 먹으면서 일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들 비염에 축농증에 알레르기에 아토피 등등 심하다. 그렇게 일하다가는 다 죽으니까 조금씩 자제가 되었고 5~6명이 일주일 내내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하고 밤을 새는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나아졌다" _ (통)

장시간 노동은 악순환되고 있다. 열은 이를 두고 모두가 총을 들어 겨누고 있는 상황에 비유한다.

"모두가 총을 들고 있다. 한 명씩 한 명씩 총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_ (열)

그러나 근로시간이 반드시 근무시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야근을 부추기는 분위기로 인해 '시간 때우기'를 위한 야근도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3)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인 진짜 이유

증권회사에 다니다가 현재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소의 근로시간은 하루 12시간이었다. 아침 7시 30분에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7시 20분까지는 출근을 해야 하고 정규 퇴근시간은 5시이지만 오후 7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시간의 근로시간 동안 집중해서 할 경우 정작 일에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정도일 것으로 소는 추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는 이유는 증권회사라는 특성 상 장(場)의 마감시간을 지키는 이유도 있지만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벌칙처럼 "못 했으니까 퇴근하지 말라"는 상사의 강압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저런 일들을 하고 마감까지 다 하면 오후 5시에는 하루 일을 접을 수 있지만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리에 앉아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사의 강압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한다.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거나" _ (소)

고는 직종이나 직무상의 특성이 야근의 필요조건은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고는 출판사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출판사의 일은 어디나 업무량이 많고 노동집약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같은 출판사이고 같은 업무라고 하여 똑같이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이 고의 이야기이다.

"전 직장은 야근을 심하게 하는 직장이 아니어서 일주일에 평균 이틀, 밤 9시 혹은 10시까지 야근을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니던 회사는 밥 먹듯이 야근을 했다. 직종이나 직무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마다 다른 것 같다. 심지어 어떤 출판사는 토요일에 회사에 나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도 안 나올 수 없는 조건을 만들기도 한다" _ (고)

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인 사례로 인구에 회자되며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보리출판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리출판사는 10시에 출근하여 4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다.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휴가로 사용토록(열)" 하고 있다.

(4) 일이 많아도 인력은 그대로

그러나 업무량이 너무 많아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직무특성상 시간외 근무가 필요한 경우도 당연히 있다. 모든 야근이 "눈치껏 야근"은 아니다. 홍은 학습지 출판업을 하는 업무 특성상 대단히 바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양의 경우 상담실 및 자원봉사자 모임을 운영하는 기관의 성격상 정규 퇴근시간 이후에도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임신하고 거의 만삭일 때 한 달 동안 철야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평균 수면시간이 쪽잠 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였다. 회사의 중요한 시기였다.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한다" _ (홍)

"우리 기관에는 상담실이 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면접상담을 하러 올 수 있도록 상담실은 밤 9시까지 열려 있다. 또 자원봉사자 모임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를 한다" _ (양)

심지어 야근을 엄청나게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고 너무 바빠도 인력을 더 충원하지는 않는다. 이상적인, 유능한 노동자라면 야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더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악순환을 낳을 것은 뻔한 일이다.

"일이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이다. 돈을 버는 것만큼 사람

을 더 뽑으면 된다. 그런데 뽑지 않는다" _(탕)

(5) 건강 상실

과도한 업무량과 잦은 야근은 당연하게도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목의 역류성 식도염과 낭종, 락의 터널 증후군, 통의 만성두통은 모두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 생기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지나치게 많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열은 예전에 규모가 제법 큰 IT업체에서 일할 때 과도한 노동 끝에 병이 났지만 일이 바빠 다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일했던 IT업체는 규모가 크다보니 소위 '대기업 문화'가 있어서 야근을 해야 하고 일찍 퇴근하면 눈치가 보이던 그런 회사였다.

"IT업체에서 일 할 때 정말 일이 너무 많았다. 새벽 3~4시에 퇴근하고 쉬지 않고 며칠을 일했다. 새벽 3시 혹은 4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장염에 걸려 병원을 갔다. 그런데 아침에 다시 출근했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출근을 안 할 수가 없었다" _ (열)

"팀원들이 자면서도 일하는 꿈을 꾼다. 다들 두통을 달고 산다. 너무 복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한다. 콕콕 쑤시지만 병원에서는 위가 깨끗하다고 한다. 10명 중에 10명이 앓는다는 바로 그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이다. 우리는 조선시대 천민이다. 사회를 움직이고는 있는데 받는 건 없다" _ (통)

심지어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회사 근처 병원에 입원해 놓고 회사에 나와 일을 하다가 보험사에서 사람이 찾아오면 병원으로 가 누워있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탕은 이 회사에 다닐 때 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심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출근하면서 여행사에 전화해 비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어보곤 했었다.

"교통사고가 났었다. 입원하려고 실장님에게 전화했더니 병원을 회사 근처로 옮겨서 입원한 것으로 하고 회사에 나오다가 보험회사에서 오면 그 때 병원에 가 있으라고 했다" _ (탕)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비로소 여기저기 아픈 구석이 생기기도 한다. 탕은 입이 벌어지지 않았고, 1년 정도 편집실에서 일하며 8시 반에 출근하여 일주일에 보통 3일은 새벽 4시까지 일해야 했던 세는 편집실을 그만 둔 후 일주일 동안 팔이 올라가지 않았다.

"회사 그만두면서 친구들을 만나보니 다 허리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 다들 몸에 탈이 났는데, 막상 일이 바쁠 때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보니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다가 쉬다보면 한꺼번에 질병이 찾아온다. 나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을 하는데 칫솔이 안 들어갈 정도로 입이 안 벌어졌다" _ (탕)

"마지막에 일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신기하게 일주일 동안 팔이 안 올라갔다. 팔이 이 정도(어깨높이) 이상은 안 올라가서 되게 신기했다" _ (세)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남녀 모두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꼈다(매우 많이 느낌+느끼는 편임)고 응답한 사람은 77.1%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있기는 하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그림3〉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정도 : 직장생활(15세 이상 인구,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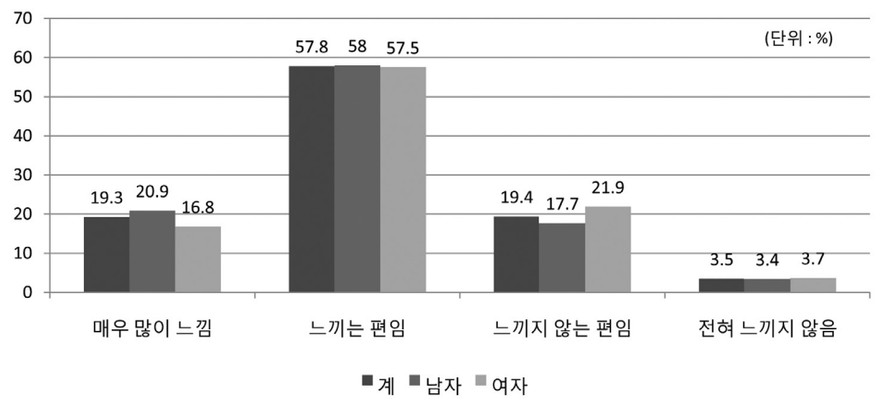

(6) 거짓말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 눈치 보는 야근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니 휴가를 가거나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 정규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야근이 일상적인 조직에서 남들만큼 야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밥 먹듯이 야근을 했다. 한 8시쯤에 퇴근하다고 그렇게 눈치를 준다. 11시나 12시가 되면 그 때쯤 사장이 '우리 간식 먹을까?'이러는데 너무 얄밉다. 직원들 배려하는 것처럼 간식 타령" _ (고)

"밥 먹듯이 야근을 하는" 회사에서 고는 연차 10일도 남김없이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비난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한다.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 10일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남겨뒀어야 했다고 이야기한다.

소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거짓말을 해야 했다. 두 아이를 둔 소는 12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휴직은 물론이거니와 휴가다운 휴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자녀가 만 6세 미만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서 2007년 9월생인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준비했으나 안 된다는 바람에 퇴직까지 결심했었다. 그러다 친정어머니가 거동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편찮으시다는 거짓말을 하고 수당 없는 육아휴직 1년을 받았다. 소는 본인의 직장에 대해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도저히 맞벌이로 지낼 수가 없는 직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나마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에 수당 없는 육아휴직 1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거짓말을 하고 1년의 휴직을 얻었다" _ (소)

재미있는 것은 야근을 할 때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고는 야근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회사는 오히려 야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사례를 들려주었다. 문제는 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야근을 하기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야근을 하는 장소가 회사가 아닌 집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야근수당을 주는 회사는 오히려 야근을 못하게 한다. 그래도 일은 준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 집에 가서 해야 한다. 회사에서 야근하려고 하면 이래저래 눈치를 주니" _ (고)

그나마 정규직에게는 야근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도 비정규직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열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안 시간외 수당은 받은 적이 없으며, 차비만 겨우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 "비정규직으로 일한 적이 있다. 정규직들은 야근하면 수당이 엄청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다. 시간 외 수당은 꿈도 못 꾸고 택시비만 겨우 받았다" _ (열)

(7) 허울 좋은 일-가족 양립 혹은 가족친화정책

상황이 이러하니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회사 내 가족친화정책은 없거나, 있어도 노동자들이 모르거나 안 쓰거나 못 쓰는 경우가 많다.

> "결혼기념일 휴가나 장기근속 휴가가 있지만 못 쓰는 경우가 많다. 겨울에 가족을 초대하는 2박 3일 스키캠프가 있다. 배우자출산휴가가 3박 4일 주어져서 이 휴가는 대부분 사용하기는 하지만 3박 4일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다. 가족 간호를 위한 일신상의 휴가가 있긴 한데, 직원들이 잘 모른다. 의료비 지원은 된다. 휴가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돈으로는 준다" _ (소)

>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직원들의 근태가 엉망이 된다며 없어졌다. 여직원이 대다수다 보니 부서별로 알아서 비공개적으로 20분~30분 정도 출근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었다. 이게 알려지자 역차별 운운해서 눈에 띄지 않게 15분~20분 정도 조정하고 있다" _ (홍)

일-가족 양립 지원은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장기적 과제와 더불어 낮은 출산율,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배경 하에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관심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 ·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과 함께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가족 친화 인증을 부여하고자 한 「가족 친화 사회

〈표9〉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13세 이상 인구) (단위 : %)

	전국		여성		남성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모른다
시간제 근무제	77.5	22.5	76.8	23.2	78.0	22.0
탄력근무제	50.2	49.8	44.5	55.5	54.2	45.8
근무시간선택제	51.3	48.7	46.9	53.1	54.3	45.7
집약근무제	25.6	74.4	20.5	79.5	29.2	70.8
재량근무제	35.5	64.5	30.3	69.7	39.1	60.9
재택근무제	75.2	24.8	73.4	26.6	76.5	23.5
원격근무제	44.5	55.5	40.6	59.4	47.2	52.8
육아휴직제	80.6	19.4	81.9	18.1	79.7	20.3
산전후휴가제	74.2	25.8	78.2	21.8	71.5	28.5
배우자출산휴가제	73.5	26.5	73.9	26.1	73.3	26.7
직장보육지원	58.1	41.9	57.7	42.3	58.4	41.6

※ 주 : 지난 1주일 동안 임금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일-가족 양립이나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에 대해 정책적으로 갖는 관심 정도에 비해 현실에서는 실제로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정규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징과 사용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한 몫을 하고 있음이 지적된다(신경아, 2009). 좌담회에 참석했던 여성들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심지어 본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가족친화정책으로 무엇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첫째 아이 낳을 때 육아휴직을 썼다. 지금 둘째를 낳을 때가 되어 오는데 회사에서는 또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신다. 그런데 나는 상당히 미안하다. 지금 복직해서 일이 손에 익었는데 또 다른 사람을 투입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것 같다" _ (열)

참고로 2011년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제도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육아휴직제였고 다음으로 시간제 근무제, 재택근무제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제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전후휴가제, 시간제 근무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육아휴직제, 시간제 근무제, 재택근무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의무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 같다. 열에 따르면 남성들은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며 수당을 챙기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집에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남성들이 가사노동이나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들은 집에 잘 안 들어간다. 회사에서 시간 때우면서 돈 버는 게 낫다는 것이다" _ (열)

"남자들은 집에 가면 애 울고 마누라 빽빽거리고 이런 걸 돌봐야 하는 게 귀찮은 거다.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런다. '나는 놀아도 회사에서 논다' 그런 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우리한테도 그런 걸 요구한다. 나는 빨리 퇴근해서 내 취미생활을 해야 하는데, '뭐 할 일 있어?'이런 식이다. 놀아도 회사에서 놀라는 거다" _ (고)

참고로 통계청이 2012년 1/4분기에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중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연근무제[8] 활용현황에 대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3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는 13.4%로 나타난다.[9] 성별로는 남성의 9.5%, 여성의 18.6%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8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이외 대표적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로는 유연근무제를 들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출퇴근시간자율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이 포함된다.

는 60세 이상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유형별로는 시간제근로제가 59.6%, 출퇴근시간자율제는 17.2%,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제에서는 60세 이상이 81.0%로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은(41.4%) 반면, 출퇴근시간자율제에서는 30대(27.0%)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7.2%로 가장 낮았다.

(8) 내 시간은 팀장의 시간이거나 아이들의 시간

일-가족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희생해야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시간이다. 일을 그만둘 수도, 가족 돌봄을 외면할 수도 없는 여성들은 자기 돌봄을 포기하고 있다. 통의 회사에는 가족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따라서 가족 간호와 같은 필요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은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여 돌봄 노동을 해결한다.

>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암 수술을 해서 집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일을 조금씩 미리 해 놓고 연차를 써서 일주일씩 빠지고 여름휴가 기간에 집에 있고 그런 식으로 긴급한 돌봄을 해결한다. 자기 연차 밖에는 방법이 없다. 결국 자기가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쓰는 것이다" _ (통)

취미생활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고는 노동시간도 길고 직주거리도 멀었던 회사에 다녔을 때 취미생활을 할 수 없어 정말 우울했다고 말한다. 고는 회사를 그만 둔 뒤에야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었다.

> "나는 취미생활에서 생의 에너지를 얻는다. 자전거도 타고 책도 읽어야 한다. 파주에 있는 회사를 다닐 때에는 퇴근 후에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회사일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때는 정말 우울했다" _ (고)

9 13.4%라는 비율은 실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높다고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2개 항목까지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집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주요하게는 유연근무제가 시간제 근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사상지위별로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비율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은 6.7%이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8.3%로 나타난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유연근무제 유형 중 시간제근로제를 이들이 많이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청 보도자료, 「2012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집계 결과」, 2012년 8월 30일자.

비혼여성인 통이나 고도 자기 시간을 만들기 어렵지만, 유자녀 기혼여성인 홍과 소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말 시간을 자녀 돌봄에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 주말에 집에 있으면 자녀들과 뭔가 놀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밖으로 나간다.

> "[주말은 어떻게 보내는가?] 다들 일어나면 10시쯤 된다. 그러면 대충 먹고 차를 타고 나간다. 한 끼는 밖에서 해결한다. 집에 있으면 뭔가 해야 하고 힘들지만 나가면 일단 차에서 아이는 잠을 재우기도 하고, 어디고 가깝건 멀건 같이 다니면서 좀 아빠랑 시간을 보내게 한다. 나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작년에는 거의 매주 주말 카페도 가고 여행도 가고 했다" _ (홍)

> "우리는 주말에 무조건 나간다. 금요일 밤에 퇴근하고 짐 싸서 그 밤에 갔다가 일요일 밤에 돌아온다. 일정 없는 주말은 너무 힘들다. 애들하고 뭘 해야 할지" _ (소)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 시간은 언제일까? 소는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처음으로 1년간의 휴직을 얻었고 3개월이 지났지만, 휴직 전에 계획했던 요가 배우기와 영어학원 다니기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집안을 정리하고 아이들 밥 해 먹이는데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이다. 홍에게 자기 시간은 필요하지만 없다.

> "[자기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가?] 필요하긴 하다. 취미랄 것도 하나도 없다. 내 시간이라고 한다면 일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과 술 마시는 것. 하다못해 책을 하나 봐도 일과 관련된 것, 마케팅 전략, 성과관리, 시간관리 이런 책이나 본다" _ (홍)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거나 일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을 엄밀히 말해 자기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업무의 연장선일 뿐이다. 일과 가족에게만 시간을 쏟아야 했던 홍은 요즘 자신의 상태가 '정신줄을 놓고 있는', '멘탈붕괴'라고 표현한다. 여가시간에 대한 바램이 있지만, 장시간의 노동은 가족을 위한 시간을 부족하

〈그림4〉 수입보다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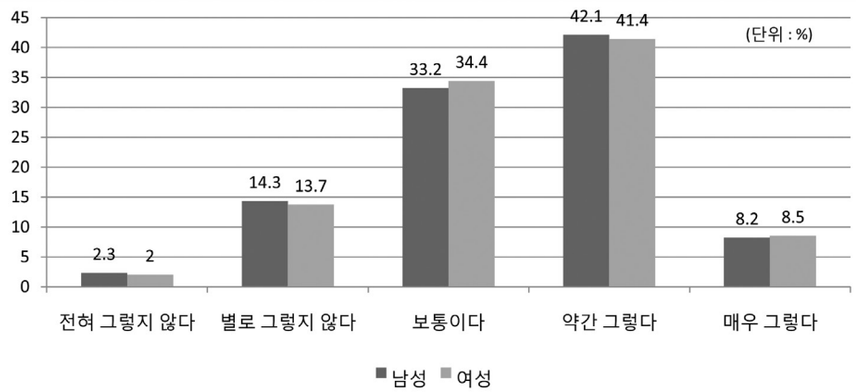

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여가시간을 갖기는 요원하다.

홍과 같이 여가시간을 원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서울서베이」조사 결과, 서울시 남녀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수입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여성의 경우 6.02점, 남성은 5.99점으로 조사되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수입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2009년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점수가 5.72점으로 2010년도보다 낮았다.

여가시간 활용 정도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지만, 여성은 고소득층에서 오히려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에 따르면, 남성은 일요일에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인 사람이 가장 많은 여가시간인 7시간 이상을 보내는 반면, 여성은 500만원 이상과 300~400만원 미만인 사람의 여가시간이 가장 적었다. 특히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남녀간 여가시간 차이는 2시간 50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300~400만원 미만 소득자와 100만원 미만 소득자에서도 성별에 따라 약 2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9) 문제는 개인의 시간관리능력?

많은 이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압박을 느끼지만 하루 2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을 늘릴 수는 없으므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간관리에 관한 서적들을 읽는다. 자기 시간이 없이 살아오다 '멘탈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홍도 시간관리 서적을 읽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시간관리 서적들은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 대부분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탓하기 때문이다.

[사례] 결국 개인의 잘못인가?

"오늘날의 문화는 일중독을 찬양한다. 밤새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쪽잠을 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죽도록 일하고 나서도 또 일하려는 사람들.. 일중독자들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어리석다. 일중독은 득보다 실이 많으며 무의미하다. 일중독자들은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다. 비효과적이어야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중독자들은 영웅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 단지 쓸데없이 자기 몸만 학대할 뿐이다. 진짜 영웅은 벌써 일을 끝내고 집에서 쉬고 있다."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변명이다. 무슨 소리!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어떤 일을 진심으로 하고 싶다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갤 것이다. 사람들이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애꿎은 시간 탓만 한다.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은 정말 꼴불견이다. 꿈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모든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 제이슨 프라이드,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핸슨, 정성묵 옮김(2011), 『똑바로 일하라』, 21세기북스.

[사례] 어느 시간관리서의 목차

머리말 : 시간관리는 마법의 주문, 다이어리는 행복의 일기
들어가는 글 :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철저한 시간 컨셉이 있어야 한다
제1부 - 미혼 직장 여성을 위한 시간 관리
나는 커리어우먼 : 일과 여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
제2부 - 기혼 직장 여성을 위한 시간 관리
나는 슈퍼우먼 : 가사와 육아, 직장생활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총지휘한다
제3부 - 주부를 위한 시간관리
나는 (주)하우스의 CEO : 주부와 엄마와 아내로서 최고를 꿈꾼다
부록 : 살림 잘하는 30가지 방법

– 로타르 J.자이베르트, 도로 캄머러, 장혜경 옮김(2002), 『내 시간 내 맘대로 쓰기』, 거름

심지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관리 서적은 여성으로 하여금 슈퍼우먼이 되라고 말하기 일쑤이다. 위의 사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관리서의 목차이다. 미혼 여성에게는 일과 여가를, 기혼 여성에게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러한 시간관리 서적은 홍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0) 은퇴 이후를 상상하기

소위 100세 시대[10]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은 또 하나의 숙제가 되고 있다. 80세 시대와는 달리 100세 시대에는 은퇴 이후 살아가야 할 시간이 두 배로 늘어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인 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라고 정의한다. 현재 우리나라 최빈사망연령대를 살펴보면 현재의 추이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경우 여성은 2020년까지는 최빈사망연령이 90대를 넘어 100세를 바라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의 남녀를 합친 최빈사망연령의 추이를 보아도 1990년도 초반 이후 매년 1년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략 2020년~2025년에는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수영, 2011).

난다. "인생 이모작"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고 특히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긴 여성에게 노년기의 시간과 생활에 대한 무게는 더 크다. 좌담회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은퇴 이후 그림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두 단어는 "폐지 줍기"와 "제주도"였다.

"폐지 줍는 분들 보니까 나도 곧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다 그런 생각하는구나" _ (열)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림이 없다. 잘 모르겠다. 나의 노후는 폐지 줍는 것이다" _ (탕)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라이프 플랜을 제출하게 한다. 그 라이프 플랜 상으로는 회사에서 50세까지는 버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귀농을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우리 회사가 제주도에 지점이 있다. 신랑은 제주도에 가자고 한다" _ (소)

"폐지 줍기"와 "제주도"는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막연한 절망과 막연한 희망을 나타낸다. 이처럼 노년기에 대해 그림이나 준비가 구체적이지 않은 데에는 장시간 노동의 역할이 크다. 통은 전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도 했다. 결심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이를 위한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하루 24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어떤 시간을 빼서 어떤 시간에 더하고 싶은지를 물었을 때, 통은 수면시간을 2~3시간 늘리고 싶다고 했다. 전업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하루 평균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통은 생존을 위해 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부터 전업이 하고 싶었다. 카페를 차리고 싶다. 그 결심은 이미 6년 전에 했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다. 6년 동안 계속 회사만 다녔다. 전업을 하려면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노하우를 쌓아야 하고 경험도 충분히 해야 하는데 못하다보니 계속 꿈인 상대로 있다. [자신의 하루 중 어떤 시간을 빼서 어떤 시간에 더하고 싶은가?] 오전 근무시간 2~3시간을 빼서 잠을 자고 싶다. [카페 차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잠이 중요하다.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다" _ (통)

홍 역시 노후에 대한 계획은 막연하다. 무언가 일을 계속 할 생각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이지는 않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은 만삭일 때 한 달 가까이 철야를 했을 만큼 일이 많은 회사에서 16년째 일하고 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라고는 업무상 지인들과 술 마시는 것 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업하기엔 늦어버렸고 그동안 해 온 일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구체화할 시간은 없어 보인다.

> "주변에 출판 아웃소싱하던 선배들이 있어서 모여서 뭘 해볼까 생각도 들고 아예 다른 길을 가기에는 좀 늦은 것 같다. 내가 교육, 출판 분야에 있다보니 아이들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분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을 작년에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이지는 않다" _ (홍)

그러나 프리랜서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은퇴 개념도, 은퇴의 시점도, 노후 준비에 대해서도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달랐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옥은 은퇴 시기를 "내가 일 할 기력이 없어졌을 때"라고 정의한다. 락은 은퇴는 직장인에 해당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세는 "취업을 생각할 때가 바로 은퇴"라고 은퇴 개념을 전환한다. 만화가인 옥은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 락은 좋아하지만 돈이 안 되는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한다. 글 쓰는 일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영화감독인 세는 영화제작이 생계를 위한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영화제작을 할 수 있도록 생계 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찾아 하고 있다.

> "[은퇴 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기력이 없어졌을 때. 나 같은 직업에서는 나한테 돈을 쓰고 여행 가고 필요한 책을 사고 그렇게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 노후준비라고 생각한다" _ (옥)

>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직장인처럼 때가 되면 그만 두고 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개념이다. 지금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노후 투자라고 생각한다" _ (락)

>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 촬영을 힘들어서 못할 것 같긴 하다. 규칙적인 일, 취업을 생각하는 게 은퇴가 아닐까?" _ (세)

이들에게 생계를 위한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일치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은 이상적 노동자 규범이 지배적인 조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은퇴 이후의 삶"이나 "인생 이모작"과 같은 용어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이상적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일 수 있다. 좌담회에 참석했던 프리랜서들의 이러한 은퇴 개념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 "직장인과 프리랜서는 경제 개념이 다르다. 직장인들은 다달이 내야 하는 돈이 있다. 대출금이나 자녀 학원비, 자동차 할부금 등. 프리랜서들은 그런 고정 지출에 얽매이지 않아야 생활이 영위된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내 시간을 찾으려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으려 한다. 노후대책에 대한 개념도 다른 것 같다. 주변에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 암으로 쓰러지고 하는 걸 보기도 하는데, 일을 많이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는 걸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_ (세)

자신의 생활과 삶을 돌볼 여지를 주지 않는 장시간 노동은 어느 날 그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을 대비하지 못하게 한다. 은퇴에 대한 준비가 막연할수록 실질 은퇴연령은 점점 더 늦춰질 것이다. OECD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30개 회원국의 4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제 평균 은퇴연령이 얼마인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은퇴연령[11]은 남성 71.2세, 여성 67.9세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40세 이상 중고령자는 정년퇴직 후 남성은 약 11년, 여성은 약 8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한국 남성이 퇴직 후 가장 장기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국 여성 역시 멕시코 여성(10년) 다음으로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실질은퇴연령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은퇴 이전에 노후대비를 충분히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단순화하자면 젊은 시절의 장시간

노동이 생애를 통틀어 장기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4. 시간 규범을 넘어서 : 노동시간의 재구성

일과 자신에 대한 돌봄, 타인에 대한 돌봄, 여가를 통한 재충전, 온전한 쉼은 필요한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다. 이러한 필요와 요구는 언제나 동시에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시간 규범은 일에만 헌신하거나 돌봄에만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좌담회 참석자들의 경험은 이러한 시간 규범이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의 생활과 생애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말해 준다. 여성도 남성도 생계 부양자인 동시에 돌봄 제공자이어야 하고, 스스로를 계발, 발전시킬 권리를 갖고 있으나, 현재의 노동시간 규범은 일과 돌봄을 동시에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남성에게서는 돌봄의 의무와 권리를, 여성에게서는 노동의 의무와 권리를 빼앗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희생되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과 건강이며, 미래 설계 혹은 노년의 삶에 대한 기획은 언제나 뒤로 미뤄진다.

이에 시간 영역의 성평등 복지의 방향은 노동시간의 재구성이어야 한다. 노동시간은 누구나 적정하게 일하고 적정하게 돌보며 적정하게 쉴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때 재구성되는 노동시간은 하루의 근로시간과 생애주기를 모두 포함한다. 하루의 노동시간 재구성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이 과도하게 일상생활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생애주기 재구성은 일생 동안 삶을 지속하기 위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생애의 많은 시간 동안 "일만" 하다 대책 없는 노년기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시간 재구성은 이상적 노동자 규범의 재구성을 전제한다.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훌륭한 노동자라는 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한, 노동시간의 재구성은 불가능하다. 이상적 노동자 규범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일 이외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쉼과 노동, 기획의 시간이 공존하는 생애주기로의 전환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1) 전제 : 이상적 노동자 규범의 전환

이상적 노동자 규범은 성별 분업을 유지시키고 이에 따른 시간 격차를 발생시키며, 장시간 노동을 미화한다. 노동시간의 재구성을 통해 쉼표가 있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상적 노동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Jacobs와 Gerson(2004)은 "좋은 노동자"란 일과 가족 사이에서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다중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들의 좋은 노동자 개념은 일-가족 양립 문제를 규정할 때 '균형'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의미에서 출발한다. 일과 가족생활은 시간에 대한 경쟁적이고 다중적인 요구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여성과 남성은 균형을 잃지 않으며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다중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가야 한다는 것이다(신경아, 2009).

이들의 개념은 대단히 유용하지만 노동자 본인에 대한 돌봄의 측면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노동자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기획할 수 있어야 생애시간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 노동자 개념은 자기 돌봄의 측면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을 균형 있게 영위하는 사람이 이상적 노동자로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어야 돌봄 제공자라는 조력자를 전제로 하는 노동자상과 그래서 가능했던 장시간 노동의 오랜 관행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

11 실질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이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여 더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이를 의미한다.

12 실질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남성 73세, 여성 75세이며 세 번째로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남성 69.5세, 여성 66.5세 순으로 나타났다.

인다. 이 개념에서의 노동자는 생계부양자인 동시에 돌봄 제공자이다. 성별을 떠나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성별에 따라 배타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권리로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에 대한 돌봄 뿐만 아니라 노동자 본인에 대한 돌봄을 함께 언급하여야 일-가족 양립이 아닌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가능해진다.[13]

2) 돌봄이 있는 노동 : 실근로시간 단축

이상적 노동자 규범을 전환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을 실현하는 균형적 노동자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14] 하루의 시간 중 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정해진 시간 속에 돌봄과 쉼, 여가는 자리할 수 없다. 노동자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다양한 역할과 권리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누리는 사람이며, 그 역할과 권리 중의 하나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에는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전제가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즉 기존의 노동시간에 빠져 있었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돌봄을 이제는 포함시켜야 한다.

좌담회에 참석한 여성들도 법정근로시간보다는 실근로시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13 신경아(2009)는 서울시 남녀 취업자의 일-가족 갈등과 시간 부족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자신만의 시간에 대한 욕구라고 보고한다.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가족 양립이라는 문제틀에서 일-가족-자아 또는 일-삶의 균형이라는 문제틀로 전환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14 역사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견인해 왔다. 법정근로시간을 현재의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40시간 노동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실근로시간의 규제 없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근로시간 단축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느끼고 있었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나친 야근이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쉼을 방해하며 건강을 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속가능한 일과 돌봄을 위해서는 하루의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은 주로 시간외 근로의 제한, 즉 야근을 제한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최대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많이 언급되어 온 방식이다. 실근로시간을 하루 10시간, 한 주 48시간으로 규제하는 방안이다.[15] 최대근로시간제는 노동자들에게 상사의 강압에 의한 야근, 관행에 의한 눈치 보기 야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변경[16]함으로써 기업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이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있다. 일본에서도 장시간 노동의 주범 중 하나인 초과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위해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조준모 외, 2010).

이처럼 야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휴일과 휴가를 확대하는 것 역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여가 및 돌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된다. 노동자들의 숙원 중 하나인 대체공휴일제도(혹은 공휴일의 요일지정제)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17]

또 다른 방안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행정해석을 고수해 왔는데, 이는 적절한 법 해석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

15 연구자의 경험상 최대근로시간제의 도입은 실제로 야근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물론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제한된 근로시간을 넘어(예를 들어 하루 12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해 허용하되, 추후 그만큼의 실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16 구체적으로 김선수(2012)는 1일 2시간, 1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1일 2시간~4시간, 1주 12시간~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75%, 그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기한다.

17 이성태 외(2012)는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시 24조원이 넘는 편익을 창출하고 일자리 1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함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중첩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에 부담이 되어 휴일근로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반복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18]

물론 실근로시간 단축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주5일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 있는 방향이기는 하나, 주5일 근무제의 예외 없는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빠짐없이 지급하도록 지도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야근 및 휴일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나 정규직에게는 주어지는 수당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좌담회에서 다수 등장하였다. 법의 준수를 통해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3) 삶을 기획하는 노동 : 순환적 생애주기 정착

100세 시대에 돌입했으나 장시간 노동은 이에 대한 준비를 어렵게 만들어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할 수 없게 만들고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무거운 문제임을 논의한 바 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생애시간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생활상에 맞춰 하루의 노동시간을 넘어 노동자의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시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80세 시대의 생애주기는 20대까지의 학습 → 60세까지의 노동 → 쉼으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그림으로 그려진다. 100세 시대의 생애주기는 삶의 전반에서 학습과 노동과 삶에 대한 기획, 그리고 쉼이 선순환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8 김유선(2012)은 초과근로 한도를 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115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림5〉 80세 시대의 생애주기

〈그림6〉 100세 시대의 생애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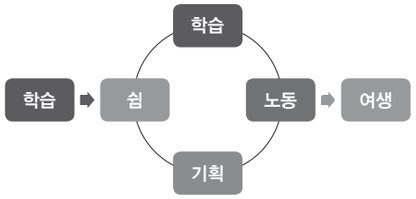

이러한 순환적 생애주기의 정착을 위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노동시간의 단축과 관련하여 제안되고 있는 제도를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일종의 장기휴가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이나 일부 연구기관 등에서 교수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안식년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안식년 혹은 안식월제를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는 일정 근속기간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6개월 또는 12개월의 학습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문주, 2012).

이러한 장기휴가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논의하고 싶은 부분은 그 외에 교수안식년제처럼 정기적으로 부여되는 장기 휴가를 통해 노동자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장시간 휴가제는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만 덴마크처럼 일정 근속기간을 가진 노동자들에게만 휴가를 부여할 경우 단절된 고용을 지속하는 비정규직은 이러한 제도에서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를 신중하게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19] 근

19 다만 근로시간계좌제는 사용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야근 및 휴일근로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와 병행되지 않으면 노동자들로 하여금 상당량의 초과근로를 하도록 한 뒤, 정년보다 앞당겨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시간외 근로 제한과 병행 사용될 경우 저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많지 않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제도이다.

로시간계좌제란 법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의 차이를 기록하고 이를 일정 시간 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기근로시간계좌제의 경우 상당한 양의 근로시간을 축적하게 되면 대체로 정년퇴직 시까지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조준모, 2010). 은퇴를 준비하는 휴가를 갖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순환적 생애주기를 통한 삶을 기획하는 노동의 구성은 이러한 순환적 생애주기 안에서 노동이 현재의 비정규직처럼 단절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생애주기의 구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제로 한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work-sharing)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20] 이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노동 강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무화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일자리는 69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김유선, 2012).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럼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청년실업의 해소나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등과 같이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견인책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과제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재 불안정하고 단절적인 노동을 반복해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적정한 노동시간을 확보하고 생애를 통해 노동경력을 발전시키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 향상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다. 비정형적 패턴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생계 조력자가 아닌 생계 부양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21]

지금까지 좌담회에 참석한 여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상적 노동자 모델에서 기인하는 남성중심적 시간 규범이 여성들의 생활과 생애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는 시간을 구성하기 위해 노동시간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간 영역에서 성평등 복지의 방향은 돌봄과 삶에 대한 기획이 일과 공존하는 노동시간으로의 재구성이어야 하며, 그 전제에는 좋은 노동자 규범에 대한 전환이 있다. 저녁이 있는 삶에는 공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활성화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의 논의에 생활시간표와 생애시간표의 재구성에 대한 고민을 더함으로써 10년 뒤 여성과 남성의 삶이 보다 균형을 이루길 기대한다.

20 최근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이 높았던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숙제는 해결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1 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식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 종사자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다. 무기계약직은 승진이나 호봉상승 등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을 뿐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규직 전환을 통한 노동자 삶의 질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김선수(201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 입법적 개선방안”, 「장시간 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 개선방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성희(2012),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의미 실현을 위한 과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외.

김영옥(2011), “100세 시대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 방안”, 「제70차 여성정책포럼 : 100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유선(2012), “장시간 노동실태와 문제점”, 「장시간 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 개선방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경아(2009),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노동시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2009년 하반기(통권 16호).

이성태 외(2012),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분석”, 「2012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이수영(2011),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기획재정부 외.

정문주(2012), “노동시간 단축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문”, 「장시간 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 개선방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준모 외(2010),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외국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2009), “OECD 국가들의 실질은퇴연령”, 「노동리뷰」7월호, 통권 제55호.

홍승아(2011), “맞벌이부부의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균형”, 「가족정책포커스」vol.3,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illiams, Joan(2000), Unbending Gender : Why Family and Work Co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Oxford University Press.

Jacobs, Jerry A. and Kathleen Gerson(2004), The Time Divide: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국미애 외 옮김(2010), 『시간을 묻다 - 노동사회와 젠더』, 한울아카데미.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 다양한 몸이 허용되는 사회, 평생건강을 고려하는 사회

전희경 (가톨릭대 강사, 살림의료생협 이사)[1]

1. 문제제기

(1) 왜 '건강'이 성평등 복지의 주요 영역이 되어야 하는가?

건강은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삶의 질 향상은 복지국가가 목표하는 가장 중요한 지향 중 하나이다. 하지만 건강은 많은 경우 개인적인 몸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노화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며, 특히 의료기술과 시장의 확대, 이른바 '건강 상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대중화 되고 몸/건강관리가 '자기관리' 기술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건강을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는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의 건강에 대해 어떠한 공공정책을 펼치는가는 건강을 다시 '공적인' 문제로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포괄적 정의는 '건강'이 사회 전반의 평등 및 연대 수준과 깊이 연결된 삶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즉, 건강 불평등은 사회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이며, 건강 불평등 자체가 인구집단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점, 그리고 건강은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기회이자 잠재력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복지의 중요한 의제일 수 있다(김명희,

1 sita-fight@hanmail.net

2009).

이른바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논해지는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많은 시민들은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가워하기 보다는 더 많은 걱정과 불안을 갖게 하는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왜일까? 길어진 수명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그 시간이 아파서 빈곤해지거나 빈곤해서 아픈 시간이라면, 질병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되는 시간이라면, 간병 등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점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의 '짐'으로 여겨지는 시간이라면,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100세 시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며, 그 불안의 핵심에는 언젠가 내 삶의 조건이 될 '불건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직/간접적으로, 장/단기적으로 바로 이 불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중요한 책무를 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질병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운명이라고 여겨지지만, 오늘날 많은 지표들은 그 '운명'조차 성별, 계급, 국적, 지역 등에 따라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불건강이 평등하지 않다면, 불안도 평등하지 않으며, 불평등은 정부가 가장 먼저 책임지고 개입해야 할 정치적 상황이다.

(2) 건강의 성별불평등, 건강정책의 성별불평등

다른 모든 사회 영역과 마찬가지로, 건강 영역 역시 그 사회적 현황이 심각한 성별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지난 30여 년 간 국내외에 축적된 건강과 성차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공히 합의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긴 하지만 병에 걸릴 가능성은 더 높다는 사실이다(네틀턴, 1995 ; 도열, 2010 ; 한국여성민우회, 2011).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역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평가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07).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통틀어,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b:65).[2] 건강관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인 삶의 질 지수(EQ-5D index)에 대한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 등 어떤 차이에도 무관하게, 항상 여성의 삶의 질이 남성에 비해 낮다(조인경, 2009).[3]

〈표1〉 15세 이상 인구 건강평가

년도	성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6	여자	6.4	32.6	41.8	16.2	2.9
	남자	10.5	39.7	37.9	9.7	1.9
2008	여자	8.1	38.6	36.5	14.8	2.0
	남자	12.4	44.2	32.4	9.3	1.7
2010	여자	7.8	34.8	38.3	16.2	2.9
	남자	11.9	39.2	36.7	10.2	2.0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더 오래 살지만 덜 건강하다는 여성의 건강 현실은 단순히 생의학적 지식[4]으로는 해명이 불가능하며,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한 인간의 평생에 걸친 몸의 변화와 건강 수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공공정책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현상이다. WHO는 세계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요 건강위험요인인 영유아 및 모성 영양결핍, 영양 및 신체활동, 성관련, 중독성 물질, 환경요인, 직업

2 성인 스트레스 인지율 여성 33.3%, 남성 28.6%, 성인 우울증상 경험율 여성 19.2%, 남성 10%,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여학생 50.7%, 남학생 37.7%, 청소년 자살 생각율 여학생 23.5%, 남학생 15.6%). 또한 청소년기 영양불균형과 신체활동 저하 지수 역시 분명한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하루에 20분이상의 신체활동을 일주일 중 3일 이상 경험한 비율 : 여학생 19.3%, 남학생 45.3%, 우유섭취 여부 : 여학생 8.8%, 남학생 18.1%, 과자섭취(일주일간 3일 이상) : 여학생 46.6%, 남학생 39.1%.

3 최근 1달간 질병이나 손상으로 하루 종일 누워 보낸 사람의 비율을 알아보는 월간 와병 경험률을 봐도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와병 경험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도 대체로 모든 층위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와병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직업별로는 모든 직업군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최근 1달 동안 질병이나 손상으로 결근결석을 경험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인경, 2009).

적 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기여도를 제시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총 질병부담의 39%와 조기사망의 47% 정도가 주요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나타난 결과이다(조인경, 2009).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 보고서〉에는 건강의 성별 불평등에 대한 간략한 개괄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건강 보험의 문제(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여성이 경험하는 피임, 임신중절, 요실금, 산후조리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과다한 의료행위의 문제(자궁적출술, 유방절제술, 갑상선암 수술 등에 대한 과잉진료), 간병 문제(여성에게 전가되는 간병), 신체왜곡 현상(다이어트와 성형 등으로 인한 불건강 문제), 모성건강 문제(생식건강 전반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의 양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온 모성건강 정책, 인공임신중절 문제), 건강 분야의 성인지적 인프라 부족(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2차의 내용이 축소되어 모성보호에만 초점, 성인지성을 강화한 정책 연구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한국여성민우회, 2012).

이 외에도 의료에 대한 성인지적 연구를 해온 연구자들은,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양쪽에서 돌봄 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남성의 '가정진입'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중노동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에서 서비스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성희롱 등 적대적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겪는 불건강의 문제를 조명해 왔다(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근골격계 질환, 방광염 등)(네틀턴, 1997:69 ; 남정자, 1999). "돌보는 사람은 누가 돌보는가?"라는 질문(도열, 2010 ; 정진주 외, 2012)은 우리 사회의 공/사 분리, 성별분업, 노동과 복지 시스템을 관통하는 질문일뿐더러, 매우 직접적으로 건강의 성별불평등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성이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비율과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둘 다 남성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주재선, 2010).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의 산업재해 인정 요구(최윤정, 2004)에서 보듯, 직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많은 질병들은 '산업재해'로 평가받지 못한다.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며 장기적인 심리적/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사건의 '피해자'로서 사건화 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건강 위험요소는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왔다. 성격차 지표가 세계 135개국 중 108에 불과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율성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등에 있어 심각한 성별 불평등이 있어 왔음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가의 건강 관련 정책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구조의 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왔다. '젠더와 건강' 이슈와 관련된 법/정책들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는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비전2030과 건강투자전략,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Health Plan 2010), 여성정책기본계획(1~3차), 암 관리계획(1,2차) 등이 있다. 그러나 젠더는 건강과 관련된 상황을 분석하는 관점으로 통합되기보다, 전통적인 '요보호대상'으로서의 '여성과 아동' 을 언급하거나, 모성 건강에 대해서만 다룸으로써 모든 여성을 어머니로 단일화하고 출생부터 죽음까지 시간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2-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모성건강에서 벗어난 전반적 여성건강 정책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바 있으나,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행된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김영택, 2008).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보면, 적정 영양소 섭취나 운동 실천율에 대한 성별 차이가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 정신건강, 관절염 등 질병 항목들 중에는 분명히 성별차이가 뚜렷한 질병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보건(중점과제 23) 항목에서 지나친 다이어트와 외모관리로 인한 불건강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성별중립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의 국가 건강정책이 건강의 성별불평등을 방기해 왔던 현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안팎에서 지속되어 온 성주류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젠더를 단순 변수(factor)로 취급하는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둘째, 그 결과 건강관련 정책에서의 유일한 '성인지성'은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방식, 즉 여성의 생식건강을

4 지금까지의 건강 관련 국가정책은 전문화된 의료지식에 기반 해 왔고, 전문화된 의료지식은 '생리적 차이 외에 여성과 남성은 같다'는 전제 하 오로지 재생산(생식)건강과 관련해서만 성별을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조인경, 2009). 이로 인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역시 '생리적 차이'에 해당하는 '모성보건(성 관련, 피임-임신-출산 관련)'으로만 특화되어 다루어져 왔다. "생식기관에 대하여 다루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를 하나의 성, 즉 남성으로 간주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의사들은 여성이 남성과 다른 점은 단지 유방과 자궁과 난소가 있다는 사실 뿐이고, 여성의 모든 신체 기관의 특징은 남성과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약물을 처방한다. 게다가 의사들이 진료 시 이용하는 정보는 거의 전적으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얻은 것이다.", 김지은/진건(2005:75).

분리된 한 분야로 특화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셋째,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많은 정책제안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한 성인지적 건강 인프라가 결여되어 있었다. 건강과 관련된 성인지 통계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전문적인 연구 및 행정 인력과 적절한 예산의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물론 건강 및 보건의료 정책이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 지역, 국적 등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건강불평등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보건의료 관련 사회단체들이 제안해 온 대안들이 있다(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네트워크 등). 특히 보건의료영역과 관련된 많은 NGO 및 연구단체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건강불평등과 연결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고령화가 여성의 문제임을 환기하며[5],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주장해 왔다(김기태, 2012).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에서도 역시 성평등 관점은 결여되어 있으며, '잔여적 복지'를 뛰어넘자고 하면서도 젠더를 '잔여적 범주'로 다루고 있다. '건강 형평성'의 지향 자체에 성평등 관점이 미미하거나, 있더라도 사회 전체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비전 보다는 '여성 관련 부문'으로 특화되고 부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의 복지욕구와 일상적 체감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건강'은 여전히 젠더중립적이고 의료적인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6]

따라서 건강의 성별불평등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은, 한편으로는 복지국가 정책입안과정에 개입해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들의 욕구(Needs) 자체를 가시화·조직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5 2010년 65세 이상 여성인구는 남성에 비해 100만 명 정도 많은 326만 명이며, 독거노인 중 여성 비율은 84%로 매우 높다.

6 가령,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 주관한 행사 〈2012, 내가 만드는 건강 공약〉의 결과 시민참가자들이 발의한 24개 보건의료 공약에는 단 하나, "13. 여성 전 생애주기를 통한 건강관리 시스템과 연구를 위한 전담센터 및 네트워크 조성"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http://www.health.re.kr/bbs/board.php?bo_table=b001&wr_id=77)

(3) 국가 건강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성평등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성평등'은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관계, 젠더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문제화함으로써 사회 정의(justice)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 지향이다. 그 동안 성주류화 전략에 입각하여 수립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그동안 법체계나 대표성 등의 영역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어 왔으며, 이에 기반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변화로 형식적 평등이 상당히 진전되어 온 성과는 기억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 수준, 형태로 이루어지는 불평등이 체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기본기조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전략과, 삶의 일상성 및 생활세계의 문화적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성평등'이 다가 올 복지국가의 철학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보건의료 정책 혹은 건강증진 정책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더 많이 끼워 넣는 것을 의미한다기 보다(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다), '여성'과 '남성'의 의미, 위치, 행위양식, 관계를 정의하는 젠더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미 수십 년 간 세계적 흐름이었고, 이에 따라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정책은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이 되어 왔다. 예방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뜻하는 것은 국민건강이 "환자와 병원으로부터, 보통사람과 그들의 삶으로 초점을 이동"했다는 것이다(Martin and McQueen, 1989:2, 네틀턴:1995:290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정확히 무엇이 '예방'되어야 하는가?' 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살펴볼 때, 이 질문에 대한 현재까지의 대답은 '잘못된 생활 습관(흡연, 음주, 운동부족)'과 '바이러스(HIV, 성병, 전염병 등)', 사회적 위해환경(스트레스)인 듯하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그러나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바이러스' 전염, '사회적 위해환경'은 성별에 따라 다른 정도와 양상을 나타낸다.[7] 즉, 젠더는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예방 중심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을 고려한 정책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젠더구조의 해체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거듭 밝혀온 것은, 여성의 지위가 높은 사회일수록 건강 수준도 높다는 사실이다. 성평등한 사회일수록 여성과 남성 모두 건강하며, 거꾸로 여성과 남성간의 건강 격차가 적은 사회일수록 전반적인 기대수명도 높다. 성평등한 사회일수록 남성 간 위계도 덜 엄격하며, 따라서 경쟁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적기 때문이다(윌킨슨, 2008:240-254). 결국, 젠더구조의 해체와 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검증된 방안이며, 다가 올 복지국가가 성평등 복지국가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지향과 철학이 공유될 때에만, 여러 부서(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여성가족부 등)에 걸쳐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 차원의 개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8]

2. 건강의 젠더 불평등 진단 : "여자다워지느라 아프다"

앞서 보았듯이, 불건강을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은 이미 젠더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인'에서 젠더영향을 인식하지 못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이 간과되어 왔다. 앞으로

7 특히, 흡연과 음주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건강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자리 잡아 왔다. 따라서 이 두 항목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정책을 입안할 경우 정책의 남성편향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8 "젠더별 건강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보건의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역 중 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건강에서 젠더불평등이 완전히 해결되기 위한 전략은 교육, 법, 노동 시장 등 기타 사회 제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공공정책 영역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김영택 외, 2008:35). 이러한 부서 간 협조와 통합적 건강증진정책은, '성 평등'이 복지국가의 철학 자체에 담겨 있을 때 가능하다.

다가올 성평등 복지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특정한 복지욕구는 그 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생애의 문제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은 '몸 전체' 및 '생애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증진은 '사회문화적 조건'과의 관련성 속에서 사고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회문화적 조건'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즉, 불건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단순히 의료지식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예방중심의 건강정책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정책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두 가지 유의점에 비추어 볼 때, 다가 올 성평등 복지국가는 어떤 의제에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할까? 우리가 주목한 것은 초등학생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생애의 80%를 다이어트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청소년기에 급격히 신체활동 참여율이 떨어져 버리는 많은 여성들의 일상적 현실이다.

〈그림1〉 성인여성 연령대별 저체중군 증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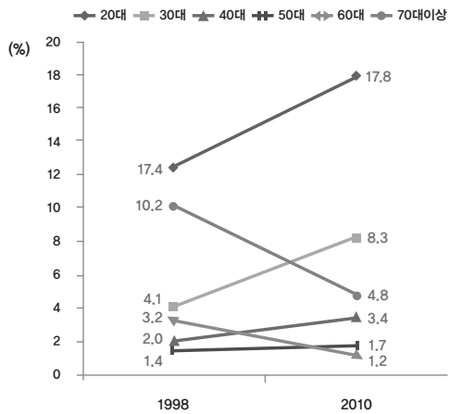

〈그림2〉 성인남성 연령대별 저체중군 증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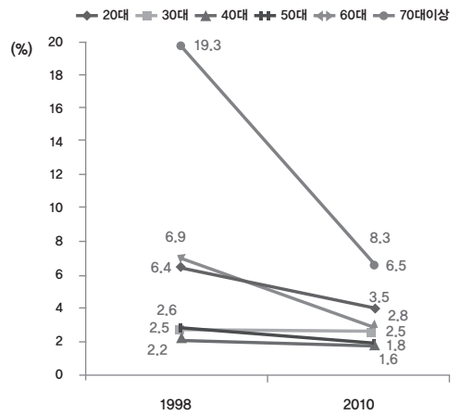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1998-2010년 한국인의 성별, 생애주기별 체중 변화〉

'균형잡힌 식사(영양)와 규칙적인 운동(신체활동)'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 지침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영양과 신체활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여성들이 '건강'

〈표2〉 19세 이상 인구의 성별 비만도 (단위 %)

성별	2007			2008			2009		
	저체중	정상	비만	저체중	정상	비만	저체중	정상	비만
여자	6.5	65.7	27.8	6.3	67.2	26.5	6.2	66.2	27.6
남자	2.8	60.6	36.6	3.6	60.7	35.6	3.4	60.4	36.2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그림3〉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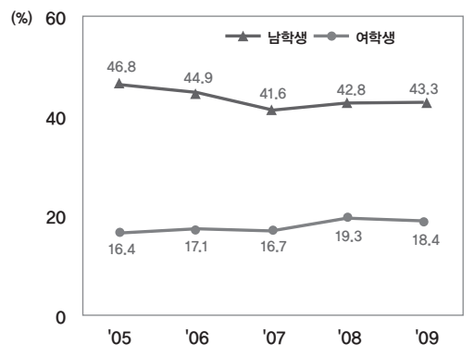

출처 : 제5차(200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질병관리본부, 2010), 박은지(2012)에서 재인용[9]

보다 '여자다운 몸(외모)'이라는 사 회적 가치를 더욱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장필화, 조영미, 2001). 가령, 적정 영양소 섭취를 가로막는 것은 단지 빈곤 뿐 아니라 젠더 규범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녁식사 결식 비율은 남성이 2.1%인데 반해 여성이 6.1%로, 남성의 3배 수준에 달한다(조인경, 2009). '여자다운' 외모를 위한 지나친 다이어트는 영양불균형과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며, 신체활동의 부족은 교통사고 후유증의

9 최근 7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이 3일 이상이었던 비율은 남학생 46.9%, 여학생 20.0%로 여학생이 남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최근 7일 동안 근력강화운동을 3일 이상 한 비율은 남학생 29.5%, 여학생 9.3%로, 1/3 수준에 불과했다(질병관리본부, 2012).

위험을 증대시킨다. 간단히 말해서, '균형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는 대중화된 과학지식보다, '여자는 여자다운 몸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화적 규범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젠더 규범 자체가 불건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몸의 변화, 질병의 유무, 의료적 처치에 대한 개인들의 판단과 선택에는, '여성성의 훼손 또는 보존'이라는 관점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

'여자다운' 몸을 조장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특정 신체부위들을 몸 전체로부터 떼어내어 '부위화'하도록 요구/조장한다. 불행히도 지금까지의 건강증진정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성의 몸을 분절화/대상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 왔던 것은 불건강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문제다.

몸은 권력을 반영하는 텍스트이자 권력이 실행되는 장(場)이기도 하다.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여성들이 특히 잘 걸리는 질병들은 '정상적인 여성'이라는 젠더 규범 및 관행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 왔다(보르도, 2001).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성형외과 의사, 체형관리사, 영양사, 생활체육사, 교사, 방송인 등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몸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런데 몸이 '교정'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이미 '정상적인 몸' 혹은 '이상적인 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적/이상적인 몸'은 성별화 된 몸, 다시 말해 '여성적인 몸'이다.

한국 사회에서 규범으로서의 '여성적인 몸'은 어떤 몸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젊고 날씬한 몸, 땀 흘리거나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는 얌전한 몸, 섹스하고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몸이다. 여성을 '여성'으로 정의하는 이러한 몸 규범은 불건강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인이다.[10]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 이러한 젠더화된 몸규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적극적인 정책의제가 필요하다. 좀 더 구체화하자면, (1) 젊고 마른 몸을 '여자다운 몸'으로 규범화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2) 신체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을수록 '여자답다'고 평가하는 젠더규범을 학습하게 되는 10대 여성들의 환경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내부 회의, 문헌자료 검토, 2회에 걸친 좌담회[11]를 통해 우리가 발굴 또는 주목한 '문제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1) 젊고 마른 몸을 '여자다운 몸'으로 규범화하는 사회적 압력

몸의 다양성과 나이 듦을 적대시하는 '20대 44 사이즈 여성'이라는 이상(ideal)

표준화된 '여자다운 몸'에 대한 압력은 강박적 다이어트와 비정상적인 안티에이징 시도를 낳는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개인들의 평생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보다 거시적으로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몸들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을 증가시킨다.

저도 한 10kg 정도를 뺐었는데 그때 저한테 제일 스트레스였던 거는 우울증이었어요. 너무 너무 우울하고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싸우고 같은 사는 동생이랑 맨날 거의 죽을 듯이 싸우고, 집밖으로도 안 나가갔거든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하는 건데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살 뺀 후의 몸만 사람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땐 정말 힘들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가고… 살을 갑자기 급격하게 빼고 안 먹고 그러니까 치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 10kg를 뺐을 때의 그 몸무게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 삶이 불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_ **다이어트 경험한 20대 여성**

헬스장에 있을 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너무 극명하게 원하는 게 딱 있어요. 남자는 식스팩 여자는 에스라인 이거를 원하잖아요. 저는 왜 남자는 근육운동하고 여자는 유산소 운동으로 살만 빼야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남자에 몸에 기대하는 바와 여자에 몸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이분법적인 몸에 대한 규정을 사실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여자한테 근육이 중요한데 그런 얘기들을 남자트레이너들은 참 안 하죠. 일단 여자들이 근육이 없게 되면 가장 쉽게 걸릴 수 있는 게 골다공증이에요. 어린 시절 운동량이 부족할수록 골다공증 많이 걸리고 유방암이나 대장암 걸릴 확률이 많아지는데, 그리고 근육이 있어야 체력이 있고 여자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자꾸 여자들은 근육을 빼라고 해서 덜 건강해지고… 악순환인 거 같아요. _ **운동처방사**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담임선생님한테 "참 털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그 이후로 온 대한민국 온 남녀가 제 다리털을 관리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밀어라 왁싱해라 뭘 해라 뭘 해라… _ **50대 여성**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나이든 배우들 다 탱탱한데 그 사람만 유난히 주름이 많아서 그걸 보고 있는 내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똑같이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을 갖게 됐구나… 이건 누구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닌데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우리나라 전체가 모두가 20대 초반의 여성의 몸을 보고 있어요. 이제 막 열네 살인 여중생도 이십대 초반을 꿈꾸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30~40대도 이십대로 보이기 위해서 주름을 없애려고 하고 날씬해지려고 하고. 전체가 이십대 초반 여자만을 '여자'로 인정해주고, 그 외에는 자기 관리 못하는 게으르고 아주 한심한 여자로 취급하잖아요. _ **30대 기혼 여성**

10 몸을 둘러싼 젠더규범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젠더이분법 속에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며, '남성적인 몸'은 '여성적이지 않은 몸', '여성적인 몸'은 '남성적이지 않은 몸'을 뜻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을 몸으로 환원하는 성차별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몸 규범은 그 범위, 양상, 방식, 정교성에 있어 여전히 압도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개입하여 사회적 한계를 설정하고 사회 전반의 몸 다양성을 촉진하는 것은 남성에게도 이롭다.

11 여성건강 의제발굴과 생활에 밀착된 담론 생산을 위한 진행된 포커스그룹 좌담회는 2012년 7~8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외모압박에 대한 좌담회에는 20대 중반~50대 초반의 여성 8명이 참여하였다. 여학생 신체활동에 대한 좌담회에는 중등/고등/대학교에서 교사로서 여학생을 만나는 여성들 6명이 참여하였고, 구체적 지위는 일반고 국어교사, 중등대안학교 교사, 일반고 체육교사, 10대여성 관련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강사와 연구자, 체육을 전공한 운동처방사 등이었다.

한계 없이 확산되는 왜곡된 몸 이미지

'젊고 날씬한 몸'이 극소수에게만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잘못된 이미지들이 만연해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한계는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외모관리 방법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비해, 그것이 초래하는 건강상의 위험을 알리거나 다양한 몸 이미지를 보여주는 정보들은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폭력이 일반 여성들한테 가해진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어느 외국이서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정말 저는 무서워요. 다양한 여성들이 있고 다양한 건강함이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_ 20대 여성

제가 버스를 타고 매일 한 시간씩 출퇴근을 하는데요. 버스에서 하루에 왕복하면 도합 여섯 번을 성형광고를 들어야 해요. 거기 성형병원들이 몰려 있나 봐요. 정류장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하루에 여섯 번을 듣는 게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남여가 대화를 하는데 여자가 "자기야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어디 고쳤게? 그러면 남자가 "코? 눈? 입?"이러면 "싹 다 고쳤지~" 이러는 거랑.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여자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버스는 애어른 할 거 없이 애도 듣고 남자도 타고 노인도 타는데 여성의 몸에 대해서 성형에 대해서 (그렇게 광고해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여섯 번을 들으면 정말 정서가 무감해지는 거예요. 너무 일상화 돼 있는 거죠. 여성의 외모를 지적하는 게 별로 특별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보면 사방에 비포 애프터 붙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제 몸이 아픈 거 같거든요. 얼굴 다 똑같잖아요. 다 깎아서. _ 20대 여성

성형 정보 프로그램이 그렇잖아요. 부작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이거 하면 다 예뻐질 거라고 말하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특히 막 뭘 넣고 이러는 거는 피부가 괴사한다든가 너무 너무 많은데 그걸 알려주는 데는 진짜 단 한 군데도 없고. 한참 지나고 나서 시사고발 프로에서 이런 피해사례가 있다고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이냐구요. _ 20대 여성

다이어트 워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고도비만 여성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 식의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진행하는 사람들은 완전 근육질의 남자들이고 여자들은 마치 짐승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그걸 못 따라오면 이 사람을 의지력 부족으로 몰아가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 실금 다 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 관절 망가지면 치료비는 누가 댈 거며… _ 30대 여성

몸 다양성 감소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여자다운 몸'이라는 젠더 규범은 동시에 '남자다운 몸'에 대한 규범이기도 하다. 즉,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점차 남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비만만을 편향적으로 문제시하는 상황 속에서 마른 몸을 지닌 사람이 겪는 고통을 비가시화하기도 한다. 즉, 통제되지 않은 외모압력의 무차별적 확산은 몸 다양성을 감소를 낳고,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제 남동생도 되게 비슷한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키 작고 뚱뚱한 남자는 루저다…' 키는 늘릴 수 없지만 몸이라도 날씬해야하는. 이제는 정말 시장이 여성 포화 할 만큼하고 억압을 주고 있다… 옷도 남자 옷이 최근엔 사기 힘들더라구요. 충격이었어요. _ 20대 여성

우리 아이가 되게 말랐어요. 이 아이가 동복을 입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두껍게 입으니까 그걸 벗으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벗으면 아이들이 자기가 얼마나 말랐는지 얘들이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자기가 놀림감이 된다고… _ 40대 여성

현재 한국사회에서 '외모관리'와 '건강'이라는 두 단어의 관계는 매우 도착적인 상황에 와있다. 주기적으로 '지나친 다이어트가 초래한 비극'이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의 소재로 등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날씬하지 않은데도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관리(건강관리)를 못하는 루저(loser)'로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 외모관리에 대한 융단폭력 수준의 사회적 압력은 흔히, "비만은 건강에 나쁘다"는 말로 쉽게 정당화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성들의 경험담은 한결같이 '자신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없어지

며 대인관계가 좋아졌다'면서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건강상의 이익을 말한다. 한마디로, '외모관리'는 때에 따라 '건강증진'과 연결되었다가 '건강위협'과 연결되었다가 한다. 커피 한 잔에도 칼로리(kcal)를 표기할 정도로 몸/건강 지식이 대중화되었지만, 정확히 어떤 것이 건강증진과 연결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정확하고, 이중적이며, 불균형하게 유통된다. 즉, 사회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의 몸을 혐오하고, 여성은 자기 몸을 혐오하며, 국가는 이 상황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건강정책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즉, 미용 산업과 성형의료를 중심으로 한 시장이 몸을 '아름다움'과 연결시키고 있다면, 국가는 그 정도와 방식에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여 무차별적 시장 확장을 제어하는 동시에, 몸을 새롭게 '건강'과 연결시키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신체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을수록 여자답다'는 젠더규범 학습

어느 순간 체육과 멀어지는 청소녀들

'여자다움'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청소녀들은 10대 초중반부터 현격히 체육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대중적 상식에 반하는 매우 위협적이고 문제적인 현실임에도,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다. 공교육 안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성별 불균형은 흔히 '원래 여자들은 체육을 안 좋아한다'는 성별고정관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방치되어 왔으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존의 건강증진정책 역시 이토록 명백한 성별 불균형에 대해 거의 무관심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대안학교에서는 분명히 뛰어난 (체육) 능력이 있는 여자애들이 있는데 왜 중등에 올라와서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몸의 규범 같은 것을 그

전엔 몰랐다가 알게 돼서 충돌하는 시기인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체육수업이 초등하고 중등에 경계에서 달라져요. 사실 계속 뛰어노는 여자애들은 남자애들하고 별 차이도 없고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는데, 시선을 느끼는 순간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저도 여중, 여고 나왔는데 운동장이 텅텅 비어있어도 누구도 안 나가 놀잖아요. 건물 안에선 엄청 뛰어놀지만. 여자들이 운동을 할 때 현재의 제도적인 요인보다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왔던 몸에 대한 규범하고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 이런 것이 너무 벽이 두꺼워서… **_ 중등 대안학교 교사**

학생들이 체육대회 할 때 봤는데 앞머리가 갈라지는 게 쪽팔린다고 절대 뛰지 않는 거예요. 100미터에 그 점수가 포함이 돼도 절대 뛰지를 않는 거예요. (…) 집단이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 포함이 된다고 해도 안되요. 거의 걷다시피 뛰고, 얘가 먼저 그렇게 뛰면 뒤에 뛰는 그럴 것 같지 않은 아이도 덩달아서 따라서 그렇게 뛰고. **_ 일반고 국어교사**

(운동을) 점점 더 못하게 되면서 자기들은 운동장을 쓰지 않는 존재로 자기정체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운동을 하러 간다고 하면, 혹은 그날 체육수업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_ 일반고 국어교사**

사실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 중동권에서 생기는 명예살인 이런 거 같아요. 사실 다들 아는데 벌어지고 있는… 왜냐면 체육에서 보면 세상에 절반이 여잔데, 절반이 몸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고 소외되고 있는 게 아주 오래 된 상황인데, 아무도 그걸 꼬집거나 물고 늘어지지 않는… **_ 일반고 체육교사**

운동하지 않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10대 청소녀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은 '평생건강'이라는 관점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몸은 시간적 연속성을 갖고 있으며, 질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오랜 몸 습관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신체활동의 경험과 습관을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한 여성들이 중년, 노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영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어렸을 때 계속 운동을 해서 신체활동을 해두지 않으면 후에도 (어려워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익숙하지 않아서. 어렸을 때 많이 뛰어노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아야지 유방암, 골다공증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여학생들이 이렇게 안 뛰어놀면 이 아이들이 커서 얼마나 불건강해질까? 라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국가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 어린 시절에 운동에 대한 경험 학교체육수업에서 소외받지 않은 경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커서 운동을 할지 말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_ **운동처방사**

운동하고 땀 흘리는 여성 이미지를 볼 기회 자체가 없다

몸은 생물학 그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해석들이 교차하는 장소이자 자아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특히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된 상황임에도 엘리트 체육인 외에는 운동하고 땀 흘리는 여성 이미지가 현저히 적은 상황, 일상생활에서도 운동하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없는 환경은, 여성들을 건강을 일구어 나가는 주체이기보다 다이어트상품의 소비자로 정체화하게 만든다.

미디어에 역할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손연재가 아무리 전 세계 5위를 해도 이 사람에 예쁜 외모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성들이 생활체육을 했던 모델이 전혀 없었다, 앞머리 갈라지지 않는 예쁘게 하고 있는 모델이나 연예인 말고는 자기가 계속 모델링해서 봐온 모델이 없잖아요. _ **일반고 국어교사**

하는 사람을 봐야 되요. 성장하는 어린 세대가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고 여자가 저렇게 운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어린 소녀부터 할머니든 엘리트 선수든 엘리트선수를 거쳐 간 아주머니든 다양한 연령이 섞여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운동을 하는 경험이 필요하죠. 이건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마포구 여성 스포츠의 날〉이 있는 거예요 여기 타이틀은 종목이 아니라 나이로 나눠지고, 선수출신이냐 일반인이냐로 나눠지고, 가까운 학교를 빌려서 다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선수가 운동하는 것도 보고, 엄마가 운동하는 것도 보고… _ **일반고 체육교사**

"남성은 여성을 본다. 여성은 보여 지는 자신을 본다"는 문화이론가 존 버거John Berger의 말대로, 남성의 응시는 성차별적 사회에서 강력한 수행력을 수반한다. 여기서 남성적 응시란, 구체적인 생물학적 남성 개인들의 응시라기보다, '남자가 보기에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는가'라는 기준을 작동시키는 사회적 시선을 의미한다. 남성의 몸이 운동하는 몸, 활동적인 몸,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확장되는 몸으로 정의되는 바로 그 만큼, 반대로 여성의 몸은 운동하지 않는 몸, 수동적이고 정적(靜的)인 몸,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많고 일찍 귀가해야 하는 몸으로 정의된다.

몸-행동에 관한 젠더 규범은 좁게 말해서 여학생 체육의 부진은 매우 오래된 현상임에도 사회 전반의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인지'되지 않아 왔다. 그야말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적 현실이다. 성차별적 사회에서, '여자의 몸과 남자의 몸은 다르다'는 것은 생물학적 사실이기 보다 '달라야 한다'는 규범일 가능성이 높다. 남성의 운동은 남자답고 정상적인 행동으로, 여성의 운동은 여자답지 못하고 예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여성이 '규칙적 운동'이라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차별로 인식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계획 2010〉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고,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조금씩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생활체육 활성화가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와 중요성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단기적으로 '이미 아픈', 혹은 '특별한 취약 계층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은 실정이다.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으로 거치게 되는 공교육 과정, 특히 중학교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신체활동 경향이 성별에 따라 뚜렷이 달라지는 현상은 쉽게 관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없어 왔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건강정책은 무엇보다 '평생건강'이라는 장기적 비전 속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박탈당해 왔던 신체활동 기회를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누적되는 차별 효과를 시정하고 이후의 불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일 수 있다. 시민들이 단순히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대해 좀 더 많은 통제력을 지닌 적극적인 건강 주체가 되도록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모두가 '여자'다워지고 '남자'다워지기 위해 애쓰면서, 여전히 여자답게/남자답게 성역할분담을 지속하면서, 생애 전체의 연속성과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젠더규범을 지속시키면서, 10년 후의 한국 시민들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성평등 건강정책 기조 및 의제 제안

(1) 기본 방향 :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건강 분야 성평등 복지의 기본 방향의 핵심은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성인지적인 건강 및 보건의료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다.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라는 슬로건은, 단순히 모성 중심의 여성 건강 논의에서 '모성외(外)의' 여성 건강 논의로 범위를 넓히자는 데에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여성'을 누구로 보는가에 관한 국가의 관점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기도 하다. '부녀자 정책'이나 '여성/아동/청소년과'처럼 한국 정부가 사용해 왔던 말들은 여성을 '부녀(婦女)'(남자의 배우자)로 보거나 아동이나 청소년과 비슷한 의미에서의 '약한 보호대상'으로 정의해 왔다. '모성보호' 중심의 노동권 법제화나 '모성건강'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역시 여성을 시민이기 이전에 남성배우자와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위치, 변동 불가능한 생물학적 운명의 당사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모성 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을 고민한다는 것은 어머니/아내/주부/타고난 약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여성'을 상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 속에서 구상하는 다가올 복지국가의 건강정책은, 몇 가지 지점에서 기존의 ('진보적')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주장해 온 대안과 접근 방식을 수정, 확장,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근본적으로 젠더규범이 불건강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임을 깊이 인지하고 이를 건강정책이 개입해야 할 문제 상황으로 다루어야 한다. 건강의 성별불평등에 개입하지 않는 '건강 형평성'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무력하다. 기존의 정책 및 정책 대안들이 은연중에 당연시 해온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에 대한 전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젠더규범의 해체라는 명확한 지향성을 중심 철학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건강 관련 복지 논의는 보건의료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의료가 사람들의 건강을 관할하는 중요한 사회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시민들을 의료 소비자라는 수동적 존재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중심으로 건강정책이 논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생애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고, 복지에 시간성(temporality) 개념(또는 생애과정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평생 건강'을 고려하고 준비하는 진정한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여성의 몸이 '여자다운 몸'(= 보여 지는 몸(아름답지만 약해야 하는 몸), 임신하는 몸, 보호되어야 하는 몸)이라는 관점에서 사고된다면, 10년 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움직이는 몸, 노동하는 몸, 자신의 건강을 파괴하지 않는 몸, 활동반경을 넓히는 것이 격려 받는 몸으로 상상되고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성평등 복지국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몸'에 대한 젠더 규범의 해체와 '다양한 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의 진입이다.

(2) 의제 제안 : 몸의 젠더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

앞서 살펴본 대로, 건강의 성별불평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 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일상적이며, 광범위한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생애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체활동(체육)의 경험 제한과 비현실적 외모를 조장하는 문화적 규범과 관행이다.

이 글은 성평등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한 단계 구체화하고, 일상적이면서도 생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정책 대안으로 주목되지 않아 왔던 두

가지 의제 를 발굴,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신체 이미지 왜곡에 대한 사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몸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교육에서의 여성 신체활동 촉진을 통해 평생 건강을 준비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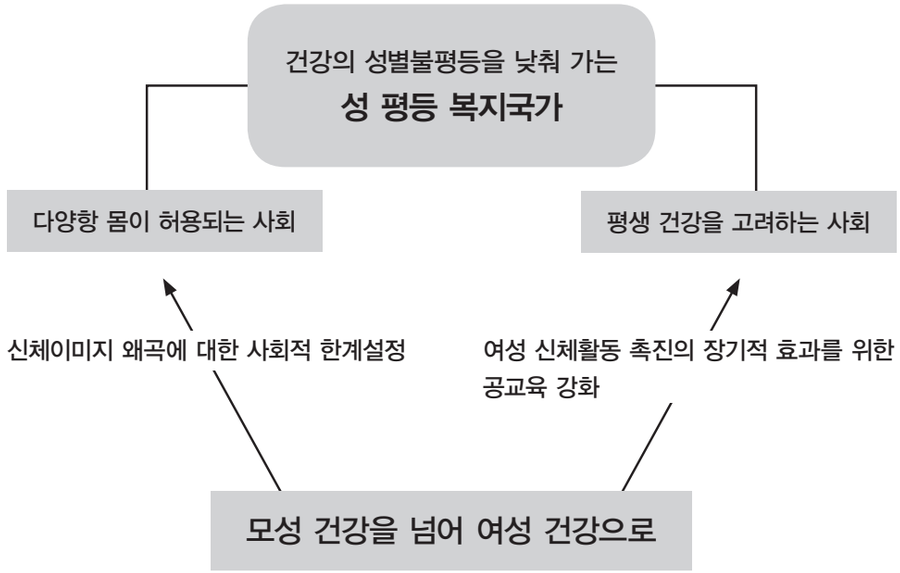

의제제안 1) 신체이미지 왜곡에 대한 사회적 한계설정

'여자다운 몸(외모)'을 조장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에 대한 적정한 한계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인간 삶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몸/외모에 대한 압력에도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다이어트 광고, 성형 광고, 컴퓨터그래픽으로 손질된 비현실적 신체이미지, 젊고 날씬한 몸이 될 것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의류업계의 관행들, 대중매체와 인터넷에 범람하는 '비표준적' 몸에 대한 혐오들은 지금까지 소위 '아름다움의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다른 어떤 '본능'도 적절한 사회적 한계와 제도적 규제 없이 무한대로 허용되

는 경우는 없다.[12] 이것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괜찮은가?"의 한계를 사회적으로 합의해가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 ◆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이 신체이미지와 주관적 건강, 신체활동(건강증진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행
- ◆ 강박적 외모 관리가 초래하는 건강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 ◆ 미디어콘텐츠, 광고, 의류산업이나 미용 산업 등에서 '건강 체중'에 훨씬 미달하는 '미용 체중'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저체중/과체중' 등 불건강을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적정한 규제[13] 및 건강에 대한 대안적 정보의 공익적 유통
- ◆ 장기적으로는 몸 다양성 촉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여자답지 않은' 몸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상상해볼 수 있다.

불건강한 몸 이미지 확산에 제동을 거는 사회적 한계 설정과 몸 이미지의 건강성 확보는 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수정하고 다양한 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2 음주와 흡연이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정책 포커스라는 사실을 환기해 보면, 여성에 대한 외모 압박으로 인한 불건강한 다이어트와 성형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나 '시장의 자유'로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지가 더욱 선명해진다.

13 관련 좌담회에서는 '적정한 규제'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거론되었다. : "우리나라 마네킹 이잖아요 우리나라 여자 신체 표준에 맞게, 예를 들어 여자 표준 키가 159다 그러면 159에 맞게 마네킹이 나와야지 175 마네킹을 갖다가 놓으면… 저는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나온 표준체중으로. 미용체중이 아닌. 그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 영국 유학 중인 20대 여성 / "옷 사이즈 같은 것도 정책이 될 수 있나요? 전 제발 프리사이즈(free size)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몸엔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프리(free)야? 옷 사이즈도 66 이상이 잘 없더라고요." - 다이어트를 경험한 20대 여성

의제제안 2) 초중고 교육과정의 재편을 통한 여성 신체활동 촉진

예방적 건강증진활동의 핵심인 '운동(신체활동)'에서 인구의 절반을 소외시켜 온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로 인한 누적된 차별 효과(불평등 효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체활동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적/신체적/관계적 건강에 관한 포괄적인 건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한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국가의 교육 철학 안에 '성평등 건강'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동(신체활동)이 평생의 생애 안에 자연스러운 일부로 자리 잡는 데에는 1) 아동/청소년기에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2) 초-중-고 공교육 12년간 신체활동을 격려받고 적절한 지원을 받았는가, 3) 몸 움직임의 즐거움을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가가 주된 관건이다. 1)과 2)의 경우, 공교육 체계 안에서의 체육수업 운영이 남성편향(남자 체육교사, 남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여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않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방치해 온 부모-교사-또래집단-사회 전반의 태도가 있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박은지, 2012). 또한 이에 대안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제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14] 문제는, 이러한 진단과 대안이 별로 새롭지 않다는 것이다. 왜 운동(신체활동)과 젠더의 관계는 익숙한 진단과 똑같은 대안을 몇 년째 반복하게 되는가? 이것은 국가의 교육 비전 및 교육 철학 안에 건강에 대한 성평등 관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며, 인간을 어떤 존재로 성장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의 교육 철학에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결여 또는 주변화 되어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철학 안에 '성평등'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14 성별 분반 체육수업, 운동장 공간의 남성점유를 시정하기 위한 시공간 쿼터제, 체육관 제공 등 사회적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조건 마련, 이전까지 남성에게 친숙한 스포츠 종목 외에 여학생들이 쉽게 진입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체육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육)교사 연수에 신체활동의 성별편향 시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포함 등이 그 예이다.

것처럼, 국가의 교육 철학 안에 '성평등 건강'이 결여되어 있을 때 결과적으로 학교는 불건강을 배우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은 '건강 성평등'을 위한 입구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무엇을 위한 곳인가'에 대한 질문의 환기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대안적인 성별 관계를 배울 수 있도록 공교육 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 첫 걸음은 '우선 기회를 늘리는 것'[15]이고, 더불어 '건강한 몸'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 ◆ 신체활동의 현격한 성별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과 성인지적 프로그램 마련
- ◆ 여학생 교복 등의 복장 제한이나 신체활동 용 기구 및 복장의 낙후가 초래하는

15 신체활동의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좌담회 과정에서 대다수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공통적 경험이었다. : "저는 체육이 인생에 없다가 작년에 아는 언니가 같이 헬스를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언니도 운동에 관심이 없다가 다리가 아파서 pt를 받고서 몸만들기 운동하기에 대한 성취감과 삶의 질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헬스장 갔더니 남에 눈도 의식되고 힘들고 헬스가 무식한 운동 같았는데, 하면서 성취감이 있으니까 가치 있는 경험이니까 여자들이 쫄티 입고 역기 들어도 의식이 안 되고, 모델이 생기니까 여자들이 복근을 만드는 게 미용이 아니라 '진짜 운동 많이 했겠다' 그 가치를 아니까 그게 괜찮은 행위 같고. 여자 트레이너들이 다시 보이고 존경스럽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 그리고 그거 하나 배우고 나니까 수영도 배우고 싶고,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달리기도 배우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_ 20대 여성 / "정말로 기회나 적극적인 지지나 이런 걸로 조금만 맛을 보면 이게 재밌고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일단은 기회가 너무 없고… (…) (대학 여성학 수업에서도) 이론을 주욱 하다가 실제로 체육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2주? 3주? 밖에 안돼도 얘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에너지가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인거 같아요. 있으면 해요. 있으면 빼거나 하진 않아요." _ 여성학 강사 / "(성별) 분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퍼스널트레이너로 뛰었던 경험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남자 트레이너들이 여성 회원을 대하는 걸 봐도. 여성들이 신체활동을 통한 해방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_ 운동 처방사 / "지속이 되는가가? 관건인 거 같아요. 어린 여자애들뿐만 아니라 성인 여자들도 없잖아요, 공간이. 성인여자들이 요즘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엔 살 빼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에 재미를 알아버려 가지고 어디 강변이고 클럽이고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_ 중등 대안학교 교사

신체활동 제약에 대한 대안 마련. 신체활동 기회와 접근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구성

◆ 지역(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여학생 리그' 운영 및 생활체육 동호회 적극적 지원, 여성체육인들과의 연계를 통해 '모델'을 접할 기회 제공.

◆ 초-중-고 체육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건강의 성별불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의무화

◆ 단편적 내용 중심의 학교 성교육을 확대 개편하여, 학생/교사/부모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포괄적 '건강권' 교육 시행

◆ 전 생애에 걸쳐 연속적인 신체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활동이 연속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생활체육 정책 및 지자체 건강증진정책과 연계.[16]

등을 상상해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신체활동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생활습관과 몸 인식에 지속적/누적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누적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적극적인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몸을 분절하기보다 연속적인 것으로 보고 '평생 건강'을 예비하는 장기적 건강증진정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6 "초등학교 때부터 참여해야 체육수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참여하는 게 달라져야 달라지지, 이 내용만 바뀐다고 해도, 정말로 하기 싫다고 하고 하는 애들을 끌어다가 (효과를 보긴 어렵거든요.) 그런 경험이 이미 자기네 동네에서 있었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잡히는 거고, 배우고 싶은 다른 수업을 제안을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체육수업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정말 안 되고,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 여성학 강사

참고문헌

건강사회연구센터 (2008), 〈통계로 본 한국 건강불평등 2008〉

김명희 (2009), "건강형평성, '보건의료'를 넘어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9년 제3기 보건의료 정책 과정〉 강의자료 (미간행)

김영옥 (201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자료집, (2012.7.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택 (2008), "법과 보건계획에서 여성 건강의 위치", 대한여성건강학회, 〈여성건강〉 9(1), pp.87-101.

_____ 외 (2008), 〈한국 여성건강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정옥 (2003),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김지은 · 진건 (2005), "남녀 성 차이를 고려한 의학", 대한여성건강학회, 〈여성 건강〉 제6권, pp.75-90.

김창엽 (2011), "복지국가와 보건의료", 건강정책학회 발표문 (2011.4.29), (미간행).

김태홍 외 (2012), 〈최근 10년간 여성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외 (2012), 〈최근 10년간 여성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정자 (1999),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건강의 문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99-2.

레슬리 도열 (2010), 〈무엇이 여성을 병들게 하는가 : 젠더와 건강의 정치경제학〉, 김남순 외(역), 서울: 한울 아카데미. (Lesley Doyal, What Makes Women Sick: Gender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Palgrave Macmillan, 1995.)

리처드 윌킨슨 (2008), 〈평등해야 건강하다 :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김홍수영(역), 서울: 후마니타스. (Richard G. Wilkinson,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The New Press, 2005)

민무숙 (201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와 시사점",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자료집, (2012.7.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은지 (2012), "젠더적 관점에서 본 비만과 운동"

_____ (2012), "왈가닥 뛰어 노는 소녀가 많은 마을이 건강한 마을이다", 서울시 청책 라운드테이블 발표자료.

박홍주 (2005),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개념 확대를 위한 시론", 대한여성건강학회, 〈여성건강〉 6(1), pp.71-92.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06-2010) 2008 실행계획〉.

보건복지부 (200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20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07), 〈여성의 건강 행태〉

보건복지부 (201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보건복지부 (2012), 〈1998-2010년 한국인의 성별, 생애주기별 체중 변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2005),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잔 보르도 (2001), "몸과 여성성의 재생산", 케티 콘보이 외 엮음,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성의 상품화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 서울: 한울. (Susan Bordo, "The body and reproduction of femininity", Unbearable Weight: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유진은 (2009), "학업성취도 : 학교 유형과 성별 차이",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교육 실태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09.12.9)

임인숙 (2003), "대중매체의 몸 이미지와 다이어트 경험", 2003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정은지 (2005), "건강분야의 성인지적 정책방안에 대한 토론문", 한국여성개발원 제28차 여성정책포럼, 〈건강분야의 성인지적 정책 발전 방안〉 (2005.11.9)

정진주 (2007),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젠더 리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진주 외 (2012),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서울: 한울 아카데미.

정해숙 (2009), "남녀공학교육 현황과 성별 교육경험 분석",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교육 실태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09.12.9)

조인경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성별분석을 통해 본 여성건강 실태 : 삶의 질 및 흡연과 음주, 영양, 신체활동 실태를 중심으로", 〈여성건강〉 10(1), pp.115-152.

주재선 (2010), 〈한국의 성 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질병관리본부 (2012), 〈제7차(2011)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최윤정 (2004), 〈'산업재해'로서의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한국여성민우회 (2006), 〈청소녀 학교 체육활동 경험 보고서〉.

_____ (2012),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a),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자료집 (2012.9.25)

_____ (2012b), 〈차기정부를 위한 여성정책 10대 과제〉, 제79차 여성정책포럼, 2012.10.23.

한국사회의 다음을 여는 성평등복지 정책 제안

한국사회의 다음을 여는 성평등복지 정책 제안[1]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보편적 복지국가가 새로운 대안 사회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전환기를 맞아,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한 모색을 계속 해왔다. 성평등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사회가 무엇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지향해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사회정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언어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평등 정책은 '여성전용 정책'이거나 '가족 정책'이거나 '모성보호 정책'으로 빗겨 있다. '여성'이라는 성역할은 성평등을 질문하게 만드는 배경인데, 오히려 그 성역할에 갇혀 있는 정책들이 성평등 정책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지 않으면, 우리가 복지국가에서 살게 되더라도 여전히 '여성전용 복지제도'나 '가족 복지제도'나 '모성보호 복지제도'라는 한계선 주변에서 삶을 기획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전략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복지국가의 밑그림은 정책이라는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미 2012년 초에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발표하며 노동, 연금, 건강, 돌봄, 주거, 교육 등의 영역에 걸친 170여개의 정책 과제들을 제안한 바 있다.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는 성평등 복지국가의 정책적 설계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이글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인숙, 박봉정숙 그리고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강선미, 권박미숙의 공동 토론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은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며 토론되고 있는 해이다. 그러다보니 막상 그 정책을 삶의 조건으로 살아가게 될 사람들에게 정책은 다 비슷비슷하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복잡하고 어려운, 그래서 결국 관심이 가지 않는 그 무엇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통계 숫자 너머에 있는 삶에 와닿는 정책으로 성평등 복지국가의 얼굴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답을 성평등복지국가 담론과 여성의 일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찾아보고자 2012년 한 해에 걸쳐 '대중참여 연구를 통한 성평등복지 의제와 정책과제 발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에서 제시한 성평등복지국가 기본방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연구 영역은 보고서에 제시된 '노동, 연금, 건강, 돌봄, 주거, 교육'이 아닌, '노후, 시간, 건강' 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기준으로 설계했다. '노동, 연금, 건강, 돌봄, 주거, 교육'이 정책적 통합성을 갖추기 위한 분류라면, '노후, 시간, 건강'은 각각 그 수위가 다르고 연관된 정책 영역 또한 혼재되어 있는 분류지만, 일상사의 구조를 더 밀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류일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서는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종합적인 청사진을 논리적으로 대표하는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공감대가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상 언어를 두텁게 쌓기 위해 '노후, 시간, 건강'을 연구 영역으로 설정했다.

연구의 중심에는 좌담회를 배치했다. 좌담회에 모인 여성들의 이야기로 모든 여성들의 삶이 설명되지는 않겠지만, 서로 다른 삶들이 만나 공감이라는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지점을 발견하고, 그 지점을 믿을만한 좌표로 삼기 위해서였다. 확인된 좌표는 노후가 불안하고, 삶 자체가 바쁘며, 일상적으로 아프다는 것이었다. 왜 불안하고, 바쁘고, 아픈가. 그 이유와 대안을 담은 결과물이 바로 이 토론회에서 제시하는 성평등복지 의제 –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 '노동시간 재구성으로 쉼표 찍는 사회',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이다.

특히 성평등복지 의제들을 정책과제로 다듬어 나가면서, 이 연구의 결과가 단순히 '복지 수요 조사'에 기반한 '민원 해결적 정책 제시'로 축소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설정했다. 여성 전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아닌 보편을 흔드는 정책, 십년 뒤의 달라진 한국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선정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이미 반복적으로 제시 되어왔던 정책과제는 그 중요성에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회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자극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피하고자 했음을 밝힌다.

대선이 임박한 요즘, 갑론을박이 깊어질수록 일상의 결을 건드리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갈증 역시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성의 일상에서 길어낸 의제를 기반으로 성평등한 다음 사회를 상상하게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했던 이 사업의 결과물이 이런 갈증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사회의 다음을 여는 성평등 복지정책'을 제안한다.

| 정책방향 1 |

복지제도와 가족제도를 개인의 독립에 기반한 다양한 연대 가능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라는 첫 번째 의제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삶이 정형화되지 않는 시대임에도, 복지체계와 돌봄 관계망이 가족을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삶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재 진단을 담고 있다. 이 진단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모습은 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이 가족을 중심으로 닫혀있지 않으며, 돌봄 공동체의 가능성 역시 결혼을 중심으로 닫혀있지 않은 사회이다. 이에 복지제도와 가족제도를 개인의 독립에 기반한 다양한 연대 가능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성평등복지 정책방향으로 제안한다.

정책 1 사회구성원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사회안전망 **1인 1국민연금제**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지만, 적용제외자 제도가 있어 실제 전국민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제외자에는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이 직장가입자로 9년간 연금을 납부했더라도[2] 직장을 그만두고 무소득 배우자 즉 적용제외자로 편입된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비가입자이기 때문에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현행 국민연금가입구조는 1가구 1연금제이며, 그 결과 여성의 연금 수급권은 혼인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이 개인단위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가구주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전달되는 권리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족단위 복지제도 안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를 드러내는 사례이다.

보편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구조를 1인 1연금제로 개편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족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사회안전망의 기초단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책 2 다양한 돌봄 관계망 형성을 지지하는 가족제도 **생활연대협약법 제정**

민법과 건강가족기본법[3]에 따르면 가족은 한국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족의 구성요건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제한되어 있다.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인데, 그 가족을 구성하는 요건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사회보장, 납세, 자녀교육, 주거 등에서 공동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정한 삶의 형태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삶의 형태는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금 수급권은 10년 이상 가입 시 발생

한 사회가 지지하는 관계의 형태가 제한적이며, 그 제한을 둘러싸고 사회적 인정과 낙인이 발생 할 때, 관계는 친밀성의 공간이기에 앞서 규범의 공간이 된다. 생활연대협약법 제정은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법 등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제도화된 대안적 가족구성권 제도를 한국사회에 도입하여 한국의 제한적 가족제도가 낳고 있는 친밀성과 관계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에 낙인이나 제한이 완화되면, 즉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관계의 형태가 늘어나면, 관계성을 둘러싼 삶의 불안정성 또한 가족이라는 획일화된 답안 안팎에서 과열되지 않고 각 개인들의 삶의 기획 속에서 다루어져 갈 수 있을 것이다.

| 정책방향 2 |

기준노동자를 일-쉼-돌봄을 균형 있게 누리는 인간으로 설정하여 하루 노동일과와 노동 생애주기를 재구성한다.

두 번째 의제인 '노동시간 재구성으로 쉼표 있는 사회 만들기'는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남성 성역할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도 바쁘고, 여성은 더 바쁠 수 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일과 돌봄 그리고 쉼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지금보다 느리고 여유 있는 사회를 다음 사회의 밑그림으로 제안한다. 이에 인간을 '일하는 남성, 돌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닌 일-쉼-돌봄을 균형있게 누리는 존재로 재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하루 노동일과와 노동 생애주기를 제도화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한다.

정책 3 하루 일과에 쉼을 제도화하기 **점심시간 유급화**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현행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4] 점심시간 유급화는 '휴게시간 제외' 부분을 '휴게시간 포함'으로 개정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정책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휴가확대, 연장근로시간 제한 강화 등 이미 다양하게 제안되어 있다. 또한 주 40시간 근로와 연차유급휴가만 근로기준법대로 준수하더라도 연간 근로시간이 현재 2,193시간에서 1,900시간 정도로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많은 정책들 중 점심시간 유급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이유는 기준 노동시간의 양 자체를 재설정하는 제도, 소득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제도, 그리고 휴식시간이 생산시간과 배치되지 않으며 생산시간이라는 동전의 다른 한 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담을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주5일제' 시행이 토요일은 당연히 휴일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냈듯이 '점심시간 유급화'로 6시 퇴근에서 5시 퇴근으로 하루 노동시간의 기준자체가 달라지며, 하루 중 1시간의 휴식은 하루 노동시간의 전제이므로 노동시간처럼 지불되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정책 4 생애주기에 쉼을 제도화하기 **노동 안식년제**

안식년제는 일정기간 근속한 경우 재충전을 위한 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로 이미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 임원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노동 안식년제는 이제도를 사회적 고용복지제도로 확대해,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이든,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이든, 경력이 연속적이든 단절적이든 일정 기간 일한 뒤에는 누구나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사회의 기준 노동생애주기를 재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기여한 햇수를 기준으로 안식년 휴직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안식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형태를 우선 제안한다.

현재는 노동생애주기 자체에 휴직이 일반적이지 않고 돌봄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요구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가 자리잡혀있다. 하지만 안식년 휴직이 일반화되면 휴직을 쓰는 노동자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예외적 노동자가 아니라 보편적인 노동자가 될 수 있다. 즉, 기준 노동자 모델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작업장 내에 상시적으로 휴직자가 있을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10명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3명의 휴직을 전제하고 13명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구상해 볼 수 있다.

3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4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책방향 3 |

몸 다양성 보장을 건강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며, 건강 정책 전반에 평생 건강 관점과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다.

세 번째 의제인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는 몸에 대한 성별화된 규범이 불건강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몸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로 추구되며,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몸 경험을 격려 받음으로써 평생 건강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에 몸 다양성 보장을 건강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며, 건강 정책 전반에 평생 건강 관점과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

정책 5 몸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제안 **몸다양성보장법 제정**

몸다양성보장법의 내용은 성별화된 몸 규범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정책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한계 설정의 기준은 건강권이며, 이러한 기준을 미용, 의료, 패션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몸 이미지 왜곡과 표준화 정도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수정으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는 광고를 심의하는 영국의 광고제한 제도, 거식증 예방을 위해 WHO 기준 저체중 모델의 패션쇼 출연을 제한한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조치, 같은 취지의 프랑스 패션·광고업계의 '건강한 몸' 권장 협약, 극단적인 다이어트 문화를 개선해 여성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아르헨티나의 '옷 사이즈 다양화 법'[5]등의 정책들이 이 법안의 취지 하에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몸다양성보장법은 현재 여성이 겪고 있는 몸 규범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몸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건강한 사회'라는 몸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설정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

정책 6 생애 전반에 걸친 성평등 건강권의 실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현재 건강 관련 기본법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이 있으며 이 두 법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 금연, 금주 등을 주요 개입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저해하는 요소를 가늠하는 기준과 이에 대한 정책 개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5 작은 사이즈에서 특대 사이즈까지 정해진 규격의 못을 모두 갖추지 않는 상점들에 대해 최대 17만 달러(약 1억 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작은 사이즈의 옷이 여성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감행하도록 만들어 거식증과 폭식증 등 국민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2005년에 제정됨

여성 건강과 관련한 법령은 모자보건법과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정도인데, 현재 시행중인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모성보건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건강관련 정책에서 여성건강은 모성건강으로 특화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건강기본계획'에 기반 해 성인지적 기초 자료 생산, 통계 분석, 정책 집행 등이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생애전반에 걸친 성평등 건강권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련 기본 계획 자체에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건강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기본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차원의 법안 정비 작업을 제안한다.

법안 정비의 내용으로는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중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6] 수립,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7]에 성인지적 관점을 개입시켜 건강 정책과 관련한 기본 계획 자체에 성평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금연, 금주를 중요한 정책 개입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듯이, 성평등

6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 · 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 예방 의료와 평생 건강의 실현을 위한 '공교육 내 성평등 건강권 증진 계획 수립' 또한 중요한 정책 개입 영역으로 설정함으로서 주요 정책 영역 자체를 성인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토론 1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에 대한 토론문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족단위’정책을 문제시 하는 이유

- **‘가족단위’정책은 기본적으로‘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전제로 함.**
  - 이 모델 하에서 여성은 독립된 주체가 아님. → 성별역할에 대한 강화

-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성인노동자모델’로 전환 필요**
  -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갖는 유효성이 상실한 상황에서 성평등적이고 개인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사회모델로 전환 필요

■ ‘개인단위’로의 전환이 필요한 배경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고학력화, 직장 맘의 증가, 친족 네트워크의 해체, 고령화, 이혼·비혼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단위 정책이 전제로 하는‘가족상’의해체와 소수화**
  - 생산과 재생산 역할을 둘러싼 갈등
  - 고령화에 따른 돌봄 문제와 삶의 불안정성 증가. 돌봄의 사회화와 특히 여성고령인구의 증가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을 요구됨.

• **1인 가구의 증가는 가구유형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핵가족 중심의 주택, 세제 등 기존 제도와 정책에 대한 조정 및 변경이 불가피함.**

– 현행 4인 가구 중심의 최저생계비 산정기준과 가구 단위의 건강보험제도, 연금제 도 등은 개인단위로 변화되어야 함.

– 1인가구의 증가는 빈곤상태의 노인가구의 증가를 동반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재정립 필요.

■ '개인단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 **가족 개념의 재구성**

– 일반적으로 법은 대상이나 주체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준거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킴. 가족법에서 가족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함.

– 가족법상의 가족개념은 기본적으로 혈연과 혼인에 의한 가족 및 친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혈연과 혼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신분적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현재의 가족개념과 범위는 가족관계를 여전히 부양자와 피부양자로 보는 수직적 전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에 있어서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배치를가능하게 하고 있음. 그리고 이성애적 성적 결합을 전제로 성별 위계구조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비 이성애적 성적 결합 등은 가족이라는 테두리로 묶어내기에는한계가 있음.

– 다양한 공동체적 결합을 포함하는 가족 범위 확대나 가족개념 재구성이 진행되어야 함.

– 현재의 가족범위의 혈연중심성과 가족구성원 간의 위계성을 배제하면서, 가족이라는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임.

– 시민권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을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접근한다면 가족의 개념과 범위는 무의미할 수 있음. 그러나 정책대상을 가족이 아닌 개인단위로 하였을 때현재, 법 · 제도적 구조 속에 차별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결합이 해소될수 있을 지 의문.

– 사회정책의 기본단위를 가족에서 개인으로 한다는 것과 기존의 가족개념의 재구축은 각기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르게 논의되어 통합되어야 함.

– 가족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모든 법 · 제도 · 정책의 대상을 개인으로 하면 현재와 같은 모습의 가족의 의미나 역할, 기능 등은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수 있음.

– 노인인구나 질병 등을 이유로 돌봄 노동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족에대한 상대적 배려와 정책적 지원도 가족보다는 개인을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 모델은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가족개념을 넘어서는 가족이라는 실체 또는 추상적 공동체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함.

– 가족구성의 재구축 방식은 법이 일정의 가족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다양화를 인정하는 것임.

– 가족의 다양화를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가족을 계약으로 보거나(계약적 가족) 가족을 친밀한 공동체로 확대하는 것임.

– 계약적 가족이란 가족관계의 형성을 각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방식.

– 가족을 친밀한 공동체로서 재구축하는 것은 협력과 협동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친밀한 사람들의 결합을 가족으로 명명하는 방식임. 이 방식에 의하면 결합당사자들의 성별은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이 방식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즉,돌봄의 사회화와 구조적 약자(노인, 아동 등) 등에 대한 안전망이 전제 되어야 함.

토론 2

‘노동시간 재구성으로 쉼표 있는 사회’ 만들기에 대한 토론문

박기남 ((사)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IMF 경제위기와 대규모 구조 조정을 경험하면서 고용 불안과 이에 뒤따른 삶의 불확실성이 사회적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은 가족과 계급, 공동체의 안정적인 유대와 예측 가능성 대신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삶의 새로운 조건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바우만의 지적처럼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홀로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Bauman, 1993). 이러한 불확실성의 진원지는 무엇보다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으로부터 연유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어렵게 얻은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적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잘릴까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당장의 삶에 급급하느라 자신의 꿈, 미래, 노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20세기말 영국과 독일 등 서유럽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후기근대(Late Modernity)로 규정하는 사회학자들은 그 특징으로 전통적 규범과 제도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개인화(individualization)’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족이나 친밀성, 결혼과 섹슈얼리티의 영역에서 전통적인 규범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개인들은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자유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에 의해 지배당하게 됨으로써 개인은 노동시장 중심의 삶을 살 자유만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벡, 벡-게른샤임, 1997). ‘이상적 노동자란 회사의 명령에 따라 24시간 헌신하고 언제라도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직장인’과 같은 문구가 의미하는 것처럼, 개인의 삶은 노동시장에서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여기서 개인의 가족이나 다른 공동체적 삶은 점

차 피폐해지고 있다. 남성의 노동시장 일대기와 여성의 가사노동 일대기가 가족내 성별 분업을 통해 조화를 이루던 삶으로부터, 여성도 교육을 받고 취업하게 됨에 따라 두 개의 노동시장 일대기를 양립해 가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요구와 가족내 돌봄의 요구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장시간 노동문화는 일과 돌봄을 동시에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남성에게는 돌봄의 의무와 권리를, 여성에게는 노동의 의무와 권리를 빼앗고 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과 건강, 노년의 삶에 대한 기획과 준비는 대책없이 뒤로 미뤄진다.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교육－노동－은퇴라는 생애과정의 탈정형화 또는 탈표준화가 일반적인 생애과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현실에서, 남성의 생애를 규범으로 한 장시간 노동문화의 성평등한 재구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쉼, 돌봄의 균형을 찾고 일생에 걸쳐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재구성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점심시간을 유급화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하루 노동일과에 쉼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아래의 사례를 보면, 노동시간의 단축, 저녁이 있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미래다. 제니퍼소프트뿐 아니라 심플렉스인터넷(710명), 이파피루스는 야근이 거의 없고 근무시간도 적으며, 직원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차별화한 근무조건은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 기업사례들을 근거로 점심시간 유급화를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을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직장인 김윤희씨는 네 살과 이제 6개월을 갓 넘긴 두 아이를 둔 '워킹맘'이다. 매일 아침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둘째는 가까이 사는 시부모에게 맡긴다. 워킹맘이라면 아침마다 전투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그녀는 다르다. 느긋하다. 그녀의 출근시간은 오전 10시. 아이들을 맡기고 나와도 여유가 있다. 늦게 출근한다고 야근을 하는 건 아니다. 퇴근 시각은 오후 6시, 7시간만 일한다. 하루 7시간, 주35시간이 회사근무시간이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뒤 출산지원금으로 회사로부터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았다.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모두 썼다. 큰 아이 때는 1년간 육아휴직을 했고, 둘째는 6개월을 썼다. 김씨는 "둘째 때는 1년을 쓸 수도 있었는데 일을 하고 싶어서 6개월만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연간 정기휴가 4주(20일) 외에도 5년차부터 2주 휴가가 별도로 주어진다. 해외로 가족여행을 보내준다. 경비는 회사가 다 낸다. 10년 근무하면 두 달 간 안식월이 주어진다. 유급이다. 연간 300만원의 복지기금이 주어지고 식비, 간식비, 교통비, 휴대전화 이용료 등 회사업무와 관련한 경비는 전액 지원된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2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 부모 가운데 50세 이상은 매년 종합검진을 받게 해준다. 최근에는 심리전문가를 초청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이 적은 사람 순서로 월세를 50% 지원해주고 전세자금 대출(2000만원 한도), 차량구매대출(2000만원 한도)도 해준다.

– 제니퍼소프트. 25명. 2011년 100억 매출 기업(시사인 2012. 10. 13)

미국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은 40년의 취업기간중 최소한 11차례 전직하고, 최소한 3차례 '밑천기술'을 바꿀 것으로 예상한 세넷의 지적처럼, 노동시장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세넷, 2001).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개인은 노동시장과 생활영역간의 이행을 빈번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행의 과정은 자발적이기보다는 강제적이며, 사회적 배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큰 위험 상황이다. 멀리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2012년 현재 한국의 75년생 코호트 41명에 대한 노동 생애과정을 연구한 결과(박기남, 2012:토론 보조 자료 참고)에 의하면, 비정규 노동의 경우에는 잦은 노동이동과 two jobs, 학교 공부나 자격증, 시험 준비의 병행, 실업, 자영업 등을 오가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자신이 가진 현재의 지식과 기술이 언제 해체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하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는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노동시간의 문제는 단지 일터에서의 근무시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숙련을 획득하느라 생활영역의 시간까지도 잠식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문제는 고용영역으로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그를 둘러싼 생활영역의 중간상태까지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변화의 핵심은 소위 '정상적 근로관계'의 침식 또는 유연화이다. 전통적 노동시장은 '정상적 근로관계'와 '남성부양모델'을 근간으로 일과 삶을 명확히 구분한다.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는 바로 이러한 정상성의 가정 위에 설계되어 있으며, 노령, 건강, 실업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을 커버한다. 그러나 세계화, 사회적 위험의 강제적 개인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들, 즉 정상적 근로관계에 포섭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 및 고용지위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한다면, 전통적 노동시장의 위험에 대한 대응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안식년제의 정책은 변화된 노동상황에 필요한 매우 시의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노동 안식년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노동생애주기에 재충전을 위한 쉼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교육 · 훈련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현재 제안된 노동 안식년제는 기존의 고용보험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안식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함으로써,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활용하도록 기준노동자 모델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 인지적인 보편적 제도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며, 참고로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1]

◎ 벨기에의 경력중단시스템(Career Break System)

이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노동시간을 줄여주거나 전면 휴직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의 소득상실은 국가에 의해 보전된다. 원래 이 제도는 노동력을 재분배하여 실업률을 감소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일자리 공백은 반드시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실업자에 의해 채워져야만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건강, 아동 양육 및 노인 부양 또는 교육과 훈련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근로자는 직장을 떠나 있는 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으며, 휴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연금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는다. 이 제도를 택한 근로자에게 국가는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월급에 비하면 아주 적다. 하지만 근로자는 자신이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시적 휴직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 이 제도는 부모휴가제도 외에 별도로 운영된다.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최소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근로생애기간 중 특정한 휴가목적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는 두 가지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나는 근로자들에게 개인 이력관리를 위한 시간적 여지를 주어 일이 아닌 다른 삶의 기회에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특히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면서 정년퇴직 때까지 파트타임 근로를 유도하는 것이다.

◎ 네덜란드의 '생애과정 저축' 프로그램(Life - course Saving Plan)

이 제도의 목적은 기금마련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소득 일정 부분을 저축하여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위험과 이행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 중단된 경우, 기금을 활용하여 휴직기간 소득유지를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 가입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개인 근로자는 여러 상품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맞는 회사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생애과정 저축'제도에서 근로자는 일년에 총임금의 12%까지, 그리고 누적총액은 연임금 총액의 210%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액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무급휴가 기간 동안 생계비, 재교육 및 훈련, 조기퇴직 그리고 안식년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1 이 부분은 윤도현 · 박경순(2010), "유럽 국가에서 교육(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이행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서-", 『한독사회과학논총』20(4)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의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고용주가 이 기금에 일정 금액을 기여할 수도 있으며, 기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초과임금분을 저축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의의 중의 하나는 모든 근로자들이 고용상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도 교육, 간병 등 생애과정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장기 휴가를 반복해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최초로 부여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주된 기능인 재분배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저임금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시간의 재구성을 통해 하루 노동일과와 노동 생애주기에 쉼을 제도화 한다'는 의제 발제문과 정책제안은 급변하고 있는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제안들은 임금근로자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제도화할 경우 정규직 중심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점차 확대되고 비정규직 내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다수 여성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비율이 높은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 분야의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고용상의 지위들, 고용 형태들, 생산과 소비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상호 규정하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젠더에 미치는 영향을 읽어내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토론 보조 자료 : 2012년 전기사회학회 발표문 중 맺음말 (박기남)

권리 없는 노동과 강제적 개인화 : 노동시장 이동의 성별·계층별 특성을 중심으로

41명의 노동이동궤적에 대한 사건계열분석 결과를 보면, 소수의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이동궤적유형을 보이는 사례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의 경우에는 잦은 노동이동과 two jobs, 학교 공부나 자격증, 시험 준비의 병행, 실업, 자영업 등을 오가며 노동시장의 위험을 개인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다양한 노동이동 유형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의 수만큼이나 많은 조각보 노동이력(patchwork employment biographies)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 노동 안에서도 제도적 보호 밖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 일용직 등의 노동궤적이 더욱 복잡하고 급여수준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고 노동궤적도 복잡하다. 무거운 근대를 상징하는 생산직 비정규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고용기간의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 등 조건은 안 좋은 편이다.

정규직의 노동궤적(〈표5〉 참조)을 비정규직과 비교해보면, 정규직 노동궤적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다시 말해서 안정적이다. 하지만 첫 직장에 계속 머무르는 세 사례와 3-4차례 직장을 옮기며 더 좋은 조건으로 이동한 세 사례를 제외하면 정규직의 노동궤적도 단순하지만은 않다. 특히 최초학력이 고졸인 남성들의 경우 현재 정규직에 있지만 매우 잦은 이직 경력을 갖고 있으며, 급여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 반면 고졸 여성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노동궤적을 보이지만, 승진이나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낮은 대우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한에서는 여성들도 안정적인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후기근대 노동시장의 특징인 정규 노동과 비정규 노동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다. 정규직이지만 이미 많은 부분 제도적인 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성 정규직 사례들 중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평생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불안, 심지어는 회사가 망할까봐 걱정하기까지 한다. 이미 정규직도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며, 정규직 · 비정규직 · 자영업의 구분, 고용과 실업의 경계도 모호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이동궤적에서 가장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는 유형은 프리랜서와 일용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혼인 집단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가족의 지원이 없다면 노숙자로 나앉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노동시장에서 강제적인 개인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가족의 부양부담과 제약, 조직의 보호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지만 다시 재배태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75년생 노동생애사의 특징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식이 강하다.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적어도 내 용돈은 내가 번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리고 일하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요즘 청년실업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배부른 사람들의 얘기라는 것이다. 이들은 파견노동, 용역, 특수고용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질나쁜 노동이 광범위하게 제공되던 시절에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맘만 먹으면 일자리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없음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불안정한 일자리는 늘 있어왔고 넘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강제적 개인화에 대한 75년생의 대응은 어떤 것일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비정규직의 남성들의 경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자리의 불안정,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 나갈까봐 내심 걱정이다. 반면 일부 여성들은 노동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더라도 새로운 스타일의 삶을 지향하는 재구축적 개인화, 유목적 개인화를 지향하고자 한다. 비혼이나 한부모 여성들의 경우 부모(자식) 부양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여성의 개인화와 재배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표1〉 75년생 비정규직(임시 · 계약직)의 인적 사항 및 노동시장 내 직업이동 유형사례

사 례	성 별	학 력	지 역	소 득	초직 연령	혼인 연령	노동시장 내 이동
사례44	남	대졸	서울	월 250	27	32	W(J1/J2:1/J3:1/J4:2/ J5:1/J6:1/ J7:2/J8:2)
사례35	남	대학중퇴	정읍	–	25	26	W(J1/J2:1/J3:1/J4 · J5:5 two jobs /J5:5 · J6:2 · two jobs)
사례29	남	전문대졸 대졸	군산	연 2,000	28	35	E:2–W(J1:1/J2:6)–N–W(J3:2)
사례38	남	고졸	군산	월 180~200	20	32	T:2 · A–M–W(J1/J2/ J3...:6)–N–W(J4:4/ J5:1/J6:2)
사례41	남	실고	서울	연 2,600	21	34/ D37	W(J1:1)–M–W(J2:2/ J3:2/J4:9)
사례42	남	공고	서울	월 220	20	31	W(J1:1/J2:1)–M(1)– W(J3:1/J4 · 다양한 two jobs:10~/J5:4)
사례17	여	대졸	서울	연 2,500	24	비혼	W(J1:1)–S–호주 · A– W(J2:3)–유럽–W(J3:3/ J4)–N–W(J5:3)

J no.(직업순서):N(재직기간)
W(취업), A(아르바이트), E(시험준비), F(프리랜서), H(전업주부), M(군복무), N(Neet : not in education and not in training), SE(자영업), S(대학교), S1(석사), S2(박사), T(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표2〉 75년생 비정규직(파견 · 용역 · 도급 등 특수고용)의 인적 사항 및 노동시장 내 직업이동 유형

사 례	성 별	학 력	지 역	소 득	초직 연령	혼인 연령	노동시장 내 이동
사례3	남	야간 공고	부산	월 250~350	18	28	W(J1:3)–M–W(J2/J3:2/ J4:2/J5:2/J6:8)
사례20	남	대졸	부산	월 110	28	비혼	W(J1:1)–E:4–W(A:1/ J2:3)–W(J2:1) · S
사례31	여	중학 중퇴	전주	연 2,500	16	30	T–W(J1:5/J2:2/ J3....:5)–N–W(J4:2/ J5:2)–H–W(J6:3)

사례24	여	고졸	광주	월 160	20	23	W(E1:2)–T–W(J2:2/SE:6~/J3/J4/J5...)
사례7	여	고졸	서울	–	18	25/35 별거	W(J1)–W(J2:3) · T–W(J3:2 · two jobs/J5/J6:1)–H · A:5–W(J7:5/J8/J9:2)
사례18	여	고졸	서울	월 130	20	비혼	W(J1:2/J2:1/E3:1)–N · A–W(J4:2/J5:1)–해외여행 · T · A–W(J6:1/A/J7:2/J8)–N...–W(J9)

J no.(직업순서):N(재직기간)
W(취업), A(아르바이트), E(시험준비), F(프리랜서), H(전업주부), M(군복무), N(Neet : not in education and not in training), SE(자영업), S(대학교), S1(석사), S2(박사), T(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표3〉 75년생 비정규직(일용직 · 아르바이트 등)의 인적 사항 및 노동시장 내 직업이동 유형

사 례	성 별	학 력	지 역	소 득	초직 연령	혼인 연령	노동시장 내 이동
사례34	남	고졸	서울	월100	20	비혼	W(J1:2)–M–N · A–W(J2:3/J3/J4:2....이후 가구쪽 단기 일용직)
사례16	남	전문대	강릉	–	22	비혼	W(J1:1)–M–S:1–W(J2/J3:1/J4/J5....)–혈우병판정후 N–T–N · S · A...
사례5	여	중퇴 고졸	서울	–	15	비혼	알바 전전, 단기취업후 해고, 자영업....알바 전전
사례48	여	고졸	군산	–	20	비혼	W(J1)–N · A.....온라인 게임:2–N · A.... –W(J2:3)–N · A
사례46	여	고졸 방통대	서울	–	20	비혼	W(A/J1/A)–T–W(J2)–W(J3:4) · S–프랑스 유학:3–T–A–T–W(A/E4:1/E5:1) –S · W(J6:2)

J no.(직업순서):N(재직기간)
W(취업), A(아르바이트), E(시험준비), F(프리랜서), H(전업주부), M(군복무), N(Neet : not in education

and not in training), SE(자영업), S(대학교), S1(석사), S2(박사), T(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표4〉 75년생 자영업 · 프리랜서의 인적 사항 및 노동시장 내 직업이동 유형

사 례	성 별	학 력	지 역	소 득	초직 연령	혼인 연령	노동시장 내 이동
사례45	남	대졸	서울	월300–400	28	33	W(비정규직 전전:4–SE:6)
사례39	남	전문대 대졸	서울	월350	27	32	W(J1/J2:2/J3:3)–T–W(F:6)–사업준비
사례40	남	대졸	수원 서울	–	25	비혼	W(F:2/창업(1)/월단위 계약직 전전) –N · A
사례28	남	상고	서울	월200	20	비혼	W(J1:2)–M–W(A–J2:2/J3/J4/J5:4/J6:2)–T · W(J6:2)–W(SE:3)
사례6	여	대졸	서울	–	23	32	W(J1:2)–E(2)–W(J2:1/F:10)
사례13	여	대졸	전주 부안	–	22	비혼	T · A–W(J1:7)–해외여행–W(J2:6) –W(SE · F) · S
사례14	여	박사 수료	부산	–	28	32	W(J1:1/J2:1/A/J3:1/J4:1/J5:1)–S2:3–W(F:1)
사례25	여	상고 전문대	부산	–	18	32	W(J1/J2/J3/J4/J5:3)–해외–T · A–해외–W(J6:2/J7:2/J8:2/J9:3)–N–W(SE1:1/SE2:1)

J no.(직업순서):N(재직기간)
W(취업), A(아르바이트), E(시험준비), F(프리랜서), H(전업주부), M(군복무), N(Neet : not in education and not in training), SE(자영업), S(대학교), S1(석사), S2(박사), T(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표5〉 75년생 정규직의 인적 사항 및 노동시장 내 직업이동 유형

사 례	성 별	학 력	지 역	소 득	초직 연령	혼인 연령	노동시장 내 이동
사례8	여	석사	대전 서울	–	23	비혼	W(J1)–S1–W(J2/J3/J4/서울J5/J6/J7)

사례15	여	박사 수료	강릉	연 2,500	24	비혼	W(J1) · S1–W(J2) · S2–W(J2:12)
사례2	여	상고	서울 부산	연 2,000	19	25	W(J1:4)–T–W(J2:2)–H(6)–W(J3:7)
사례47	여	상고	고창 서울	월 220~230	18	25	W(서울J1:20)
사례11	여	상고 방통대	서울	연 3,600	20	25	W · S–W(J1/J2/J3)–W(J4/J5/J6/J7) · S
사례37	여	상고	광주	연 4,000	19	비혼	W(J1:7/J2/J3/J4/J5:4/J6:7)
사례1	남	박사 중퇴	서울 부산	연 8,000	32	비혼	W(J1:6)
사례21	남	대졸	서울 부산	연 4,000	27	29	W(J1:11)
사례33	남	대졸	대전 서울	연 3,700	27	37	W(J1:1/J2:2/J3:3/J4:5)
사례44	남	전문 대졸	서울	연 5,600	25	비혼	T–W(J1:6/J2:2/J3:6)
시례49	남	대졸	광주	연 2,500	27	35	W(J1)–T–W(J2)–E(3)–W(J3:3/J4:3)
사례23	남	상고 전문대	서울	월150–250	18	비혼	W(J1:2)–M–W(J1:3)–S:2–W(J2:4/J3:6 · two jobs)
사례50	남	공고 대졸	익산	–	19	30	W(J1)–S:2–W(J1:3/J2/J3:3)–W(J4:2,two jobs) · S–W(J5:2)–W(J6:3) · S1
사례12	남	고졸 대졸	익산	연 3,000	21	37	W(J1:3)–S:4–S1 · W(J2:3)–W(J3:7)
사례30	남	상고	서울	월300	20	33	W–M–W(J1/J2:2/J3:3....SE/J?:1)

J no.(직업순서):N(재직기간)

W(취업), A(아르바이트), E(시험준비), F(프리랜서), H(전업주부), M(군복무), N(Neet : not in education and not in training), SE(자영업), S(대학교), S1(석사), S2(박사), T(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토론 3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에 대한 토론문[1]

정최경희(이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 토론에 앞서

-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발제문의 문제제기와 논지전개는 전적으로 타당하며, 성평등 건강정책 기조 및 의제 제안에도 동의함.
- 본 토론을 통해 여성계와 보건학계가 소통하여 진전된 정책 실현으로 나아가기를 바람.

■ 보건학계의 논의

- 보건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하는 데 있어 문제의 크기와 심각도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 전 국민의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사망 – 사망원인 – 위험요인에 대한 개입으로 흐르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현재의 국민건강증진계획의 큰 틀이 형성. 여기에 취약집단 등이 고려됨.
- 이 과정에서 기대수명이 높고 “주요” 위험요인이나 질병의 유병율이 낮은 여성집

1 본 토론문은 2012년 10월 대한예방의학회에서 발표한 〈성인지 보건사업의 필요성 및 호주사례〉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단은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부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

- 기존 '여성건강정책'은 임신, 출산 관련 일부 모자보건정책에 국한되었으며 이 또한 시혜자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임신 및 출산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평가가 부족하였음.
- 건강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접근만으로는 불평등 구조로부터 파생된 소수자 문제에 둔감할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질환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게 됨.

■ 젠더불평등 접근

〈그림1〉 젠더관점의 보건정책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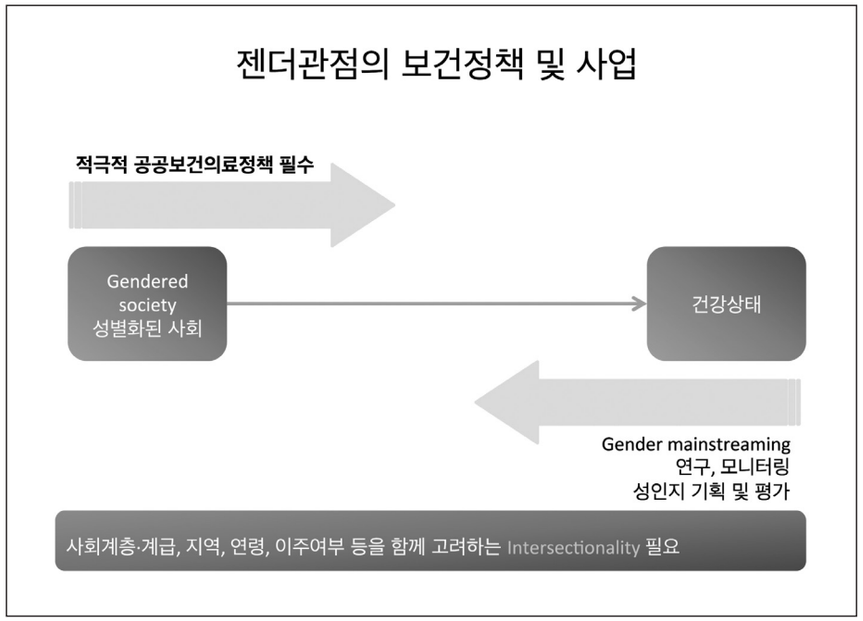

〈그림2〉 Framework for the role of gender as a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Sen&Ostli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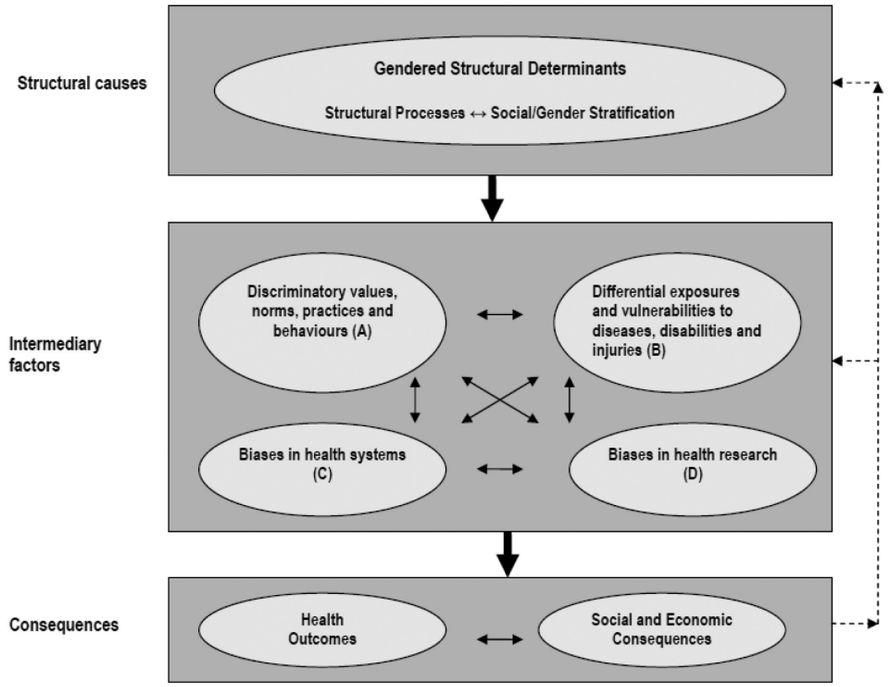

Note: The dashed lines represent feedback effects

■ 젠더 건강이슈

- 정치경제적 측면
  - 여성노동문제 : 최저임금 / 저임금, 고용의 불안정, 감정노동 / 돌봄노동 주요하게 근골격계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두
  - 여성빈곤문제 : 미충족의료 / 접근성

- 사회문화적 측면
  - 성상품화, 대상화, 성적자기결정권, 여성 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성역할

1) 가정폭력 및성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

2) 성건강(sexual health)

3) 낙태 (성감별 낙태, 미혼 낙태; 사회적 낙인, 제도 미비)

4) 미용성형, 다이어트, 섭식장애, 저체중

5) 육아/돌봄등 재생산 영역 여성 책임 – 정신건강, 근골격계질환

■ 향후 방향

- 젠더 건강 모니터링

– 젠더 건강 반영 지표 / 분석 단위 보완 (생애주기 고려)

– 분석을 넘어 해석, 환류, 배포로

- 젠더 & 여성 건강 정책

– 젠더 건강 아젠더화 – 정책 개발

– 젠더 불건강에 대해서는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

– 젠더와 여성을 아우르는 건강증진계획 수립 – 성별영향평가의 적극적인 활용

– 타 정책부서와의 협력/ 여성계와 보건학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

- 젠더 & 여성 건강 연구

– 생물학적 특성 및 차이에 국한된 연구 지양

– 다학제 접근을 통한 다층적 연구 필요

■ 과제

- 여성계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설득시킬 것인가

- 어떻게 젠더건강문제를 아젠더화할 것인가
-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제기해야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 다른 불평등과 어떻게 통합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

성평등복지 의제 발표와 정책 과제 토론회

한국여성민우회

우) 121-847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전화 02-737-5763 팩스 02-736-5766

이메일 minwoo@womenlink.or.kr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

블로그 womenlink1987.tistory.com 트위터 @womenlink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이메일 mindfull@womenlink.or.kr 트위터 @hifive4w

한국여성민우회

우)121-847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전화 02-737-5763　팩스 02-736-5766

이메일 minwoo@womenlink.or.kr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　블로그 womenlink1987.tistory.com　트위터 @womenlink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이메일 mindfull@womenlink.or.kr　트위터 @hifive4w